



2026. 7.

국회예산정책처 | 결산 분석

# 2025회계연도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5회계연도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VII  
2025회계연도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총괄 | 김경호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서재만 예산분석총괄과장  
이상은 산업예산분석과장  
권순영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이상준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오지은 박소희 예산분석관

지원 | 강숙자 행정실무관  
장강희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 02) 6788-3782 | peb5@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VII

# 2025회계연도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2026. 7.

---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7. 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 발 간 사



2025년은 2024년 말 이후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되어, 회계연도 중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연초 발생한 영남지역 대형 산불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예기치 못한 재난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재정의 역할도 요구된 한 해였습니다.

당초 2025년도 본예산은 총수입 651.6조원, 총지출 673.3조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6월 대통령선거 전·후로 각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642.4조원, 703.3조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결산 결과 국세수입은 373.9조원으로 추경(372.1조원) 대비 1.8조원 증가하였으나 본예산(382.4조원) 대비로는 8.5조원 감소하였으며, 총수입은 추경 대비 5.0조원 감소한 637.4조원, 총지출은 추경 대비 19.1조원 감소한 684.1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104.2조원 적자로 추경(111.6조원 적자) 대비 7.4조원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회계연도 정부의 재정운용을 분석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 8종, 22권으로, 「결산 재정총량 분석」, 「결산 분야별 자원 배분 분석」, 「결산 총괄 분석」, 「결산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으로 구성되며, 특히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총괄 분석을 한층 강화하여 기존 3권에서 4권으로 확대 발간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2025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지 동 하



## I. 국가재정 현황 및 부채 구조 분석 / 1

1. 재무현황 및 재정운영 분석 .....	1
1-1. 2025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개관 .....	1
1-2. 재무제표별 분석 .....	14
2.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분석 .....	48
2-1.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 확대 및 장기재정위험 관리 필요 .....	48
2-2.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2024년 대비 2025년 부채 186.3조원 증가 .....	59
3. 공적연금 분석 .....	64

## II. 주요 이슈별 분석 / 82

1.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및 GDP 대비 순차입부채 비율의 지속적 상승 .....	82
2.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재정운영순원가 급증 .....	89
3. 국가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의 주된 원인인 국유재산 관리 철저 필요 .....	95
4. 미수채권 분석 .....	105
5. 자본잠식 출자기관의 반복적 손실 및 사채발행 리스크에 대한 중장기 대응 필요 .....	115
6. 우체국예금 예수금 관련 자산(97조원)·부채(88조원) 및 우체국보험 적립금 관련 자산(67조원)·부채(60조원)의 국가재무제표 미반영 .....	124
7. 국토교통부의 GTX-A 손실보전금 지급의무에 대한 우발채무 관리 필요 .....	136
8. 국가재무제표에 신규 포함된 현금흐름표의 신뢰성 부족 문제 등 .....	142



# I 국가재정 현황 및 부채 구조 분석

## 1 재무현황 및 재정운영 분석

### 1-1. 2025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개관

#### 가. 국가재무제표상 자산 및 부채 현황

국가의 재정상태는 재정상태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재정상태표는 국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규모와 향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규모를 집약적으로 나타내 준다. 또한,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으로 미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의 균형 여부를 현재 시점에서 보여주는 정보이며,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국가의 재정여력이 약화되어 향후 조세 부담 확대, 지출조정 또는 국가채무 증가 등의 재정운용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최초로 국가재무제표를 국회에 제출한 2011년 이후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2025회계연도에는 2,772조원으로 2011년 774조원 대비 1,998조원 증가하였다. 동 기간 동안 국가 자산은 2,068조원 증가하여, 국가 순자산은 2011년 751조원 대비 70조원 증가하였다. 국가 자산 합계에서 국가 부채 합계를 차감한 국가의 순자산은 2025년 821.5조원으로 2024년 632.7조원 대비 188.8조원(29.8%)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국민연금기금의 순자산 증가(245.1조원)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차감하면 음의 값으로 전환된다. 국민연금기금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적립·운용되는 사회보험기금으로 일반재정과 성격이 상이하므로 재정건전성을 분석할 때에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5회계연도 국가 자산부채 대비 국민연금기금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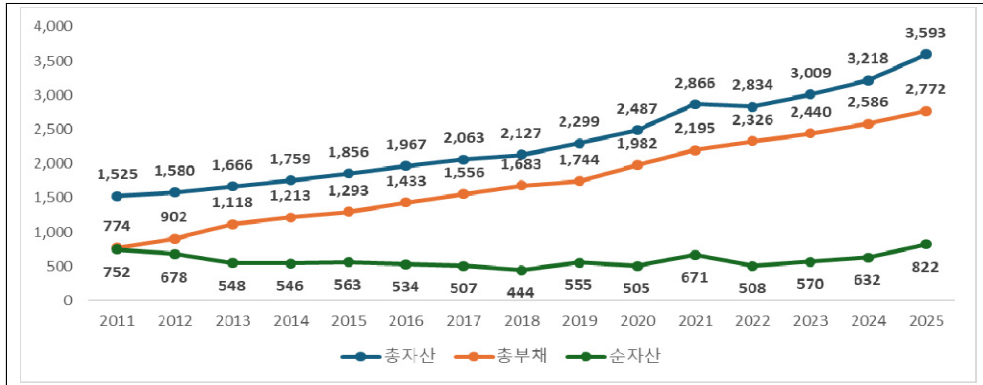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분	국가재무제표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차감 후 국가재무제표
	2025	2024 대비 증감(a)	2025	2024 대비 증감(b)	비중 (b/a)	2025
총자산(A)	3,593.4	375.0	1,458.8	244.3	65.1	2,134.6
총부채(B)	2,772.0	186.3	0.8	△0.8	-	2,771.2
순자산(A-B)	821.5	188.8	1,458.0	245.1	129.8	△636.5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재무제표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각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5회계연도 재정상태표를 살펴보면, 국가 자산은 3,593.4조원이며, 부채는 2,772.0조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821.5조원이다. 2025 회계연도 국가 자산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등에 따른 투자증권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375.0조원(11.7%) 증가하였고, 부채는 국채 발행 증가(139.9조원) 및 연금충당부채 증가(31.5조원)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86.3조원(7.2%) 증가하여, 순자산은 전년 대비 188.8조원(29.8%) 증가하였다.

[2024~2025회계연도 국가 재정상태표]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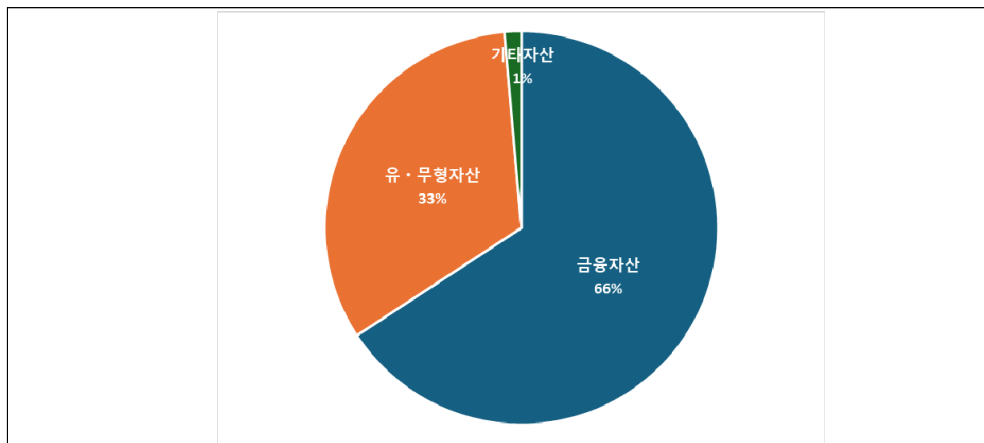
구분	2024	2025	(비중)	증감액 (C=B-A)	증감률 (C/A)
	(A)	(B)			
자산 합계(a)	3,218.4	3,593.4	100.0	375.0	11.7
Ⅰ. 금융자산	2,007.7	2,364.1	65.8	356.4	17.8
Ⅱ. 유무형자산	1,164.1	1,179.4	32.8	15.3	1.3
Ⅲ. 기타자산	46.6	49.9	1.4	3.3	7.1
부채 합계(b)	2,585.7	2,772.0	100.0	186.3	7.2
Ⅰ. 차입부채	1,159.2	1,306.5	47.1	147.3	12.7
Ⅱ. 충당부채	1,383.5	1,417.5	51.1	34.1	2.5
Ⅲ. 기타부채	43.0	47.9	1.7	4.9	11.4
순자산(a-b)	632.7	821.5	-	188.8	29.8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6.5.

2024년 대비 2025년 말의 국가 자산 증가 375.0조원은 주로 운용 수익 증가 및 투자 확대에 의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총자산 244.3조원 증가)<sup>1)</sup>을 중심으로 유·무형자산 15.3조원, 기타자산 3.3조원 증가하였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세부 자산별 비중을 살펴보면, 금융자산 65.8%<sup>2)</sup>(2,364.1조원), 토지, 건물 등의 유·무형자산 32.8%(1,179.4조원), 기타자산이 1.4%(49.9조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자산은 출자금을 제외한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투자증권 1,577.7조원, 대여금 249.5조원, 정부출자금 161.8조원, 미수채권 71.0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무형자산은 행정활동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 일반유형자산 750.2조원, 고속국도, 국도,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426.4조원 및 물리적 실체가 없는 무형자산 2.8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재무제표상 총자산 구성 비중]



자료: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1) 2025년 국민연금기금 자산은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거래소주식, 국내외위탁자산 등 지분증권, 국채 등의 채무증권, 금융상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외 주식 평가금액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44.3조원이 증가하였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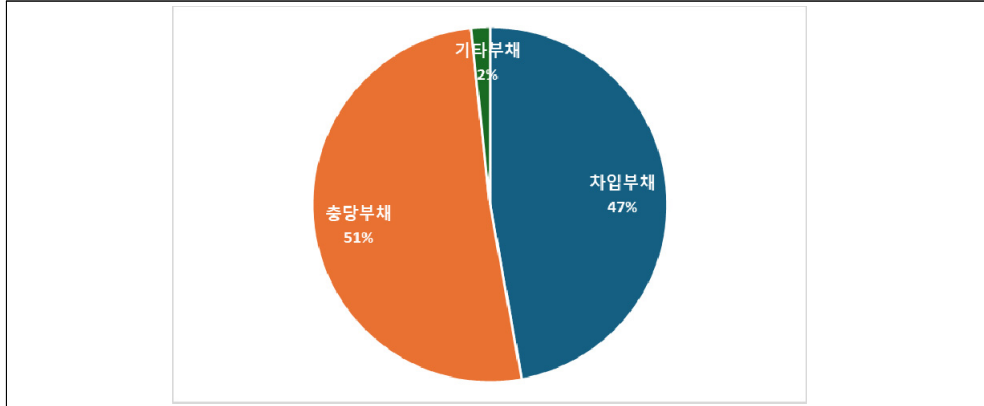
[국가통합 및 국민연금기금의 금융자산 규모]

구분	2024(A)	2025(B)	(단위: 조원, %)
			증감(B-A)
국가통합(a)	2,007.7	2,364.1	356.4
국민연금기금(b)	1,213.7	1,458.1	244.4
비중(b/a)	60.5	61.7	68.6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2025년 말 부채는 2024년 대비 186.3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국채 139.9조원 증가와 공무원연금기금 및 군인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 31.5조원<sup>3)</sup>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5년 말 기준 국가 부채는 차입부채가 47.1%(1,306.5조원), 충당부채가 51.1%(1,417.5조원), 기타부채가 1.7%(47.9조원)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재무제표상 총부채 구성 비중]



자료: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 자산 합계에서 국가 부채 합계를 차감한 국가의 순자산은 2025년 821.5조원으로 2024년 632.7조원 대비 188.8조원(29.8%)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국민연금기금을 보유한 보건복지부의 순자산 증가(244.6조원)에 기인한다.

국가의 총자산은 각 부처별 총자산 합계에서 내부거래 조정<sup>4)</sup>을 통해 산정되는

3)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의 연금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연금지급액만을 추정한 금액으로, 2024년 대비 2025년 연금충당부채 31.5조원 증가는 공무원연금충당부채 증가 24.1조원, 군인연금충당부채 7.5조원 증가에 의한 것이다. 2025년 말 현재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1,076.4조원, 군인연금충당부채는 268.1조원이다.

[연도별 공무원, 군인연금충당부채]

(단위: 조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a)	2025(b)	증감(b-a)
공무원	904.5	939.7	985.0	1,052.3	1,076.4	24.1
군인	233.6	241.6	245.2	260.6	268.1	7.5
합계	1,138.1	1,181.3	1,230.2	1,312.9	1,344.4	31.5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4)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발행 채권을 국가 자산 및 부채에서 각각 차감하여 처리하는 것 등을 말한다.

데,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2025년 말 기준으로 보건복지부는 내부거래 조정 전 부처별 자산 총 합계액의 38.7%인 1,463.1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국토교통부가 731.5조원(19.4%), 기획재정부 550.5조원(14.6%), 국방부가 287.8조원(7.6%),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55.4조원(4.1%)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2025년 말 기준으로 위의 5개 부처가 내부거래 조정 전 전체 국가자산 합계 중 8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처별 총자산(2021~2025)]

(단위: 조원, %)

부처명	2021	2022	2023	2024 (A)	2025 (B)	(비중)	증감
							(B-A)
보건복지부	953.9	895.7	1,041.4	1,219.0	1,463.1	38.7	244.1
국토교통부	819.1	715.4	717.7	724.4	731.5	19.4	7.1
기획재정부	498.2	489.9	502.8	505.1	550.5	14.6	45.4
국방부	258.5	265.8	273.2	279.6	287.8	7.6	8.2
기후에너지환경부	20.8	134.8	133.5	135.0	155.4	4.1	20.4
농림축산식품부	78.0	79.4	78.9	79.2	78.9	2.1	△0.3
교육부	58.8	57.1	60.1	62.6	67.1	1.8	4.5
중소벤처기업부	45.0	49.0	49.7	49.8	48.9	1.3	△0.9
고용노동부	42.3	41.2	46.6	49.7	53.4	1.4	3.7
해양수산부	36.5	37.4	37.9	38.8	40.6	1.1	1.8
국세청	29.0	32.2	33.9	36.7	12.6	0.3	△24.1
금융위원회	28.0	30.5	33.4	33.0	38.2	1.0	5.2
산림청	30.7	31.0	31.3	31.7	32.1	0.8	0.4
방위사업청	28.1	31.1	29.0	31.6	33.7	0.9	2.1
산업통상부	27.1	26.0	27.6	29.9	15.5	0.4	△14.4
인사혁신처	21.0	20.3	21.0	22.0	24.6	0.6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3	17.8	18.6	19.3	19.8	0.5	0.5
기타	140.1	128.2	121.8	124.0	125.2	3.3	1.2
합계(a)	3,132.4	3,082.7	3,258.1	3,471.3	3,779.2	100.0	308.0
내부거래조정(b)	△266.4	△249.2	△248.8	△252.8	△185.8	-	67.0
내부거래조정 후 국가총자산(a+b)	2,866.1	2,833.6	3,009.4	3,218.4	3,593.4	-	375.0

자료: 재정경제부

2025년 부처별 자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부의 자산 1,463.1조원은 2024년 1,219.0조원 대비 244.1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4년 대비 2025

년 국가 총자산 증가액(375.0조원) 중 65.1%의 비중을 차지한다. 보건복지부 자산 중에서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 비중이 큰 편(1,458.8조원)<sup>5)</sup>인데 2025년에는 국내외 주식 평가금액 증가 등에 따라 기금 총자산이 2024년 대비 244.3조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가 총자산 증가액 중 65.1%를 차지한다.<sup>6)</sup> 참고로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은 주식투자에서 243.5조원 증가, 채권투자에서 25.6조원 감소, 대체투자에서 25.7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7)</sup>

한편 2024년 대비 2025년 국민연금기금 부채는 0.8조원이 감소하여 기금의 자산 증가는 전액 순자산 증가로 반영되고 있다. 즉, 국가 총자산 및 순자산 증가의 상당 부분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의 자산 증가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국가 자산부채 대비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기금 비중]

(단위: 조원, %)

구분	국가재무제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2025	2024 대비 증감(a)	2025	2024 대비 증감(b)	비중 (b/a)	2025	2024 대비 증감(c)	비중 (c/a)
총자산(a)	3,593.4	375.0	1,463.1	244.1	65.1	1,458.8	244.3	65.1
총부채(b)	2,772.0	186.3	6.9	△0.5	-	0.8	△0.8	-
순자산(a-b)	821.5	188.8	1,456.3	244.6	129.6	1,458.0	245.1	129.8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5) 국민연금기금의 총자산은 금융자산 1,458.1조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6) 국민연금기금의 총자산 증가액은 내부거래 제거 전이며, 국가 총자산은 내부거래 제거 후의 금액이다.

7)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2024~2025)

(시가기준, 단위: 억원, %, %p)

구분	2024년 말(A)		2025년 말(B)		증감(B-A)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융부문 <sup>1)</sup>	12,122,568	99.9	14,574,885	99.97	2,452,318	0.01
주식	5,707,189	47.0	8,142,215	55.8	2,435,026	8.8
채권	4,360,577	36.0	4,105,076	28.2	△255,500	△7.8
대체투자	2,068,842	17.0	2,325,759	16.0	256,917	△1.1
복지부문 <sup>2)</sup>	2,051	0.02	2,157	0.01	107	0.00
기타부문 <sup>3)</sup>	3,895	0.03	2,920	0.02	△975	△0.01
기금자산 계	12,128,513	100.0	14,579,963	100.0	2,451,450	0.0

주: 1) 금융부문: 환헤지를 위한 통화선도 평가금액은 각 자산군에 배부할 수 없으나 금융부문에 가산되므로 각 자산군별 합산 금액이 금융부문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2) 복지부문: 복지타운건설, 보육·노인시설 대여, 생계자금·신용회복지원자금, 노후간급자금

3) 기타부문: 공단사육건설비 등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6.5.

2025년 말 국가 총부채 2,772.0조원은 각 부처별 총부채 합계 3,005.4조원에서 내부거래조정 △233.4조원을 반영하여 산정되었다. 2025년의 국가 총부채는 기획재정부 1,216.6조원(40.5%), 인사혁신처 1,136.6조원(37.8%), 국방부 287.2조원(9.6%), 국토교통부 198.9조원(6.6%) 등의 부채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4개 부처는 내부거래조정 전 국가 총부채의 94.5%를 보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부채 1,216.6조원은 대부분 국채 등 차입부채인데, 2025년에는 국채(차입부채)의 증가 129.5조원에 의해 전기 대비 129.4조원 증가하였다.

2025년 말 기준 인사혁신처의 부채 1,136.6조원은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 1,076.4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말 대비 2025년 부채 증가 26.8조원은 연금충당부채의 증가 24.1조원 등에서 발생한 것이다.

국방부의 부채 또한 대부분 군인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2025년 말 기준 268.1조원)이며, 국토교통부의 부채는 주택도시기금의 국채, 차입금 등의 차입부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부처별 총부채(2021~2025)]

(단위: 조원, %)

부처명	2021	2022	2023	2024 (A)	2025 (B)	증감	
						(비중)	(B-A)
기획재정부	895.2	981.0	1,032.4	1,087.2	1,216.6	40.5	129.4
인사혁신처	955.9	991.3	1,037.0	1,109.8	1,136.6	37.8	26.8
국방부	251.2	259.7	263.8	280.3	287.2	9.6	6.9
국토교통부	192.8	192.5	193.7	195.8	198.9	6.6	3.1
중소벤처기업부	39.2	44.9	46.6	47.3	48.4	1.6	1.1
고용노동부	43.9	41.7	41.6	42	44.5	1.5	2.5
금융위원회	44.2	37.9	33.9	26.7	20.7	0.7	△6.0
기타	58.3	63.1	68.8	77.8	52.5	1.7	△25.3
합계(a)	2,480.8	2,612.1	2,717.9	2,866.9	3,005.4	100.0	138.5
내부거래조정(b)	△285.5	△286.1	△278.4	△281.2	△233.4	-	47.8
내부거래조정 후 국가총부채(a+b)	2,195.3	2,326.0	2,439.5	2,585.7	2,772.0	-	186.3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의 기말 순자산은 821.5조원으로 기본순자산 444.7조원, 적립금 및 잉여금 △459.7조원, 순자산조정액 836.5조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2025년 기초 순자산(2024년 기말 순자산) 632.7조원에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결과인 64.0조원과 투자증권 평가손익(210.9조원) 등의 조정항목 252.8조원을 반영하여 산출된 것으로 2024년 기말 순자산 대비 188.8조원이 증가되었다.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자산재평가이익, 보험수리적손익, 기타순자산의 증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투자증권평가손익은 2025년 210.9조원 발생하였는데, 앞서 자산 증감 분석 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지분증권 평가이익 등이 증가함에 따라 2024년 대비 88.6조원 증가하였다.

[2024~2025회계연도 국가 순자산변동표]

(단위: 조원, %)

구분	2024 (A)	2025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I. 당기 기초순자산	569.9	632.7	62.8	11.0
II. 재정운영결과	61.4	64.0	2.6	4.3
III. 조정항목	124.2	252.8	128.6	103.5
1. 투자증권평가손익	122.3	210.9	88.6	72.4
2. 자산재평가이익	△1.9	2.8	4.7	249.3
3. 보험수리적손익	△44.8	13.5	58.3	130.1
4. 기타순자산의증감	48.6	25.6	△23.0	△47.4
IV. 당기 기말순자산(I-II+III)	632.7	821.5	188.8	29.8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국가재무제표상 재정운영결과 현황

2025년 국가결산보고서가 개편됨에 따라 재정운영표는 분야별·성질별로 작성되었다. 기존의 부처별 재정운영표를 15대 분야별 사업 원가를 집계하는 분야별 재정운영표로 개편하였고, 수익(국세, 부담금 등) 및 비용(국고보조, 인건비, 운영비) 측면에서 각각의 세부 구성내역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성질별 재정운영표도 재무제표

에 포함하였다.

2025회계연도 성질별 재정운영표상의 수익은 680.6조원이며 비용은 744.7조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64.0조원이다. 수익은 조세를 징수하여 발생하는 국세수익 387.5조원과 사회보험수익, 부담금수익 등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중 국세수익을 제외한 이전수익 151.6조원 및 이외 국가운영수익 141.5조원으로 구성된다. 비용은 교부금, 보조비와 같이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이전비용 464.5조원과 국가운영비용 280.2조원으로 구성된다.

국세수익은 387.5조원으로 2024년 339.6조원 대비 47.9조원(14.1%)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증가(23.6조원)한 것에 기인하며, 소득세(137.6조원), 법인세(87.4조원), 부가가치세(86.7조원) 순으로 수익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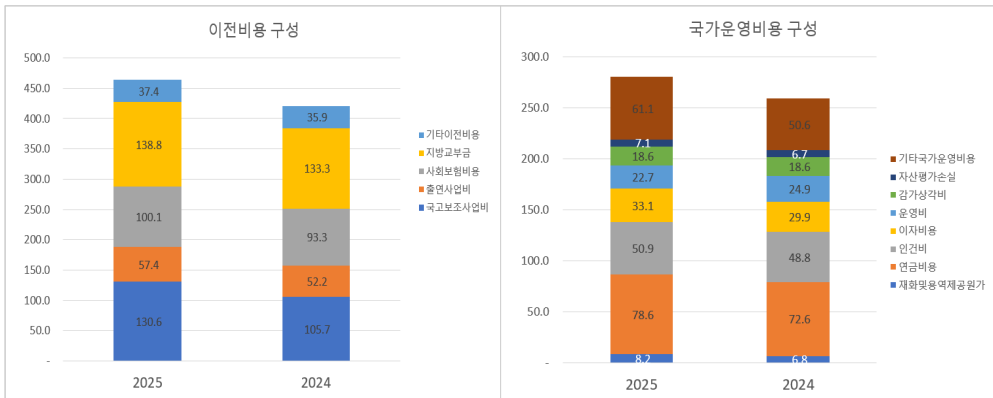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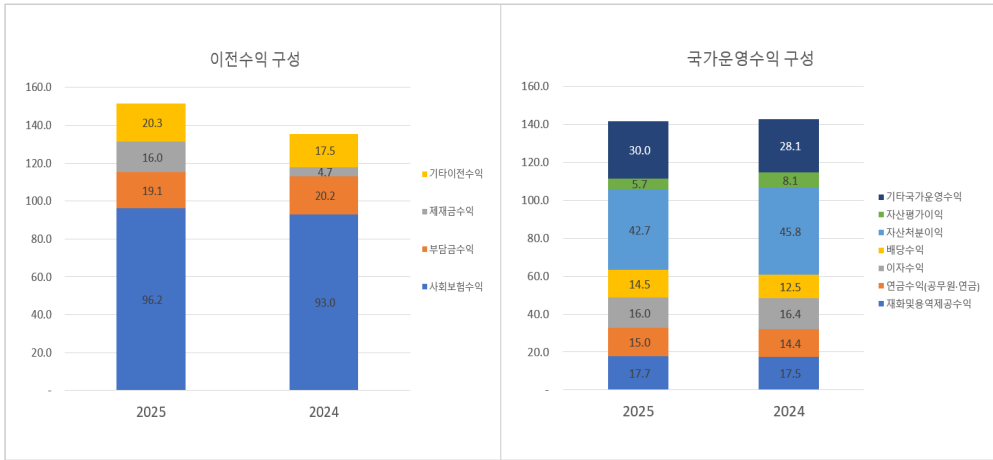
이전비용은 464.5조원으로 2024년 420.3조원 대비 44.2조원(10.5%) 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보조사업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130.6조원, 관련 법령에 의거 지방에 교부하는 지방교부금 138.8조원 및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고용보험, 산재 보험 등 사회보험비용 100.1조원이 발생하였다.

[2024~2025회계연도 국가 성질별 재정운영표]

(단위: 조원, %)

구분	2024(A)	2025(B)	증감액(C=B-A)	증감률(C/A)
I. 수익	617.9	680.6	62.7	10.2
1. 국세수익	339.6	387.5	47.9	14.1
2. 이전수익	135.5	151.6	16.1	11.8
3. 국가운영수익	142.8	141.5	△1.3	△0.9
II. 비용	679.3	744.7	65.4	9.6
1. 이전비용	420.3	464.5	44.2	10.5
2. 국가운영비용	259.0	280.2	21.2	8.2
III. 재정운영결과(II-I)	61.4	64.0	2.6	4.3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6.5.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6.5.

분야별 재정운영표는 재정운영순원가를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수익 및 비교환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사업순원가는 분야별 총원가에서 분야별 수익을 차감해서 산정하며, 재정운영순원가는 사업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비교환수익 등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이전수익과 순자산 증가 또는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회계실체 간의 무상이전거래를 포함하고 있다.

2025회계연도 사업순원가는 618.8조원으로 전년 562.3조원 대비 56.5조원(10.0%)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순원가는 603.0조원으로 전년 536.0조원 대비 67.1조원(12.5%) 증가하였다. 이는 일반·지방행정분야의 순원가가 80.6조원에서 100.1조원으로 19.5조원(24.2%) 증가하였고,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의 순원가가 각각 전년 대비 11.4조원(13.5%), 11.3조원(4.9%)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2024~2025회계연도 국가 분야별 재정운영표]

(단위: 조원, %)

구분	2024(A)	2025(B)	증감액(C=B-A)	증감률(C/A)
I. 사업순원가	562.3	618.8	56.5	10.0
II. 관리운영비	30.6	32.2	1.6	5.1
III. 비배분비용	15.7	28.0	12.3	78.1
IV. (-) 비배분수익	72.7	75.9	3.2	4.4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536.0	603.0	67.1	12.5
VI. 비교환수익 등	474.6	539.0	64.4	13.6
VII. 재정운영결과(V-VI)	61.4	64.0	2.6	4.3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6.5.

사업순원가 618.8조원은 분야별로 집계되며, 15대 분야의 총원가, 수익 및 순원가는 다음과 같다.

총원가 기준 사회복지에 266.0조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지방행정(123.0조원), 교육(96.7조원), 국방(51.2조원) 및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30.4조원) 순으로 원가가 크게 발생하였다. 수익의 경우 일반·지방행정 22.9조원, 사회복지 22.2조원 발생하였으며, 통신 분야의 수익이 7.7조원으로 세 분야의 합계는 52.8조원이며, 총수익 65.6조원의 80.5%를 차지하고 있다.

순원가 기준 원가가 큰 분야를 살펴보면 우선 일반·지방행정 분야 100.1조원 중 약 64.8%가 지방교부세(국가가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부금)로, 교육 분야 96.7조원 중 약 76.7%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초·중등 교육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교부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4~2025회계연도 국가 분야별 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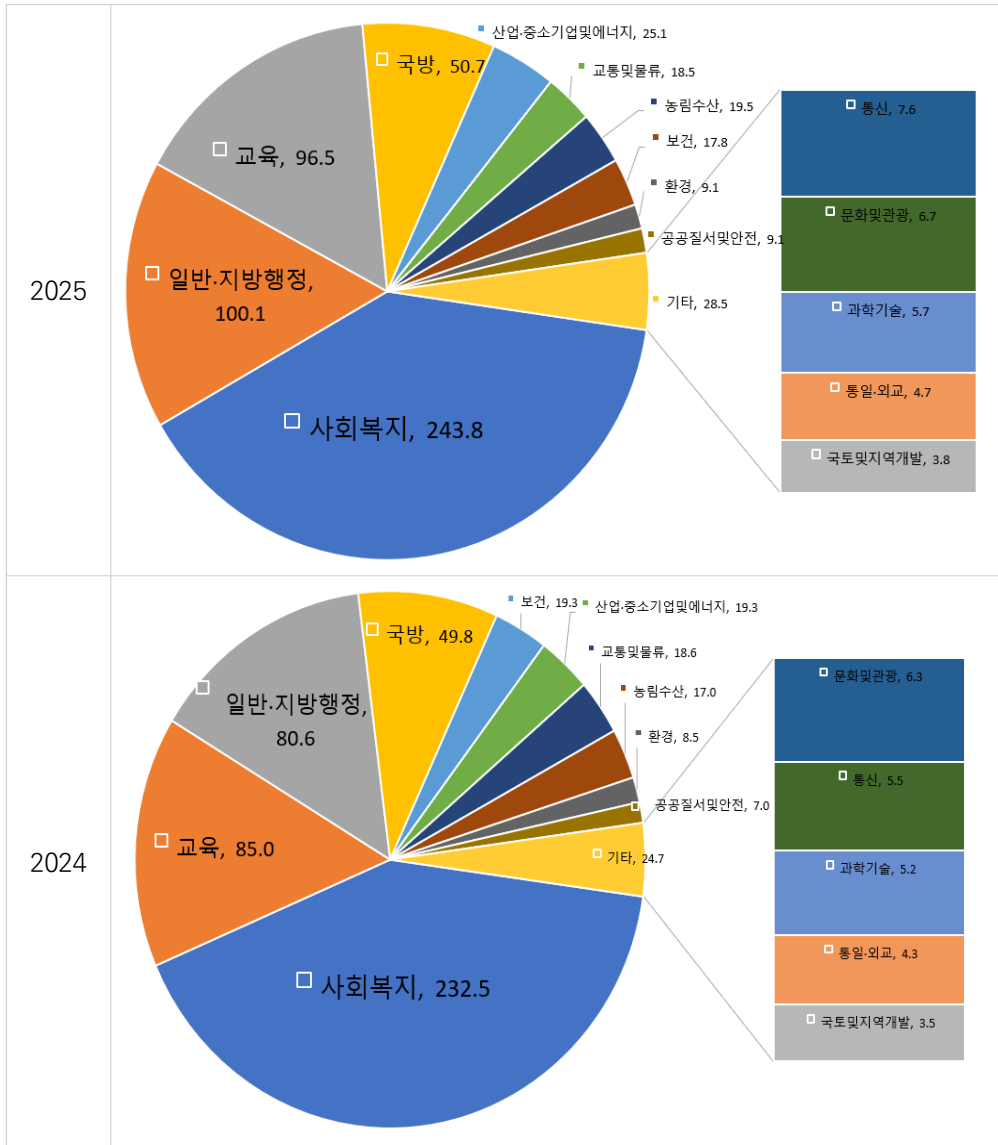
(단위: 조원)

구분	2024			2025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1. 일반·지방행정	106.9	26.3	80.6	123.0	22.9	100.1
2. 공공질서및안전	7.1	0.1	7.0	9.2	0.1	9.1
3. 통일·외교	5.3	1.0	4.3	5.2	0.5	4.7
4. 국방	51.3	1.5	49.8	51.2	0.5	50.7
5. 교육	85.2	0.1	85.0	96.7	0.3	96.5
6. 문화및관광	7.0	0.6	6.3	7.1	0.4	6.7
7. 환경	9.3	0.8	8.5	10.0	1.0	9.1
8. 사회복지	253.7	21.2	232.5	266.0	22.2	243.8
9. 보건	19.4	0.1	19.3	18.0	0.1	17.8
10. 농림수산	19.3	2.3	17.0	22.5	2.9	19.5
1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5.4	6.1	19.3	30.4	5.3	25.1
12. 교통및물류	19.6	1.0	18.6	20.1	1.6	18.5
13. 통신	14.1	8.7	5.5	15.3	7.7	7.6
14. 국토및지역개발	3.7	0.2	3.5	3.8	0.0	3.8
15. 과학기술	5.2	0.0	5.2	5.8	0.0	5.7
합계	632.4	70.1	562.3	684.4	65.6	618.8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6.5.

[분야별 순원가 및 세부내역]

(단위: 조원)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6.5.

## 1-2. 재무제표별 분석

### 가. 재정상태표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sup>8)</sup>

#### (1) 자산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 등에 의하여 소유 또는 통제되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크게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된다. 금융자산은 현금 또는 현금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인 자산으로 투자증권, 정부출자금, 대여금 등이 있으며, 유·무형자산은 행정활동에 사용하는 일반유형자산,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등을 포함한다.

2025회계연도 국가 재정상태표상 세부 자산은 다음과 같다.

#### ① 금융자산

[2024~2025회계연도 금융자산]

(단위: 조원)

계정과목	2024(A)	2025(B)	증감(B-A)
1. 현금및현금성자산	28.5	26.7	△1.8
2. 금융상품	32.8	30.4	△2.4
3. 투자증권	1,262.4	1,577.7	315.3
4. 정부출자금	155.2	161.8	6.6
5. 대여금	246.8	249.5	2.7
6. 미수채권	54.1	71.0	16.9
7. 기타금융자산	227.8	247.0	19.2
합계	2,007.7	2,364.1	356.4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6.5.

8) 이하 설명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재정상태표에 따른 것이다.

### (가)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은 통화와 통화대용증권을 의미하는데, 통화는 지폐 및 주화 등을 포함하며, 통화대용증권은 타인발행수표,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가계수표, 우편환증서, 송금환, 기일도래 공사채이자표 및 배당금 지급통지표 등을 포함한다. 현금성자산은 국고금을 포함한 보통예금 등의 예금 및 현금등가물을 의미한다. 현금등가물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으며,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유가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2025년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6.7조원으로 2024년 28.5조원 대비 1.8조원 감소하였다.

### (나) 금융상품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질권설정 등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을 의미한다.

2025년 단기금융상품은 29.4조원으로 전년 대비 0.6조원이 감소하였으며, 장기금융상품은 1.0조원으로 전년대비 0.2조원 감소하였다.

### (다) 투자증권

투자증권은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자금운용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증권은 그 형태에 따라 지분증권, 채무증권, 국세물납증권으로 구분되며, 이 중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거나 1년 이내 처분 예정인 투자증권은 단기투자증권,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투자증권으로 분류한다.

지분증권은 주식과 기타지분증권으로 구분되는데,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며 주주의 권리를 표명하는 지분증권이고, 기타지분증권은 주식을 제외한 지분증권으로 수익증권, 자산유동화출자증권,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지분증권 등을 포함한다.

투자증권 중 채무증권은 국채, 공채, 지방채 및 회사채로 구분되며, 국가가 자

금운용 목적 또는 법령·정책적 목적에 의해 취득한 유가증권 중 발행자에게 금전 청구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며, 지분증권과 기타 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투자목적의 투자증권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투자증권의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상 조정항목(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국세물납증권은 국세 물납을 통해 취득한 투자증권이다.

2025년 단기투자증권은 554.7조원으로 2024년 397.5조원 대비 157.2조원 증가하였으며, 장기투자증권은 1,023.0조원으로 전년 대비 158.1조원 증가하였다.

[2024~2025회계연도 투자증권 명세서]

(단위: 억원, %)

구분		2024 (A)	2025 (B)	비중	증감 (C=B-A)	증감률 (C/A)
종류별	지분증권	10,477,092	13,721,847	87.0	3,244,755	31.0
	채무증권	2,089,795	1,997,695	12.7	△92,100	△4.4
	국세물납증권	57,158	57,430	0.4	272	0.5
만기별	단기	3,974,860	5,546,716	35.2	1,571,856	39.5
	장기	8,649,185	10,230,256	64.8	1,581,071	18.3
합계		12,624,045	15,776,972	100.0	3,152,927	25.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라) 정부출자금

2025년 출자금 비중이 큰 부서는 국토교통부(장부가액 93조 8,567억원), 기획재정부(장부가액 51조 4,709억원)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임대 등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2025년도 말 출자금 장부가액이 6조 6,745억원이며, 이외에도 한국도로공사(35조 418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34조 2,090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3조 7,006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8조 7,314억원) 등에 출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말 기준으로 한국수출입은행(13조 628억원), 한국수자원공사(10조 8,563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9조 4,747억원), 한국철도공사(9조 2,364억원) 등에 출자하고 있으며, 한국광해광업공단(취득가액 1,416억원) 및 한국석유공사(223억원)가 자본잠식 상태임에 따라 동 출자금을 모두 감액손실 처리한 바 있다.

산업통상부는 2025년 말 현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에 출자하고 있으며,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및 한국석유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전액 감액손실 처리하였다. 산업통상부는 2025년 중에 대한석탄공사 358억원, 한국광해광업공단 4,154억원, 한국석유공사 620억원 등 3개 기관에 5,132억원을 출자한 후 당해연도에 전액 감액손실 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 정부출자금 명세서]

(단위: 억원)

구분	취득가액		장부가액		감액손실(누계)		당기 배당금 수익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기획재정부	516,348	506,067	514,709	504,428	△1,639	△1,639	5,565
교육부	3,146	3,071	3,146	3,071	0	0	220
인사혁신처	1	1	1	1	0	0	0
문화체육관광부	26,299	20,364	26,299	20,514	0	0	0
농림축산식품부	17,527	16,977	17,527	16,977	0	0	0
산업통상부	149,339	143,237	11,895	10,925	△137,444	△132,311	371
보건복지부	1,550	1,450	1,550	1,450	0	0	0
기후에너지환경부	2,625	1,825	2,625	1,825	0	0	0
고용노동부	210	210	210	210	0	0	0
국토교통부	938,567	902,097	938,567	902,097	0	0	6,027
해양수산부	20,811	20,367	20,811	20,367	0	0	135
금융위원회	0	0	0	0	△0	△0	73
지식재산처	2,694	2,614	2,694	2,614	0	0	0
중소벤처기업부	71,635	63,635	71,589	63,589	△47	△47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91	4,386	6,191	4,386	0	0	0
합계	1,756,944	1,686,300	1,617,814	1,552,453	△139,129	△133,997	12,39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등에 출자한 이후, 공공기관 등의 영업성과 중 일부를 배당받고 있는데, 정부출자기업출자금의 2025년도 배당금 수익 규모는 국가재무제표 주석 '13-4. 배당수익'상 2조 1,654억원으로, 이는 전년도(2024년) 말 기준 정부출자기업출자금 취득가액 151조 2,367억원의 1.4%에 불과하다. 정부는 수익을 적극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설립하지는 않았지만,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여 배당수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24~2025회계연도 배당수익]

(단위: 억원, %)

구분	2024 (A)	2025 (B)	증감 (C=B-A)	증감률 (C/A)
정부출자기업출자금배당수익	20,378	21,654	1,275	6.3
정부출자기업외출자금배당수익	1,235	3,492	2,256	182.6
지분증권배당수익	101,905	117,881	15,976	15.7
국세물납증권배당수익	102	81	△20	△19.9
기타배당수익	1,431	1,601	170	11.9
합계	125,051	144,708	19,657	15.7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주석 '13-4. 배당수익'에서는 “정부출자금과 관련한 배당수익은 주석 2-4. 정부출자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국가재무제표 주석 13-4 배당수익 중]

(단위: 조원)

**13-4.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주식이나 출자금 등 투자증권의 보유로 인하여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통해 받는 배당금을 말합니다.  
 정부출자금과 관련한 배당수익은 주석 24. 정부출자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6.5

그런데 주석 '2-4. 정부출자금' 중 정부출자기업출자금명세서를 살펴보면, 당기 배당수익의 합계액은 8,900억원으로, 주석 '13-4. 배당수익'의 정부출자기업출자금 배당수익 2조 1,654억원과 1조 2,754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주석 2-4. 정부출자금 中 정부출자기업출자금 명세서]

(단위: 억원)

구분	출자대상기관	취득가액		장부가액		감액손실(누계)		당기 배당 수익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기획재정부	부산항만공사 외	513,657	503,832	512,018	502,193	△1,639	△1,639	4,427
교육부	한국모태펀드	1,015	940	1,015	940	0	0	0
농림축산 식품부	새만금개발공사	10,970	10,970	10,970	10,970	0	0	0
산업통상부	한국가스공사 외	143,444	138,311	6,000	6,000	△137,444	△132,311	176
기후에너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외	2,425	1,825	2,425	1,825	0	0	0
국토교통부	한국토지 주택공사 외	871,122	840,592	871,122	840,592	0	0	4,162
해양수산부	한국해양 진흥공사 외	15,402	15,402	15,402	15,402	0	0	135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교육방송공사	496	496	496	496	0	0	0
합계		1,558,531	1,512,367	1,419,448	1,378,417	△139,083	△133,950	8,90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6.5.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재정경제부는 매년 5월 말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액을 공표하는데, 2024회계연도 실적을 바탕으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65조의6<sup>9)</sup>에 따라 2025년 5월 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였다. 정부출자기관의 2025년 정부배당액은 2조 2,987억원으로 확정되었다.<sup>10)</sup>

따라서 국가재무제표 주석 13-4에서는 정부출자기업출자금배당수익을 2조 1,654억원으로, 주석 2-4의 정부출자기업출자금 명세서에서는 당기배당수익을 8,900억 원으로 각각 공시하고 있다. 또한 재정경제부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공표한 2025년 정부배당액은 2조 2,987억원으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주석 13-4와 주석 2-4 간에는 1조 2,754억원, 주석 13-4와 별도 공표자료 간에는 1,333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석 13-4에서는 정부

9) 「국유재산법」

제65조의6(국회 보고 등)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이 완료된 때에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10) 재정경제부, “정부출자기관의 2025년 정부배당 2조 2,987억원으로 확정”, 2025.5.30.

출자금 관련 배당수익에 대하여 주석 2-4를 참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주석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국가재무제표 주석 간 연계성 및 정합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정부배당 공표액은 정부배당 절차를 통하여 확정된 금액이고, 국가재무제표상 배당수익은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된 금액이므로 배당채권의 인식시점, 실제 수납 여부, 귀속 회계·기금, 대상기관의 범위 및 계정분류 등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결산보고서에는 각 금액의 포괄범위와 차이 발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조정내역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보이용자가 정부출자기관 배당수익의 정확한 규모와 국가재무제표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국가재무제표 주석 13-4의 정부출자기업출자금배당수익과 주석 2-4의 당기배당수익 간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시 정부배당 공표액,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한 배당수익, 당기 중 실제 수납한 배당금 및 기말 배당미수금 등을 기관별·회계별로 구분하고, 각 금액 간 차이를 연결하는 조정명세를 주석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재무제표 주석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정부출자기관 배당수익에 관한 재정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출자금 중에는 한국모태펀드<sup>11)</sup>에 대한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업무집행조합원인 한국벤처투자를 비롯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영화발전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펀드출자사업을 통하여 한국모태펀드에 출자하고 있다. 이에 한국모태펀드의 출자액은 전액 정부 부처의 예산집행을 통한 출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 말 현재 한국모태펀드의 출자금 잔액은 총 11조 3,313억원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체 출자자 지분 중 61.18%에 해당하는 6조 9,325억원을 출자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체 출자자 지분의 18.24%인 2조 672억원을 출자 중이다.

---

11) 한국모태펀드는 매년 예산배정에 따라 투자금액이 결정되는 등 공급자 위주 투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시장 수요를 반영한 회수재원의 재순환 방식으로 안정적 벤처투자자원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2005년 7월 15일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조합에 투자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국모태펀드 출자자별 출자금 구성내역]

(단위: 백만원, %)

조합원	구분	2025년 말		2024년 말		
		금액	지분율	금액	지분율	
한국벤처투자	업무집행조합원	100	0.001	100	0.00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유한책임조합원	6,932,500	61.18	6,132,500	62.19	
문화체육관광부		2,067,176	18.24	1,679,176	17.03	
특허청		269,400	2.38	261,400	2.65	
영화진흥위원회		312,000	2.75	312,000	3.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29,500	4.67	354,000	3.59	
고용노동부		21,000	0.19	21,000	0.21	
보건복지부		155,000	1.37	155,000	1.57	
국민체육진흥공단		184,000	1.62	154,000	1.56	
환경부		280,104	2.47	234,500	2.38	
교육부		101,500	0.90	94,000	0.95	
해양수산부		100,000	0.88	100,000	1.01	
국토교통부		165,000	1.46	150,000	1.52	
중소벤처기업부		214,000	1.89	214,000	2.17	
합계			11,331,280	100.00	9,861,676	100.00

자료: 한국벤처투자, 「2025년 한국모태펀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마) 대여금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대여금이란 유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의 금전에 대한 채권이며, 대여 자금의 출처, 성격 등에 따라 일반용자금, 저리용자금, 전대차관대여금, 정부내예탁금으로 구분된다.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장기미수채권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금액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장기대여금을 현재가치금액으로 평가하는데 이때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를 현재가치할인차금이라고 하며, 당해 대여금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또한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금을 실행(용자사업)한 경우, 「용자 회계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용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하며,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 이상의 이자율로 대여금을 실행(용자사업 이외)한 경우 회수가 불확실할 것으로 추산되는 금액을 일반용자금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대여금 및 관련 계정 설명]

설명
I. 대여금
1. 전대차관대여금(정부 내, 정부 외) 해외에서 도입한 전대차관을 다른 국가회계실체(정부 내) 혹은 국가회계실체가 아닌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및 기타 민간분야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 외)에 재대여한 자금
2. 정부내 예탁금(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탁금) 회계 혹은 기금 간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3. 용자금
II. 대여금 현재가치할인차금(대여금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금액의 차이금액)
III. 대여금 총당금 용자보조원가충당금: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실행(용자사업)한 용자금의 원금과 용자금의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액 대손충당금: 용자금 중 회수가 불확실할 것으로 추산되는 금액

자료: 국가회계편람

2025년 일반용자금은 2024년 대비 2조 5,019억원 감소하였으며, 저리용자금은 2024년 대비 5조 3,940억원 증가하여 실행가액은 총 2조 8,922억원 증가하였다.<sup>12)</sup>

12) 현재가치할인차금,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금액이다.

[2024~2025회계연도 대여금 잔액명세서]

(단위: 억원, %)

구분		이자율	2024 (A)	2025 (B)	증감 (C=B-A)	증감률 (C/A)	
종 류 별	일반 융자금	실행가액	-	1,407,154	1,382,135	△25,019	△1.8
		(대손충당금)	-	159,778	172,407	12,629	7.9
		(현재가치할인차금)	-	28	36	8	31.4
		소계	0~5.5	1,247,349	1,209,692	△37,657	△3.0
	저리 융자금	실행가액	-	1,373,378	1,427,318	53,940	3.9
		(융자보조원가충당금)	-	152,605	142,378	△10,227	△6.7
		소계	△03 ~ 54	1,220,773	1,284,939	64,166	5.3
	전대 차관 대여금	실행가액	-	35	35	0	0
		(대손충당금)	-	△35	△35	0	0
		소계	0~1.0	0	0	0	0
합계		-	2,468,121	2,494,631	26,510	1.1	
계 정 별	실행가액	-	2,780,566	2,809,488	28,922	1.0	
	(대손충당금)	-	159,812	172,442	12,630	7.9	
	(융자보조원가충당금)	-	152,605	142,378	△10,227	△6.7	
	(현재가치할인차금)	-	28	36	8	31.4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2025년 대여금 280조 9,488억원 중 대손충당금은 17조 2,442억원이고, 대여금 관련 충당금이 31조 4,820억원임에 따라 충당금 설정률이 11.2%로 나타나고 있다. 대여금 관련 충당금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및 저리융자 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나타냄에 따라 최근 5년 간 국가 대여금 중 10% 이상이 지속적으로 회수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2021~2025회계연도 대여금 관련 대손설정률 추이]

(단위: 억원, %, %p)

구분	2021 (A)	2022	2023	2024	2025 (B)	증감 (B-A)
대여금 소계(A)	2,375,959	2,557,349	2,671,499	2,780,566	2,809,488	433,529
총당금 소계(B)	264,337	283,840	299,822	312,424	314,820	50,483
대손설정률(B/A)	11.1	11.1	11.2	11.2	11.2	0.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바) 미수채권**

미수채권이란 정부 고유의 행정활동, 재화 및 용역제공활동 등의 거래에 의하여 장래에 일정한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 채권이다. 회수일이 1년 이내 도래하는 채권을 단기미수채권이라 하고, 회수일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장기미수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재정상태표상 미수채권은 미수국세, 미수사회보험수익, 미수부담금수익, 미수제재금수익, 미수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미수연금수익, 미수이자수익, 미수보험수익, 미수보증수익, 미수기타수익, 기타의미수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수채권은 받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회계기준 및 국가회계편람에서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도록 하고 있다.

기말 채권잔액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연령분석법, 채권잔액비례법, 대손실적률<sup>13)</sup>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이외에도 기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미수채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미수국세로, 2025년 미수채권 중 72.1%(99.7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미수제재금수익이 13.4%(18.5조원)이

13) 연령분석법은 기말 채권잔액을 경과일수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로 상이한 대손률을 적용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이며, 채권잔액비례법은 기말 채권잔액 전체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회수불능채권예상액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말 대손충당금잔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대손실적률법은 채권에 대한 과거 대손률을 산정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이다.

며, 미수제재금수익은 법령, 계약, 규정 위반 등에 따라 부과한 제재금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의미한다.

[2024~2025회계연도 미수채권 잔액명세서]

(단위: 억원, %)

구분	2024(A)	2025(B)	비중	증감	증감률	
				(C=B-A)	(C/A)	
종 류 별	미수국세	801,742	997,304	72.1	195,562	24.4
	미수사회보험수익	29,238	29,248	2.1	10	0.0
	미수부담금수익	52,163	44,869	3.2	△7,294	△14.0
	미수제재금수익	80,707	184,945	13.4	104,238	129.2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6,491	6,041	0.4	△450	△6.9
	미수연금수익	1,371	2,626	0.2	1,255	91.5
	미수이자수익	41,427	40,861	3.0	△566	△1.4
	미수보험수익	7,260	6,665	0.5	△595	△8.2
	미수보증수익	4	4	0.0	0	0.0
	미수기타수익	21,102	45,246	3.3	24,144	114.4
	기타의미수금	30,487	24,816	1.8	△5,671	△18.6
합계	1,071,992	1,382,625	100.0	310,633	29.0	

주: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대손충당금을 고려하지 않은 미수채권 총액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5년간 국가재무제표상 미수채권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5년 미수채권 총액은 138조 2,625억원으로 2021년 말 84조 6,575억원 대비 53조 6,050억원 증가하였다. 미래의 대손에 대비하여 설정 중인 대손충당금은 2025년 말 67조 1,494억원으로 2021년 36조 5,203억원 대비 30조 6,291억원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25년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최근 5년 중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48.6%에 이르고 있다.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미수채권 중 향후 회수 불가능 위험이 있는 채권 비중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2024~2025년에 회수 불가능 위험이 있는 채권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손충당금 설정률 현황(2021~2025)]

(단위: 억원, %, %p)

구분	2021(A)	2022	2023	2024	2025(B)	증감 (C=B-A)	증감률 (C/A)
미수채권(a)	846,575	903,016	990,522	1,071,991	1,382,625	536,050	63.3
현재가치할인차금(b)	3,956	3,051	2,241	1,536	947	△3,009	△76.1
대손충당금(c)	365,203	404,571	468,754	529,343	671,494	306,291	83.9
장부가액(d=a-b-c)	477,416	495,394	519,528	541,112	710,184	232,768	48.8
대손충당금 설정률(c/a)	43.1	44.8	47.3	49.4	48.6	-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유·무형자산

일반유형자산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sup>14)</sup>한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전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 및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등을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 기타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2025년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명세서를 살펴보면 일반유형자산 750조 1,773억원 중 토지(466조 2,274억원) 및 전비품및소모성군수품(134조 4,827억원)의 장부가액 비중이 큰 편이며, 2024년 대비 총 12조 8,516억원 증가하였는데, 주로 전비품및소모성군수품(5조 1,292억원 증가), 건물(2조 9,628억원 증가) 등의 장부가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2025년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426조 4,496억원 중 국도가 179조 3,386억원, 고속국도가 76조 4,070억원으로 비중이 큰 편이며, 하천이 2024년 대비 2조 2,965억원 증가하여 전체 사회기반시설 장부가액은 2024년 대비 2조 4,666억원 증가하였다.

14) 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은 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②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검수 또는 국유재산대장 등의 등재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하지만, 자산이 미등기 상태이거나 국유재산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았더라도 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한다면 당해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2024~2025회계연도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명세서]

(단위: 억원)

구분	2024 장부가액 (A)	2025				증감 (B-A)	
		장부가액 (B)	감가상각 누계액	사용 수익권	재평가 이익		
일반 유형 자산	토지	4,646,064	4,662,274	-	7,406	2,630,434	16,210
	건물	700,707	730,335	140,463	15,828	26,399	29,628
	구축물	102,201	98,809	119,997	37	2,007	△3,392
	전비품및소모성군수품	1,293,535	1,344,827	675,153	-	-	51,292
	기계장치	52,806	55,649	61,944	162	323	2,843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126,580	130,210	135,274	-	3,335	3,630
	기타일반유형자산	95,737	97,661	21,742	-	70,370	1,924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355,627	382,008	-	-	-	26,381
소계	7,373,257	7,501,773	1,154,572	23,433	2,732,869	128,516	
사회 기반 시설	국도	1,799,401	1,793,386	36,582	1	507,939	△6,015
	고속국도	777,183	764,070	69,155	853,844	265,803	△13,113
	철도	418,805	414,266	98,927	149,985	138,578	△4,539
	항만	215,346	225,263	20,582	26,690	85,281	9,916
	댐	49,707	45,470	4,244	30,290	22,333	△4,237
	공항	44,808	44,802	2,952	10,313	20,442	△7
	하천	729,137	752,101	13,467	0	248,216	22,965
	상수도	27,050	27,590	16,126	44,935	10,543	540
	국가어항	19,152	19,061	5,379	131	5,919	△91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159,241	178,486	-	-	-	19,245
소계	4,239,830	4,264,496	267,413	1,116,188	1,305,054	24,66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5년간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대비 2021년에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이 162조 2,508억원 증가하였는데 동 자산 증가는 국유재산 재평가<sup>15)</sup>로 인한 가치 증가에 기인한다.

15) 국유재산 재평가는 재평가 기준일 현재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표시하기 위해 화폐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국유재산법」 제68조에 의해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

2021년 정부는 「국유재산법」 제9조에 의거한 「202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발생주의 도입(2011년) 이후 10년 만에 국유재산(토지, 건물, 입목축, 기계기구, 공작물, 선박및항공기)에 대해 전면 재평가하여 재산가치를 현행화하였다. 그 결과 2021년의 자산재평가로 평가증 240.9조원, 평가감 92.6조원이 발생하여 순자산은 총 148.3조원 증가했고, 자산종류별로는 일반유형자산이 86.1조원, 사회기반시설이 62.2조원 증가한 바 있다.<sup>16)</sup>

[2021~2025년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21(A)	2022	2023	2024	2025(B)	증감 (B-A)
일반유형자산계(a)	7,040,356	7,103,988	7,208,863	7,373,257	7,501,773	461,417
사회기반시설계(b)	4,101,853	4,228,597	4,224,127	4,239,830	4,264,496	162,643
합계(a+b)	11,142,209	11,332,585	11,432,990	11,613,087	11,766,269	624,060
전년 대비 증감	1,622,508	190,376	100,405	180,097	153,182	-

자료: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는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경우 또는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을 재평가하고 있다. 2025년의 경우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로

는 바에 따라 재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에서는 재평가의 최초 평가연도, 평가방법 및 요건 등 세부회계처리에 관하여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을 정하고 있다. 동 지침 문단47에서는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하거나,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6) 국회예산정책처, 「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 문제와 개선과제」, 2023, p.102.

[2021년 국유재산 재평가 현황]

(단위: 억원)

자산종류	재평가 전 장부가액(A)	재평가금액 (A+D)	평가증(B)	평가감(C)	순평가증(감) (D=B-C)
일반유형자산	4,635,965	5,497,320	1,156,907	295,552	861,355
사회기반시설	4,228,187	4,849,681	1,252,371	630,877	621,494
자산재평가 총계	8,864,152	10,347,001	2,409,278	926,430	1,482,848

자료: 부처별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인하여 평가증 7조 715억원, 평가감 4조 3,505억원이 발생하여 순자산은 총 2조 7,210억원 증가했고, 자산종류별로는 일반유형자산이 1조 2,759억원 증가, 사회기반시설이 1조 4,451억원 증가했다.<sup>17)</sup>

[2025년 국유재산 재평가 현황]

(단위: 억원)

자산종류	재평가 전 장부가액(A)	평가증(B)	평가감(C)	순평가증 (B-C)	재평가금액 (A+B-C)
일반유형자산	217,377	31,123	18,364	12,759	230,136
사회기반시설	53,559	39,592	25,141	14,451	68,010
자산재평가 총계	270,937	70,715	43,505	27,210	298,14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자산재평가로 인한 ‘자본확충’ 효과는 향후 실질적인 현금유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평가대상에 해당되는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은 대부분 매각 목적이 아니라 사용 목적으로 보유한 것임에 따라 국유재산의 재평가로 인한 이익(자본 증가)이 현금유입 또는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무형자산의 취득, 감가상각, 감액, 처분은 대부분 유형자산의 회계처리를 그대로 따르나 무형자산의 경우 재평가를 수행하지 않으며, 감가상각을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반영하지 않고 자산에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는 것이 다르다.

한편, 2025년 국가 무형자산 장부가액은 2조 7,725억원으로 2024년(2조 8,040억원) 대비 315억원 감소하였다.

17) 자산을 재평가할 때 감가상각누계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며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은 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하고,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 그 감소액은 자산재평가손실로 인식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2024~2025회계연도 국가 재정상태표(무형자산)]

(단위: 억원)

구분	계정과목	2024(A)	2025(B)	증감(B-A)
무형 자산	1. 산업재산권	659	911	252
	2. 광업권	10	10	-
	3. 소프트웨어	25,477	24,854	△623
	4. 기타무형자산	1,895	1,951	56
소계		28,040	27,725	△315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6.5.

③ 기타자산

기타자산은 금융자산과 유·무형자산 이외의 자산으로 선급금 45.4조원, 재고 자산 2.4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선급금이 3.8조원 증가하고 재고 자산은 0.6조원 감소하였다.

선급금은 일반적 상거래에 의한 상품, 원재료, 저장품 등 자산의 취득 또는 외주가공을 위하여 구입처나 외주가공처에 거래의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선지급하는 금액으로 1년 후에 취득이 완료되어 본 계정으로 대체될 금액을 말한다. 선급비용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차입금 등에 대한 선급이자와 임차료, 보험료, 광고료, 지급 수수료 등에 대한 선급비용 중 1년 후에 비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말한다.

[2024~2025회계연도 국가 재정상태표(기타자산)]

(단위: 억원)

구분	계정과목	2024(A)	2025(B)	증감(B-A)
기타 자산	1. 재고자산	30,166	24,374	△5,792
	2. 저장품	2,597	1,778	△819
	3. 선급비용	9,649	10,245	596
	4. 선급금	416,707	454,397	37,690
	5. 선급법인세	1,159	785	△374
	6. 부가세대급금	1	2	1
	7. 기타기타자산	5,896	7,798	1,902
소계		466,175	499,378	33,203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6.5.

## (2) 부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르면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부채는 국가채무와는 다른 개념인데, 국가채무는 재정상 필요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하는 부담액으로 현재 시점에서 상환 부담 의무를 가지며, 단식부기·현금주의에 따른 예산회계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한편 부채는 국가채무를 포함하여 차입과 관련 없이 향후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행 금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미래시점에 경제적 자원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의무액이며, 복식부기·발생주의에 따른 재무회계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발생주의 부채항목 중 채무로 분류되는 것은 국공채 및 차입금 등 금전채무로서 이자를 지급하는 항목이며 미지급금이나 충당부채, 준비금 및 파생상품 등은 채무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며 2025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부채는 총 2,772.0조원으로 차입부채 1,306.5조원, 충당부채 1,417.5조원, 기타부채 47.9조원이며, 차입부채와 충당부채가 각각 전체 부채의 47.1%와 51.1%를 차지하고 있다. 차입부채 증가분 147.3조원 중 대부분이 국채의 증가(139.9조원)이며, 그 밖에 청약저축은 4.1조원이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 재정상태표상 부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4~2025회계연도 국가 재정상태표(부채)]

(단위: 조원)

구분	계정과목	2024(A)	2025(B)	증감(B-A)
I. 차입부채	1. 국채	989.9	1,129.9	139.9
	2. 차입금	2.3	2.2	△0.0
	3. 기타차입부채	167.0	174.5	7.4
소계		1,159.2	1,306.5	147.3
II. 총당부채	1. 연금총당부채	1,312.9	1,344.4	31.5
	2. 퇴직수당총당부채	58.9	61.4	2.4
	3. 보증총당부채	6.4	6.2	△0.2
	4. 보험총당부채	0.7	0.8	0.0
	5. 기타총당부채	4.5	4.8	0.2
소계		1,383.5	1,417.5	34.1
III. 기타부채	1. 사회보험부채	32.6	36.3	3.7
	2. 선수수익	5.3	6.2	0.9
	3. 선수금	2.0	2.1	0.1
	4. 기타의기타부채	3.1	3.3	0.2
소계		43.0	47.9	4.9
합계		2,585.7	2,772.0	186.3

주: 기타차입부채는 공채, 미지급금, 금융리스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6.5.

① 차입부채

국채는 부족한 세입을 보전하고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하며, 국채는 「국채법」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확보된 국채발행 한도 내에서 발행한다.<sup>18)</sup> 공채는 기타차입부채에 포함되어 있고,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중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채권을 의미하며, 중소기업창업및진흥채권 등이 있다.

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국내 및 국외의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이며, 차입 당시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으로, 만기가 1년 후인 차입금은 장기차입금으로 표시한다.

18) 국채는 2025년 말 기준 국고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권'), 국민주택채권, 국제기구 출자재정증권 등 네 가지 종류가 발행되고 있다.

리스는 일정 기간 설비 등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회사로부터 이전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 중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의 형태로 자산을 임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장기차입금)로 각각 인식하게 된다.

2025년 국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고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 국제기구 출자재정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액면금액 1,267조 3,168억원 중 국고채권이 1,162조 1,896억원(91.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채는 2024년 대비 139조 9,421억원(14.1%)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것이다.

[2024~2025회계연도 국채 잔액명세서]

(단위: 억원, %)

구분		이자율	2024 (A)	2025 (B)	증감 (C=B-A)	증감률 (C/A)
액면 금액	국고채권	0.0 ~ 5.8	10,487,472	11,621,896	1,134,424	10.8
	외국환평형기금채권	0.0 ~ 5.6	127,987	295,129	167,142	130.6
	국민주택채권	0.0 ~ 1.8	791,029	756,049	△34,980	△4.4
	국제기구 출자재정증권	0.0 ~ 0.0	94	94	0	0.0
1. 액면금액 소계		-	11,406,582	12,673,168	1,266,586	11.1
2. (국채할인발행차금)		-	△251,020	△254,731	△3,711	1.5
3. 국채할증발행차금		-	119,757	121,270	1,512	1.3
장부가액(1+2+3)		-	11,275,319	12,539,706	1,264,386	11.2
(자기국채)		-	△1,376,025	△1,240,990	135,035	-9.8
합계			9,899,295	11,298,716	1,399,421	14.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 차입금은 전액 국내차입금이며, 단기차입금과 유동성장기차입금은 3,000 억원으로 2024년 대비 2,595억원 증가하였고, 장기차입금은 1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원이 감소하였다.

[2024~2025회계연도 차입금 잔액명세서]

(단위: 억원)

구분		2024 (A)	2025 (B)	증감 (C=B-A)
국내 차입금	1. 단기차입금	-	2,500	2,500
	2. 유동성장기차입금	405	500	95
	3. 장기차입금	22,000	19,000	△3,000
	(현재가치할인차금)	-	-	-
소계		22,405	22,000	△405
기타		201	183	△18
합계		22,606	22,183	△423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② 총당부채

총당부채란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하며, ①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②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③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재정상태표상의 부채로 인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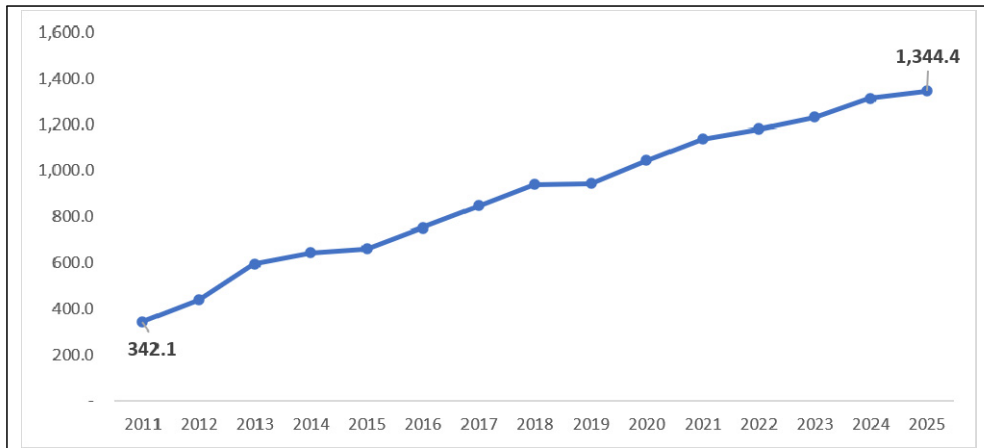
### (가) 연금총당부채

국가 재정상태표에 계상된 연금총당부채는 결산일 기준으로 재직자, 연금수급자에게 미래 장기에 걸쳐 지급할 연금액을 장래 추정보수와 추정 근무기간 등의 가정을 반영,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미래의 연금수입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연금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연금사업’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가입자의 퇴직,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연금총당부채 산정대상에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만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sup>19)</sup> 연금총당부채는 공무원연금총당부채와 군인연금총당부채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 연금총당부채는 1,344조 4,285억원이며 2011년 342조 860억원 대비 1,002조 3,425억원(293.0%) 증가한 금액이다.

[2011~2025년 연금총당부채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19) 국가회계기준에서는 ‘교환거래’ 해당 여부에 따라 국가재무제표상 연금총당부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국가를 위해 근로서비스를 제공한 공무원이나 군인이 향후에 국가로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교환거래에 해당하며, 이와 같이 ‘재화 및 용역의 수취 대가로 미래 금전·기타자원의 제공 약속이 있는 거래’가 있을 경우 관련 연금총당부채를 국가의 부채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경우에는 그 연금지급의무가 국민 개개인과의 계약 관계에 따른 의무가 아니라는 점과 주요국의 정부가 사회보장 의무와 관련된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비교 관점을 고려하여 연금총당부채를 국가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 (나) 퇴직수당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는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상 퇴직수당에 대한 지급의무에 대한 부채를 말한다. 퇴직수당충당부채의 추정금액은 장래 예상퇴직시점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수당 금액으로 예상퇴직시점의 장래 추정보수와 전체추정근무기간 등 보험수리적 가정을 반영하여 산정한 퇴직수당추정치금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재직기간까지 귀속되는 금액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산정하여 인식한다.

2025회계연도 퇴직수당충당부채는 61조 3,753억원으로 전년(58조 9,271억원) 대비 2조 4,482억원 증가하였다.

## (다) 보험충당부채

2025년 부처별 보험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보험 및 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통상부의 무역보험(무역보험기금),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및 양식수산물 피해를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나아가 농어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05년 도입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재해재보험, 북한에 투자하는 남한 기업이 남북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 지을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통일부의 경제협력사업보험(남북협력기금)<sup>20</sup>으로 구분된다.

2024~2025년 무역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 관련 충당부채의 기초 및 기말 잔액은 다음과 같으며, 농어업재해재보험의 보험충당부채가 2025년 316억원 증가하여 2025년 말 보험충당부채의 잔액은 7,545억원이다.

20) 다만, 남북협력기금은 경제협력사업보험의 경우 정치적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장래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워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44조 및 「보험회계처리지침」(재정경제부고시)에 따른 보험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2024~2025회계연도 보험충당부채 변동 내역]

(단위: 억원)

구분		2024(A)	2025(B)	증감(C=B-A)
무역 보험	기초잔액(a)	6,419	5,603	△816
	증가액(b)	767	592	△175
	감소액(c)	1,582	545	△1,037
	기말잔액(d=a+b-c)	5,603	5,650	47
농어업 재해 재보험	기초잔액(ㄱ)	772	1,579	807
	증가액(ㄴ)	807	316	△491
	감소액(ㄷ)	-	-	-
	기말잔액(ㄹ=ㄱ+ㄴ-ㄷ)	1,579	1,895	316
합계	기초잔액(□)	7,191	7,182	△9
	증가액(▢)	1,573	907	△666
	감소액(⊖)	1,582	545	△1,037
	기말잔액(○=□+▢-⊖)	7,182	7,545	363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라) 기타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는 연금, 퇴직수당, 보증 및 보험충당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충당부채를 의미한다. 기타충당부채는 소송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송충당부채는 소송사건 등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추정하여 부채로 인식한다.

[2024~2025회계연도 기타충당부채 명세서]

(단위: 억원)

구분	2024(A)	2025(B)	증감(C=B-A)
소송충당부채	22,214	20,392	△1,822
퇴직급여충당부채	7,122	7,459	337
기타의기타충당부채	15,866	19,736	3,870
합계	45,202	47,587	2,385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③ 기타부채

기타부채는 차입부채와 충당부채 이외의 부채로 사회보험부채 36.3조원, 선수 수익 6.2조원 및 선수금 2.1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험부채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업 운용에 따라 인식하는 부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전년도 지급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이를 사회보험부채로 인식한다. 고용보험은 27.9조원, 산재보험은 7.6조원을 각각 인식하고 있다.

④ 우발부채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에서는 충당부채를 지출 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정의하고, 발생가능성이 확실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발부채<sup>21)</sup>로 주석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1)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국가회계실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2.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해당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아니하는 현재의 의무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구분		금액 추정 가능성	
		신뢰성 있는 추정 가능	신뢰성 있는 추정 불가능
자원유출 가능성	매우 높음	충당부채로 인식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
	희박하지 않음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	
	희박함	공시하지 않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또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에서는 우발부채의 유형별로 그 내용을 주석에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주석 21.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에서 우발부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하고 있다.

[국가재무제표의 주석 공시 중인 우발사항 주요 유형]

2025회계연도 주석 21. 우발사항 주요 유형		내용
① 지급보증		보증계약
② 중요한 계약사항		계약
③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우발상황
④ 최소운영수입보장내역(BTO 등)		계약
⑤ 기타 우발채무에 대한 내용, 자원의 유출에 따른 재무적 영향	국민연금기금 자금보충약정	약정
	수자원공사 금융비용지원	약정
	PSO <sup>1)</sup> 공익서비스 비용	법률
⑥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발자산		우발상황
⑦ 담보제공자산		금융계약
⑧ 계류 중인 소송사건		우발상황

주: 1) PSO 공익서비스 비용(Public Service Obligation, 이하 'PSO')은 철도 운영자의 공공서비스(공공목적의 운임감면, 벽지노선의 운영 등) 제공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부담한 비용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 (가) 지급보증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지급보증 중 보증채무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원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국민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채무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며, 「국가재정법」 제92조제1항에서는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25년 말 기획재정부의 보증채무 규모는 15조 6,200억원이며 국가보훈부의 보증채무 규모는 6,375억원이다.

[2025년 국가 보증채무]

(단위: 억원)

중앙관서	피보증처	보증구분	지급보증금액	
			당기말	전기말
기획재정부	한국장학재단	지급보증	107,500	103,500
	한국산업은행	지급보증	-	2,100
	한국수출입은행	지급보증	48,700	4,000
합계			156,200	109,600
국가보훈부	국민은행	장기저리 대부	4,867	5,315
	농협은행	장기저리 대부	1,507	1,555
	합계		6,375	6,870
중소벤처 기업부	하나은행	대환대출	284	405
	신한은행	대환대출	158	233
	합계		442	638

주: 국가보훈부는 피보증처의 협약에 따른 양수도 대상 채권의 양수 사유(6개월 이상 미납된 대부 원리금 등) 발생 시 국가유공자 등 대출자를 대신하여 은행에 양수금액을 지급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 (나) 담보제공자산

2025년 국가재무제표상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 중인 부처는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이며, 금융위원회는 임차인 권리보전을 위해 토지 및 건물 118억원(채권 최고액 49억원)을 담보로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환대출 보증을 위해 금융상품 644억원(채권최고액 442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2025년 국가의 담보제공자산]

(단위: 억원)

중앙관서	담보제공자산	장부 가액	채권 최고액	담보제공 이유	담보권자	차입 금액
금융 위원회	토지, 건물 (경기채권관리단)	97	5	임차인 권리보전	수원중앙 신협	0
	건물(의정부지점)	5	10	임차인 권리보전	한국자산 관리공사	0
	건물(안양지점)	16	34	임차인 권리보전	현대자동차	0
중소 벤처 기업부	정기예금	644	442	보증 담보제공	하나은행 등	0

주: 장부가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등을 반영한 회계상의 가치이며, 채권최고액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설정해 두는 최대 한도이므로, 자산가치에 비해 채권최고액이 낮을 수 있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다) 계류 중인 소송사건**

‘계류 중인 소송사건’ 주식사항 중 국가가 피고인 경우를 살펴보면, 국세청의 소송가액이 4조 1,291억원으로 중앙관서별 소송가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1심에서 패소가 선고된 소송사건 237건(현재 2심 진행중, 소송가액 1조 9,931억 원)과 2심에서 패소가 선고된 소송사건 145건(현재 3심 진행중, 소송가액 2조 1,36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청은 이 중 1, 2심 연속패소사건(현재 3심 진행중) 및 3심에서 파기환송된 111건의 사건에 대하여 1조 7,254억원의 총당부채를 설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부당지원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 관련 피고인 사건이 2025년 기준 소송사건 181건(소송가액 1조 8,623억 원)이며, 사건 패소에 따른 소송총당부채 잔액은 2024년 129억 원에서 2025년 138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2025년 계류 중인 소송사건 중 국가가 피고인 경우]

(단위: 건, 억원)

중앙관서	건수	소송가액
국세청	383	41,291
공정거래위원회	181	18,623
법무부	2,139	16,932
관세청	106	6,987
방위사업청	44	6,507
국토교통부	503	4,553
해양수산부	79	4,271
기타	2,389	10,488
합계	5,824	109,65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 나. 분야별 재정운영표<sup>22)</sup>

분야별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15대 분야의 정책 또는 사업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분야별 재정운영표와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와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또한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sup>23)</sup>

2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재정운영표

23)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2024~2025회계연도 국가 분야별 재정운영표]

(단위: 조원, %)

구분	2024(A)	2025(B)	증감액(C=B-A)	증감률(C/A)
I. 사업순원가	562.3	618.8	56.5	10.0
II. 관리운영비	30.6	32.2	1.6	5.1
III. 비배분비용	15.7	28.0	12.3	78.1
IV. (-) 비배분수익	72.7	75.9	3.2	4.4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536.0	603.0	67.1	12.5
VI. 비교환수익 등	474.6	539.0	64.4	13.6
VII. 재정운영결과(V-VI)	61.4	64.0	2.6	4.3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6.5.

(1) 사업순원가<sup>24)</sup>

사업순원가는 분야별 총원가에서 분야별 수익을 차감해서 산정하며, 분야별 총원가는 분야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합계에서 다른 분야로부터 배부 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분야에 배부한 원가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2025년의 사업순원가는 618.8조원으로, 2024년 대비 56.5조원(10.0%) 증가하였다.

[사업순원가 산출]

<p>사업순원가 = 분야별 총원가 - 분야별 수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총원가 = (분야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합계) + (다른 분야로부터 배부 받은 원가) - (다른 분야에 배부한 원가)</li> <li>• 분야별 수익: 분야별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li> </ul>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4) 국가통합 재정운영표상에서만 I.사업순원가가 표시된다.

## (2) 재정운영순원가<sup>25)</sup>

재정운영순원가는 사업순원가 합계에서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빼서 계산하며,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재정활동에 소요되는 순원가정보를 제공한다. 2025년의 재정운영순원가는 603.0조원으로, 2024년 대비 67.1조원(12.5%) 증가하였다.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말한다. 비배분비용 및 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수익을 말한다.

### [재정운영순원가 산출]

<p>재정운영순원가 = 사업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관리운영비: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관리운영비를 합산한 금액</li><li>• 비배분비용: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비배분비용을 합산한 금액</li><li>• 비배분수익: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비배분수익을 합산한 금액</li></ul>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하여 산출하는데, 비교환수익 등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및 제재금 등의 수익과 순자산 증가 또는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거래를 의미한다. 비교환수익은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사회보험수익, 채무면제이익, 기타비교환수익, 기타재원조달및이전수익으로 구분된다.

25) 중앙관서 또는 기금 재정운영표상에서는 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및 수익이 모두 표시된 후 이를 모두 반영한 V.재정운영순원가가 표시된다.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표상의 재정운영순원가는 603.0조원이며, 비교환수익 등 539.0조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64.0조원이다. 이는 재정운영에 따른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였음을 나타낸다. 재정운영순원가는 전년대비 67.1조원(12.5%)이 증가하였고, 비교환수익 등은 64.4조원(13.6%)이 증가하여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도 61.4조원에서 64.0조원으로 전년대비 2.6조원(4.3%) 증가하였다.

[재정운영결과 산출]

<p>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익 등</p> <p>• 비교환수익 등: 제28조제2항제2호의 비교환수익과 그 밖에 자원 이전거래 금액</p>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다. 순자산변동표<sup>26)</sup>**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의미하며 기업회계의 자본변동표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국가 순자산변동표는 전년도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의 구성요소인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조정항목은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초래하는 거래이나, 수익·비용 거래나 자원의 조달 및 이전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이며, 투자증권평가손익, 자산재평가이익 등이 해당된다.

26)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순자산변동표)

[2024~2025회계연도 국가 순자산변동표]

(단위: 조원, %)

구분	2024 (A)	2025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I. 당기 기초순자산	569.9	632.7	62.8	11.0
II. 재정운영결과	61.4	64.0	2.6	4.3
III. 조정항목	124.2	252.8	128.6	103.5
1. 투자증권평가손익	122.3	210.9	88.6	72.4
2. 자산재평가이익	△1.9	2.8	4.7	249.3
3. 보험수리적손익	△44.8	13.5	58.3	130.1
4. 기타순자산의증감	48.6	25.6	△23.0	△47.4
IV. 당기 기말순자산(I+II+III)	632.7	821.5	188.8	29.8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라.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의 유입 및 유출 내역을 운영, 투자, 재무 활동으로 구분해 각 활동의 현금흐름(유입-유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현금흐름 표상 현금에는 재정상태표상 현금을 포함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의미한다.

투자활동은 자금의 용자와 회수, 투자증권과 유·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활동이며, 재무활동은 자금의 차입과 상환, 국채의 발행과 상환 등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말한다. 운영활동은 국가의 모든 활동 중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2025회계연도 운영활동은 유입 601.2조원, 유출 631.6조원으로 현금 30.4조원이 유출되었으며, 투자활동은 유입 437.4조원, 유출 554.6조원으로 현금 117.2조원이 유출되었다. 재무활동은 유입 256.0조원, 유출 110.1조원으로 현금 145.9조원이 유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금에는 1.8조원 감소하였다.

2025회계연도는 재무활동, 즉 국채의 발행 등 재원을 145.9조원 조달하여 투자활동에 117.2조원, 운영활동에 30.4조원을 활용하였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2025년 현금흐름표]

(단위: 조원)

구분	2025
I.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a)	△30.4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	601.2
2.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	631.6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117.2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	437.4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	554.6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	145.9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	256.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	110.1
IV. 현금의 증감(a+b+c)	△1.8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6.5.

## 2-1.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 확대 및 장기재정위험 관리 필요

국가채무(D1)는 정부가 민간이나 해외에 원리금의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를 의미한다. 「국가재정법」 제91조<sup>1)</sup>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sup>2)</sup>는 국가채무에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발행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정부의 대지급

박소희 예산분석관(parksh@assembly.go.kr, 6788-4683)

### 1) 「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17., 2020. 6. 9.>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2. 해당 회계연도의 국채 발행 또는 차입금 등에 대한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발행 계획 또는 차입 계획과 그에 따른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 계획
4.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의 증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2020. 6. 9.>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1.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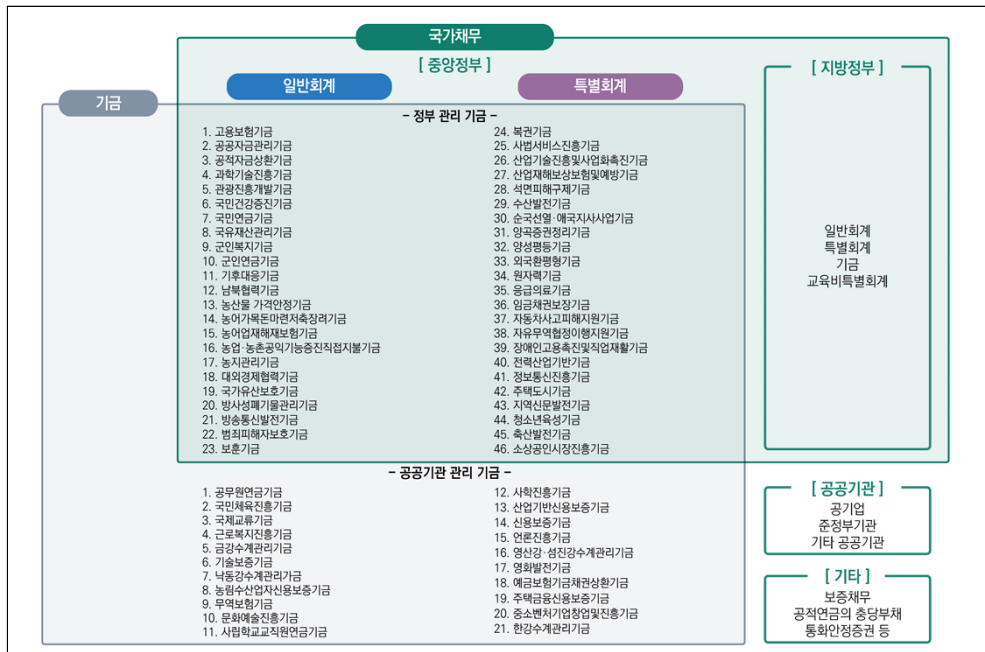
### 2)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① 법 제9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1. 법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현황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9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라 함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지 않는 회계 또는 기금을 말한다.
- ③ 법 제9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법 제92조의 국가보증채무 중 정부의 대지급(代支給) 이행이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 ④ 삭제 <2008. 2. 29.>

(代支給) 이행이 확정된 국가보증채무<sup>3)</sup>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 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지 않는 회계 또는 기금의 금전채무<sup>4)</sup>는 국가채무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채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과 ‘발행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도 국가채무에서 제외하고 있다.<sup>5)</sup>

[국가채무 포괄범위]



자료: 기획예산처

정부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국가결산 시 재무제표상 부채도 산출하고 있는데, 국가채무(D1)와 재무제표상 부채는 포괄범위, 인식기준, 내부거래 제거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국가채무(D1)는 정부 관리기금 및 지방정부 채무를 집계하는 반면, 재

3) 국가보증채무란 정부가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보증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채무이행 의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가 이러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헌법」 제58조와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먼저 거쳐야 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등 21개 기금은 국가채무 범위에서 제외된다.(자세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 「국가채무 통계정보보고서」, 2019.12를 참고)

5)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재정」, 2026.3., p.97

무제표상 부채는 정부 관리기금 및 공공기관 관리기금 채무를 포함하고, 지방정부 채무는 제외하고 있다. 국가채무(D1)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채무를 집계하는 반면, 재무제표상 부채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부채를 인식하고,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재무제표상 부채는 정부관리 회계·기금과 공공기관 관리기금과의 거래, 국민연금기금 등이 보유한 국·공채 등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산출한다.<sup>6)</sup>

즉 국가채무와 국가부채<sup>7)</sup>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인식기준이다. 국가채무는 현금주의,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방식으로 부채를 인식한다. 따라서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연금충당부채 등의 비확정 부채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포괄범위이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 관리기금(21개)의 차입금 및 공채발행액<sup>8)</sup>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부채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셋째, 내부거래 제거 여부이다. 국가부채 산출 시에는 중앙관서 회계·기금과 공공기관 관리기금과의 거래 및 자기 국·공채 등 내부거래를 제거한다.<sup>9)</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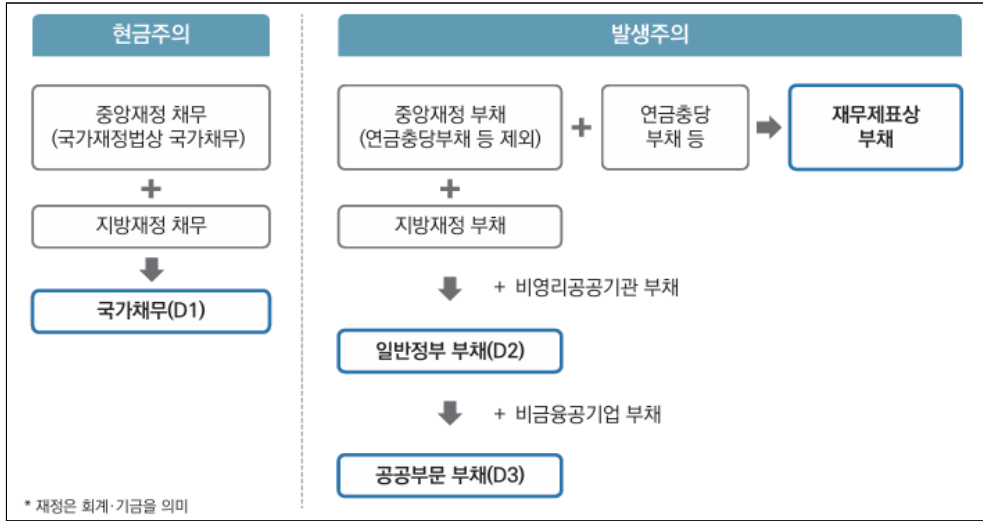
6) 재정경제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 「국가채무와 부채의 이해」

7) 본 절의 국가부채는 국가결산보고서상 국가재무제표의 부채를 대상으로 한다.

8) 중소기업진흥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9) 국가채무에서는 국민연금기금 등에서 보유 중인 국·공채 등은 채무로 인식하고 있다.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



자료: 재정경제부, 「2021년 월간재정동향 6월호」, 2021.6.

2025년 국가채무와 부채의 차이를 살펴보면, 국채에서 국가부채보다 국가채무가 12.5조원이 크며, 이는 국가부채는 채권할인 및 할증발행차금을 인식하지만 국가채무는 현금주의에 따라 채권을 액면가액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차입금에서는 공공기관관리기금의 차입금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0.7조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등 발생주의 부채는 회계상 발생하는 부채로, 현금주의에 따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기관관리기금이 발행하는 공채 금액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고 국가부채에만 포함되며, 국가부채는 국민연금기금 등이 보유한 국·공채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산출된다.

[2025년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비교]

(단위: 조원)

구분		부채(A)	국가 채무(B)	차이 (A-B)	차이 이유
중앙 정부 채무	국채	1,254.0	1,266.5	△12.5	국가부채는 할인·할증발행차금 인식, 현금주의에 따라 국가채무는 액면가액 인식
	차입금	2.2	1.5	0.7	공공기관관리기금의 차입금은 국가채무에 미포함
	국고채무부담행위	-	0.1	△0.1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부채에 미포함
발생 주의 부채	연금총당부채	1,344.4	-	1,344.4	발생주의에 따라 부채 인식
	퇴직수당총당부채	61.4	-	61.4	
	기타	210.3	-	210.3	
공채		24.2	-	24.2	공공기관관리기금 발행 공채 금액은 국가채무에 미포함
기타		-	36.4	△36.4	지방정부 순채무
소계		2,896.5	1,304.5	1,592.0	-
내부 거래	자기국채	△124.1	-	△124.1	국가부채는 국민연금기금 등이 보유한 국·공채 내부거래 제거
	자기공채	△0.4	-	△0.4	
합계		2,772.0	1,304.5	1,467.5	-

자료: 재정경제부

2021~2025년간 국가채무 및 국가부채의 추이를 살펴보면, 국가채무는 2021년 970.7조원에서 2025년 1,304.5조원으로 333.8조원 증가했으며, GDP 대비 비율은 같은 기간 43.7%에서 49.0%로 5.3%p 증가하였다. 국가부채는 2021년 2,195.3조원에서 2025년 2,772.0조원으로 576.7조원 증가했으며, GDP 대비 비율은 같은 기간 98.7%에서 103.6%로 4.9%p 증가하였다.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는 2021년 1,224.6조원에서 2025년 1,467.5조원으로 242.9조원 확대되었다.

국가채무와 국가부채가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금총당부채이며, 연금총당부채의 규모는 2021년 1,138.1조원에서 2025년 1,344.4조원으로 206.3조원 (18.1%)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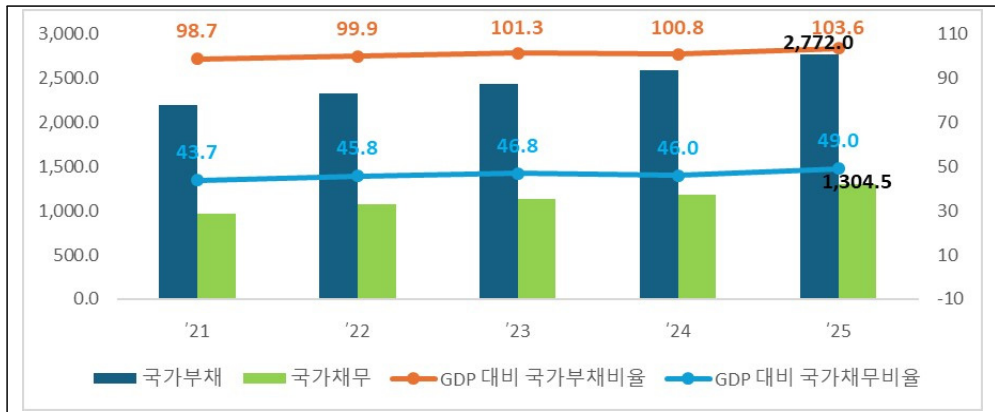
[2021~2025회계연도 국가채무 및 국가부채]

(단위: 조원, %, %p)

구분	'21 (A)	'22	'23	'24	'25 (B)	증감 (B-A)
국가부채(a)	2,195.3	2,326.0	2,439.5	2,585.7	2,772.0	576.7
(GDP 대비)	(98.7)	(99.9)	(101.3)	(100.8)	(103.6)	(4.9)
국가채무(b)	970.7	1,067.4	1,126.8	1,175.0	1,304.5	333.8
(GDP 대비)	(43.7)	(45.8)	(46.8)	(46.0)	(49.0)	(5.3)
차이(a-b)	1,224.6	1,258.6	1,312.7	1,410.7	1,467.5	242.9

자료: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단위: 조원, %)



자료: 각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채무는 국채<sup>10)</sup>, 차입금<sup>11)</sup>, 국고채무부담행위<sup>12)</sup>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국채가 국가채무의 약 97.1%(1,266.5조원)를 차지한다. 2025년의 국채는 국고채

10) 국가의 재정수지상의 세입부족액을 보전하고 수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채법」 제4조에 따라 국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는 국고채권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다른 회계·기금 또는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는 국채로 구분된다.

11)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직접 차입한 금액을 의미한다.

12)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라 국가가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즉, 일반적인 예산사업은 예산확보 후 사업을 집행하는 데 반해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확보 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미리 지출원인행위(계약)를 하고 실제 지출은 이후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된다.

권<sup>13)</sup> 1,161.3조원, 국민주택채권<sup>14)</sup> 75.6조원,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sup>15)</sup> 29.5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채무가 2021년 970.7조원에서 2025년 1,304.5조원으로 333.8조원 증가한 주요 원인은 국채 증가(329.5조원) 때문이다. 국채 중 국고채권이 317.6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탁, 교통시설 특별회계 예탁 등에 기인한다.

[국가채무 종류별 규모 및 증감 추이]

(단위: 조원)

구분	'21 (A)	'22	'23	'24	'25 (B)	증감 (B-A)
국채(a)	937.0	1,031.5	1,091.1	1,139.8	1,266.5	329.5
국고채권	843.7	937.5	998.0	1,047.9	1,161.3	317.6
국민주택채권	82.2	82.2	81.6	79.1	75.6	△6.6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1.2	11.8	11.5	12.8	29.5	18.3
차입금(b)	2.0	1.9	1.2	1.2	1.5	△0.5
국내 차입금	2.0	1.9	1.2	1.2	1.5	△0.5
해외 차입금	-	-	-	-	-	-
국고채무부담행위(c)	0.1	0.1	0.2	0.2	0.1	0.0
기타(d)	31.6	33.9	34.3	33.8	36.4	4.8
국가채무(a+b+c+d)	970.7	1,067.4	1,126.8	1,175.0	1,304.5	333.8

자료: 각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됨

국가부채는 크게 차입부채, 충당부채, 기타부채로 구성되고, 차입부채는 국채, 차입금, 기타차입부채의 합계이며, 충당부채는 연금충당부채·퇴직수당충당부채·

- 13)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국채로, 국채법을 근거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된다. 국채 중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가장 많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발행된 국고채 유통수익률이 지표금리 역할을 하고 있다.
- 14) 국민주택채권(제1종)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이며, 「주택도시보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해당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이 매입하는 채권이다.
- 15)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되는 국채로, 외국환거래법을 근거로 외국환평형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며 표시 통화에 따라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구분된다.

보증충당부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차입부채는 2024년 1,159.2조원에서 2025년 1,306.5조원으로 147.3조원 증가(12.7%)했으며, 총당부채는 같은 기간 1,383.5조원에서 1,417.5조원으로 34.1조원 증가(2.5%)하였다. 총당부채 증가액(34.1조원) 중 대부분은 연금충당부채 증가액(31.6조원)이다. 국가부채는 2024년 2,585.7조원에서 2025년 2,772.0조원으로 186.3조원 증가(7.2%)했으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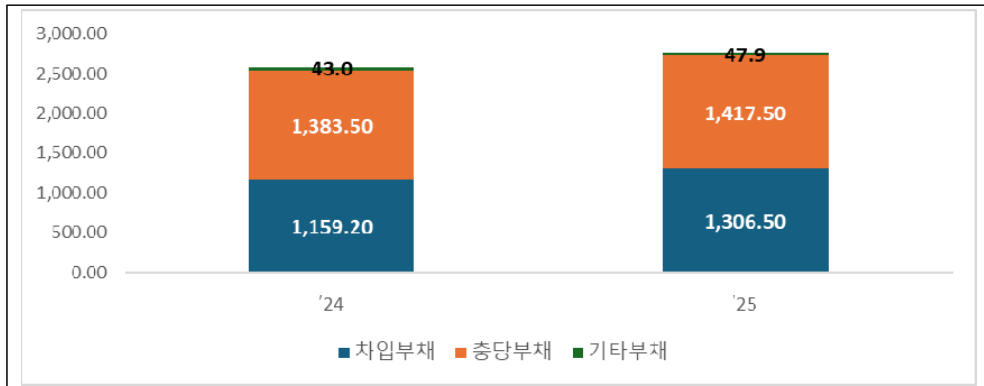
[국가부채 종류별 규모 및 증감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24(A)	2025(B)	증감(C=B-A)	증감률(C/A)
차입부채(a)	1,159.2	1,306.5	147.3	12.7
총당부채(b)	1,383.5	1,417.5	34.1	2.5
연금충당부채	1,312.9	1,344.4	31.5	2.4
기타부채(c)	43.0	47.9	4.9	11.4
국가부채(a+b+c)	2,585.7	2,772.0	186.3	7.2

주: '25년도 결산부터 부채 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전기('24년도)부터 작성 가능함  
 자료: 재정경제부

(단위: 조원)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부채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2024~2025년간 차입부채가 45~47%, 총당부채가 5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는 1.7%이다. 국가부채 중 총당부채가 구성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총당부채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어 있음에 기인하며, 연금충당부채는 국가부채의 49~51%를 구성하고 있다.

[국가부채 종류별 구성비율 및 증감 추이]

(단위: %, %p)

구분	2024(A)	2025(B)	증감(B-A)
차입부채(a)	44.8	47.1	2.3
총당부채(b)	53.5	51.1	△2.4
연금총당부채	50.8	48.5	△2.3
기타부채(c)	1.7	1.7	0.0
국가부채(a+b+c)	100.0	100.0	0.0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부채 중 연금총당부채는 공무원연금총당부채와 군인연금총당부채로 나누어지며, 2025년 기준 공무원연금총당부채가 1,076.4조원(80.1%), 군인연금총당부채가 268.1조원(19.9%)이다. 연금총당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무원연금총당부채는 2026년 공무원처우개선을 실적치 적용(연평균 2.3% → 3.5%, 평균 1.2%p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4.1조원 증가하였다. 군인연금총당부채 또한 공무원처우개선을 상승, 할인율 변동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7.5조원 증가하였다.

2021~2025년간 공무원연금총당부채는 171.9조원 증가(19.0%)하였으며, 군인연금총당부채는 34.5조원 증가(14.8%)하여 공무원연금총당부채의 증가율이 군인연금총당부채보다 4.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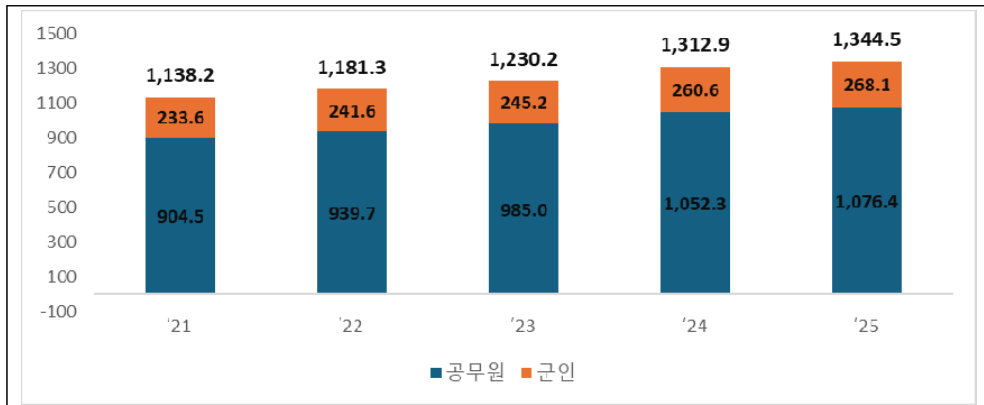
[연도별 공무원, 군인연금총당부채(2021~2025)]

(단위: 조원, %)

구분	'21 (A)	'22	'23	'24	'25 (B)	증감 (C=B-A)	증감률 (C/A)
공무원	904.5	939.7	985.0	1,052.3	1,076.4	171.9	19.0
군인	233.6	241.6	245.2	260.6	268.1	34.5	14.8
합계	1,138.1	1,181.3	1,230.2	1,312.9	1,344.4	206.3	18.1

자료: 각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단위: 조원)



자료: 각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연금충당부채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2021~2025년간 공무원연금충당부채와 군인연금충당부채가 대동소이하게 각각 약 80%, 20%를 구성하고 있다.

[연금충당부채 종류별 구성비율 및 증감 추이]

(단위: %, %p)

구분	'21(A)	'22	'23	'24	'25(B)	증감(B-A)
공무원	79.5	79.5	80.1	80.2	80.1	0.6
군인	20.5	20.5	19.9	19.8	19.9	△0.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 각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5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6년부터 시행되었다. 2026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의 주요 개정내용 중 하나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에 명시된 것이다.<sup>16)</sup> 이에 따라 2026회계연도부터는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국가재무제표에 추가적으로 계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며, 공무원, 군인연금충당부채 또한 재직기간의 증가 및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추후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측된다.

16)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충당부채는 전체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연금 지급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실질적인 재정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국가 재정건전성 평가시, 단기·중기적 관리지표(국가채무)와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장기적 관리지표(국가부채)를 병행하여 관리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2.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2024년 대비 2025년 부채 186.3조원 증가

### 가. 현 황

2025년 말 국가 총부채 2,772.0조원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각 부처별 총부채 합계 3,005.4조원에서 내부거래조정 △233.4조원을 반영하여 산정되었다. 2025년의 국가 총부채는 기획재정부 1,216.6조원(40.5%), 인사혁신처 1,136.6조원(37.8%), 국방부 287.2조원(9.6%), 국토교통부 198.9조원(6.6%) 등으로 구성된다. 상기 4개 부처는 내부거래 조정 전 국가 총 부채의 94.5%를 보유하고 있다.

2021년 대비 2025년 국가 총부채는 576.6조원 증가하였는데, 이 중 기획재정부 부채 증가액은 321.4조원으로 전체 증가액(내부거래 차감 전)의 61.3%를 차지하였다. 동기간 인사혁신처 부채 증가액은 180.7조원으로 34.4%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부처의 증가분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즉 최근 국가 총부채 증가는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 부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4년 대비 2025년 기획재정부 부채의 증가액은 129.4조원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국가 전체 부채 증가금액(내부거래 차감 전) 138.5조원의 9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동기간 인사혁신처의 부채 증가액은 26.8조원으로 국가 전체 부채 증가금액의 19.3% 비중을 차지한다.

2025년 인사혁신처의 부채 1,136.6조원은 대부분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 1,076.4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금충당부채는 재직기간 증가로 인한 자연증가분 및 국고채 이자율 하락에 따른 할인율 감소 등으로 2024년 대비 2025년 24.1조원 증가하였다. 인사혁신처의 부채가 대부분 발생주의에 따른 향후 발생할 비용을 나타내는 충당부채인 반면, 기획재정부의 부채는 대부분 국채 등의 확정부채인 차입부채로, 2025년 기획재정부 부채 1,216.6조원 중 1,215.6조원이 국채 및 차입금 등 차입부채이다.

국방부의 2025년 기준 부채는 287.2조원인데, 이는 2024년 대비 6.9조원 증가한 것으로, 해당 부채 증가는 인사혁신처와 유사하게 재직기간 증가 및 물가상승률 변동 등에 따른 군인연금충당부채 7.4조원 증가에 기인한다.

---

오지은 예산분석관(jieun.oh@assembly.go.kr, 6788-4684)

[부처별 총부채 현황]

(단위: 조원, %)

부처명	2021 (a)	2024 (b)	2025		증감액				증감률
			(c)	(비중)	(d=c-b)	(비중)	(e=c-a)	(비중)	(e/a)
기획재정부	895.2	1,087.2	1,216.6	(40.5)	<b>129.4</b>	<b>(93.5)</b>	<b>321.4</b>	<b>(61.3)</b>	(35.9)
인사혁신처	955.9	1,109.8	1,136.6	(37.8)	<b>26.8</b>	<b>(19.3)</b>	<b>180.7</b>	<b>(34.4)</b>	(18.9)
국방부	251.2	280.3	287.2	(9.6)	6.9	(5.0)	36.0	(6.9)	(14.3)
국토교통부	192.8	195.8	198.9	(6.6)	3.1	(2.2)	6.0	(1.2)	(3.1)
중소벤처기업부	39.2	47.3	48.4	(1.6)	1.1	(0.8)	9.2	(1.8)	(23.6)
고용노동부	43.9	42.0	44.5	(1.5)	2.5	(1.8)	0.6	(0.1)	(1.4)
금융위원회	44.2	26.7	20.7	(0.7)	△6.0	△4.3	△23.5	△4.5	△53.1
농림축산식품부	7.3	10.0	9.8	(0.3)	△0.3	△0.2	2.5	(0.5)	(34.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6	8.8	9.3	(0.3)	0.4	(0.3)	4.7	(0.9)	(101.7)
기타	46.4	58.9	33.4	(1.1)	△25.5	△18.4	△13.1	△2.4	△28.2
합계	2,480.8	2,866.9	3,005.4	(100.0)	138.5	(100.0)	524.6	(100.0)	(21.1)
내부거래 조정	△285.5	△281.2	△233.4		47.8		52.1		△18.2
내부거래 조정후 국가총부채	2,195.3	2,585.7	2,772.0		<b>186.3</b>		<b>576.6</b>		(26.3)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정부의 국채 규모 증가와 함께 국채이자비용도 확대되고 있어 국가채무 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5년 국가 총부채는 2,772.0조원으로 전년(2,585.7조원) 대비 186.3조원 증가하였다. 2025년 차입부채는 1,306.5조원으로 2024년(1,159.2조원) 대비 147.3조원 증가하여 2025년 국가 총부채의 47.1%를 차지하였다. 차입부채의 대부분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2025년 기획재정부 차입부채는 1,215.6조원으로 전년 대비 129.5조원 증가하였으며 국가 차입부채의 93.0%를 차지하였다.

한편, 연금충당부채는 2025년 1,344.4조원으로 전년(1,312.9조원) 대비 31.5조원 증가하였다.

[기획재정부 차입부채 및 인사혁신처 연금총당부채 증감 (2024~2025)]

(단위: 조원)

구분		2024(a)	2025(b)	증감(b-a)
국가 총부채(A)		2,585.7	2,772.0	186.3
차입부채(B)		1,159.2	1,306.5	147.3
(비중)(B/A)		(44.8)	(47.1)	(2.3)
	기획재정부(C)	1,086.1	1,215.6	129.5
	(비중)(C/B)	(93.7)	(93.0)	(△0.7)
국가연금총당부채(D)		1,312.9	1,344.4	31.5
(비중)(D/A)		(50.8)	(48.5)	(△2.3)
	인사혁신처(E)	1,052.3	1,076.4	24.1
	(비중)(E/D)	(80.2)	(80.1)	(△0.1)

자료: 각 연도별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 기획재정부 차입부채는 1,215.6조원으로 전년(1,086.1조원) 대비 129.5조원(11.9%) 증가하였다. 2025년 기획재정부 차입부채 중 1,178.4조원(96.9%)이 국채<sup>1)</sup>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차입부채의 2024년 대비 증가액은 129.5조원이다.

반면 차입금은 정부내차입금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5조원 감소하였으며, 기타차입부채는 9.1조원으로 전년 대비 1.0조원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미지급비용이 1.2조원 증가한 반면, 예수금과 파생상품부채는 각각 0.1조원 감소하였다.

1) 2025년 기획재정부의 국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권은 1,162.1조원으로 전년 대비 113.8조원 증가하여 국채 증가를 주도하였으며, 외국환평형기금채권도 2024년 대비 16.7조원 증가하였다. 국고채권은 각 기금 및 회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국채로서 1998년 9월 기존의 “국채관리기금채권”의 명칭이 “국고채권”으로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발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차입부채 현황(2024~2025)]

(단위: 조원, %)

구분		2024(a)	2025(b)	비중	증감(b-a)	증감율
국채	국채	1,061.6	1,191.7	(98.0)	130.2	12.3
	(국채할인발행차금)	△25.1	△25.5	△2.1	△0.4	1.5
	국채할증발행차금	12.0	12.1	(1.0)	0.2	1.3
	국채 소계	1,048.4	1,178.4	(96.9)	129.9	12.4
차입금	정부내차입금	29.5	28.1	(2.3)	△1.5	△5.0
	차입금소계	29.5	28.1	(2.3)	△1.5	△5.0
기타차입부채	미지급금	0.8	0.8	(0.1)	0.0	3.4
	미지급비용	7.0	8.1	(0.7)	1.2	16.5
	예수금	0.2	0.1	(0.0)	△0.1	△43.0
	파생상품부채	0.1	0.0	(0.0)	△0.1	△63.9
	금융리스부채	0.0	0.0	(0.0)	△0.0	△4.5
	기타차입부채 소계	8.1	9.1	(0.8)	1.0	12.5
합계		1,086.1	1,215.6	(100.0)	129.5	11.9

자료: 기획재정부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차입부채 증가는 국채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순국채(국채할인발행차금 및 할증발행차금 등 반영금액) 규모는 2021년 737.6조원에서 2025년 1,129.9조원으로 392.3조원 증가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순국채 증가액은 2022년 54.5조원, 2023년 60.3조원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137.5조원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2025년에도 139.9조원 증가하여 최근 2년 연속 130조원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국채 발행 확대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원금 상환 부담뿐 아니라 이자비용 부담 증가 요인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순국채 현황(2021~2025)]

(단위: 조원)

구분	2021(A)	2022	2023	2024(B)	2025(C)	증감(C-B)	증감(C-A)
국채 소계	737.6	792.1	852.4	989.9	1,129.9	140.0	392.3
전년 대비 증감	94.8	54.5	60.3	137.5	140		

자료: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5년 정부의 국채 규모 증가에 따라 국채이자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국채이자비용은 28.2조원으로 전년(25.4조원) 대비 2.7조원(10.8%) 증가하였다. 최근 국채 발행 규모 확대에 따라 국채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자비용 부담도 함께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채 상환 부담뿐 아니라 국채이자비용 증가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채 이자비용 (2024~2025)]

(단위: 조원, %)

구분	2024(A)	2025(B)	증감(C=B-A)	증감율(C/A)
국채 이자비용	25.4	28.2	2.7	10.8

주: 국채이자비용은 발행한 국채에 대한 이자로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이자를 포함하며, 국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은 국채이자비용에서 가산하고 국채할증 발행차금환입액은 이자비용에서 차감해서 산출함

자료: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 총부채는 국채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국채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정부 순국채 규모는 2021년 737.6조원에서 2025년 1,129.9조원으로 392.3조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4년과 2025년의 증가액은 각각 137.5조원, 139.9조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국채이자비용도 2024년 25.4조원에서 2025년 28.2조원으로 2.7조원(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이자비용은 국채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적 재정지출이라는 점에서 국채 규모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재정자금이 정책사업 등에 활용되기 이전에 이자비용으로 우선 지출되어야 하는 규모도 확대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의 운용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국가채무 관리와 함께 국채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가. 현황<sup>1)</sup>

공적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지역연금 가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지역연금에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있다.<sup>2)</sup>

국민연금은 1988년 「국민연금법」에 따라 제도가 시행된 후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을 대상으로 꾸준히 가입자를 확대해 현재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고 2025년 말 기준 약 21,815,000명의 가입자가 있으며, 공무원연금은 1960년 「공무원연금법」이 도입되며 실시되었으며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군인과 선거에 의한 공무원을 제외한 약 1,299,000명의 가입자가 있다. 사학연금은 1975년부터 사립학교교원을 대상으로 제도가 시행된 후 1978년 사무직원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으며 약 332,000명의 가입자가 있으며, 군인연금은 1960년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되었으나 1963년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 「군인연금법」 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부서관 이상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현재 약 180,000명의 가입자가 있다.

경제활동인구 약 29,426,000명 중 80.3%인 약 23,626,000명이 공적연금에 가입해 있으며, 가장 가입비율이 높은 공적연금은 국민연금(74.1%)이고 공무원연금(4.4%), 사학연금(1.1%), 군인연금(0.6%) 순으로 가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희 예산분석관(parksh@assembly.go.kr, 6788-4683)

1) 현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개발 및 연금결산보고서 개선방안」, 2018, pp.26~34를 참고함

2) 이외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다.

[공적연금 가입자 현황(2025년 말)]

(단위: 천명, %)

구분	경제활동인구	공적연금				
		소계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가입자	29,426	23,626	21,815	1,299	332	180
비중	100.0	80.3	74.1	4.4	1.1	0.6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6.1. 및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적연금 수급자는 현재 약 8,864,000명으로 전체 공적연금 가입자 중 약 37.5%가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을 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수급률은 이와 비슷한 수준인 36.2%와 39.5%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수급률은 55.4%와 61.1%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공무원연금의 수급률이 높은 이유는 제도 도입 시기가 1960년으로 가장 빨라 공적연금 중 제일 먼저 제도가 성숙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이며, 성숙단계에서는 가입자 증가는 둔화되는 반면 수급자 증가 규모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군인연금 수급률이 높은 이유는 군인 직역체계상 퇴직자 대부분이 45~56세에 퇴직하고 지급개시연령조건이 없어서 연금수급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2025년 말)]

(단위: 천명, %)

구분	공적연금				
	합계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	8,864	7,903	720	131	110
비중	100.0	89.2	8.1	1.5	1.2
수급률	37.5	36.2	55.4	39.5	61.1

주: 1. 수급률은 (연금수급자 수 ÷ 연금가입자 수)임

2.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따른 장해(유족)연금수급자가 제외된 수치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군인연금은 계급별 정년이 정해져 있어 준장 이하 부사관, 소령, 중령, 대령의 정년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4대 공적연금의 2025년 수입은 136.9조원, 지출은 88.3조원으로 수지는 48.7조원 흑자, 적립금은 1,508.7조원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2021년 대비 2025년에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급여 지급액이 더 빠르게 증가했으나, 수입액이 지출액 대비 높아 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수지는 매년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사학연금은 2021년 대비 2025년의 수입의 증감률은  $\Delta 3.3\%$ 인데 반해 지출의 증가율이  $19.2\%$ 로 높아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지 흑자폭이 감소하다 2025년 소폭 증가하였다.

[공적연금기금 재정수지 현황(2021~2025)]

(단위: 억원, %)

구분		2021 (A)	2022	2023	2024	2025 (B)	증감 (C=B-A)	증감률 (C/A)
국민 연금	수입	940,440	875,672	883,066	1,035,942	1,068,032	127,592	13.6
	지출	299,440	348,795	399,287	445,918	505,561	206,121	68.8
	수지	641,000	526,877	483,779	590,024	562,471	$\Delta 78,529$	$\Delta 12.3$
	적립금	9,487,194	8,904,657	10,357,946	12,128,513	14,579,963	5,092,769	53.7
공무원 연금	수입	158,468	166,307	173,867	173,977	183,294	24,826	15.7
	지출	190,868	210,758	232,633	248,689	266,467	75,599	39.6
	수지	$\Delta 32,400$	$\Delta 44,451$	$\Delta 58,766$	$\Delta 74,712$	$\Delta 83,173$	$\Delta 50,773$	-
	적립금	151,752	151,176	156,686	163,403	180,971	29,219	19.3
사학 연금	수입	75,895	72,863	66,460	68,318	73,364	$\Delta 2,531$	$\Delta 3.3$
	지출	54,545	57,071	61,236	63,825	65,030	10,485	19.2
	수지	21,350	15,792	5,224	4,493	8,334	$\Delta 13,016$	$\Delta 61.0$
	적립금	260,433	240,441	263,607	281,050	317,691	57,258	22.0
군인 연금	수입	35,202	36,392	38,319	41,563	44,566	9,364	26.6
	지출	35,331	37,269	40,788	43,452	45,514	10,183	28.8
	수지	$\Delta 129$	$\Delta 877$	$\Delta 2,468$	$\Delta 1,889$	$\Delta 948$	$\Delta 819$	-
	적립금	13,483	12,071	10,366	8,965	8,635	$\Delta 4,848$	$\Delta 36.0$
합계	수입	1,210,005	1,151,234	1,161,712	1,319,800	1,369,256	159,251	13.2
	지출	580,184	653,893	733,944	801,884	882,572	302,388	52.1
	수지	629,821	497,341	427,769	517,916	486,684	$\Delta 143,137$	$\Delta 22.7$
	적립금	9,912,862	9,308,345	10,788,605	12,581,931	15,087,260	5,174,398	52.2

주: 1. 적립금은 각 연도 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며 결산 기준임

2. 공무원연금 재정수지는 연금회계·퇴직수당특별회계·재해보상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 나. 분석의견

첫째, 각 연금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기금과 사회연금기금은 순자산 규모가 점차 증대되는 추세이나,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연금충당부채로 인해 부(-)의 순자산이 나타나고 있으며, 부(-)의 순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2025년 자산은 1,458.8조원, 부채는 0.8조원이며, 순자산은 1,458.0조원이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연금충당부채가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sup>4)</sup> 부채금액은 최근 5년간 0.3~1.6조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순자산은 2025년 말 1,458.0조원으로 2021년 대비 509.3조원(53.7%) 증가하였으며, 이는 연금보험료수입에서 연금급여지급액을 차감한 연금급여적립금의 증가, 국내외 주가 상승 등에 따른 투자증권 평가이익 증가 등으로 인한 것이다.

[2021~2025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재무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1 (A)	2022	2023	2024	2025 (B)	증감 (C=B-A)	증감률 (C/A)
자산	949.0	890.8	1,036.3	1,214.4	1,458.8	509.8	53.7
부채	0.3	0.3	0.5	1.6	0.8	0.5	166.7
순자산	948.7	890.5	1,035.8	1,212.9	1,458.0	509.3	53.7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기금 재무제표(I)」, 2026.5.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무원연금기금의 2025년 자산은 24.5조원, 부채는 1,137.5조원으로 순자산은 △1,113.0조원이고, 지속적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커 순자산이 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다.

4) 「연금회계처리지침」에 따른 연금충당부채는 결산일 기준으로 재직자, 연금수급자에게 미래 장기에 걸쳐 지급할 연금액을 장래 추정보수와 추정 근무기간 등의 가정을 반영,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국가회계기준에서는 ‘교환거래’ 해당 여부에 따라 국가재무제표상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다. 즉, 직접적으로 국가를 위해 근로서비스를 제공한 공무원이나 군인이 향후에 국가로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등의 ‘재화 및 용역의 수취 대가로 미래 금전·기타자원의 제공 약속이 있는 거래’가 있을 경우에 관련 연금충당부채를 국가의 부채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경우에는 연금지급에 국가와의 ‘교환거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연금충당부채를 국가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부채의 대부분은 공무원연금충당부채이고, 공무원의 재직기간 증가 및 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해 연금충당부채는 2021년 대비 2025년 171.9조원(19.0%)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순자산은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1~2025회계연도 공무원연금기금 재무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1 (A)	2022	2023	2024	2025 (B)	증감 (C=B-A)	증감률 (C/A)
자산	21.3	20.8	21.4	22.1	24.5	3.2	15.0
부채	957.2	992.3	1,037.9	1,110.7	1,137.5	180.3	18.8
연금충당부채	904.5	939.7	985.0	1,052.3	1,076.4	171.9	19.0
순자산	△935.8	△971.5	△1,016.6	△1,088.6	△1,113.0	△177.2	-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기금 재무제표(I)」, 2026.5.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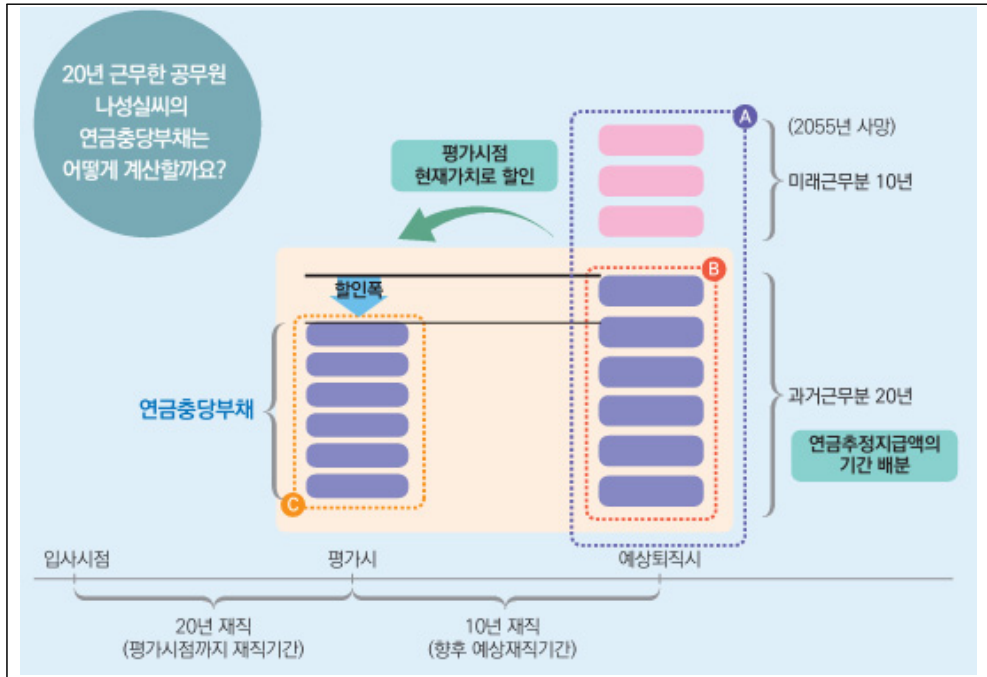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수급자와 재직자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이미 퇴직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연금급여를 기준으로 평가시점 이후의 미래 예상액의 합계를 현재가치로 계산한다. 재직자의 경우 연금 미수급자(재직자)에게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까지 귀속되는 금액을 재정상태표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평가시점에 20년을 재직한 공무원의 연금충당부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먼저 과거 경험치와 미래 예측을 통해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하고, 얼마 동안 연금을 지급해야 할지 추정한다.(향후 10년을 더 근무하고, 25년(2055년) 동안 연금지급 예상됨) 다음으로 향후 10년 더 일하는 것을 고려하여 받게 될 ‘연금급여액’을 산정하고 2055년까지 지급할 연금지급액을 고려하여 “총연금지급액”을 결정한다.(A부분) 평가시점인 현재에는 총 30년 예상근무기간 중 20년만 일한 상태이므로 해당 부분만 국가의 의무가 된다.(B부분, 퇴직시점 총 연금급여액의 2/3) 이를 현재가치로 전환하면 평가시점의 공무원의 연금충당부채가 산출된다.(C부분)<sup>5)</sup>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평가시점까지의 재직기간만 반영하여 산출되므로 평가시점 후 재직자가 낼 기여금은 현재 공무원연금기금의 자산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알기 쉬운 국가회계 2024」, 2024.9., p.90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의 연금총당부채 산출예시]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알기 쉬운 국가회계 2024」, 2024.9.

다음으로 사학연금기금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의 자산은 32.4조원, 부채는 0.7조원, 순자산은 31.8조원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최근 5년간 대동소이하며, 자산이 2021년 대비 2025년 5.7조원(21.3%) 증가함에 따라 순자산 또한 증가하였다.

[2021~2025회계연도 사학연금기금 재무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1 (A)	2022	2023	2024	2025 (B)	증감 (C=B-A)	증감률 (C/A)
자산	26.7	24.6	26.9	28.7	32.4	5.7	21.3
부채	0.6	0.6	0.6	0.6	0.7	0.1	16.7
순자산	26.0	24.0	26.4	28.1	31.8	5.8	22.3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기금 재무제표(III)」, 2026.5.를 바탕으로 재작성

군인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기금과 같은 방식으로 군인연금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부채가 자산 규모를 크게 상회하여 순자산이 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음(-)의 순자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5년의 자산 규모는 0.9조원, 부채는 274.7조원이며 순자산은 △273.8조원이다.

[2021~2025회계연도 군인연금기금 재무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1 (A)	2022	2023	2024	2025 (B)	증감 (C=B-A)	증감률 (C/A)
자산	1.3	1.2	1.0	0.9	0.9	△0.4	△30.8
부채	239.3	247.5	251.3	266.9	274.7	35.4	14.8
연금충당부채	233.6	241.6	245.2	260.6	268.1	34.5	14.8
순자산	△237.9	△246.3	△250.3	△266.0	△273.8	△35.9	-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기금 재무제표(Ⅲ)」, 2026.5.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2025년에는 군인연금기금을 제외한 연금기금에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이 발생했으며<sup>6)</sup>, 이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한 국내주식의 높은 수익률에 기인한다. 평균적으로 국민연금기금에서 수익률이 8.0%로 가장 높은 반면 군인연금에서 2.9%로 가장 낮았고, 공무원연금기금을 제외한 3대 연금기금에서 평균적으로 해외주식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인연금기금은 유일하게 대체투자에서 평균적으로 손실(△8.74%)이 발생하였다.**

각 연금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이 8.0%, 공무원연금기금이 6.0%, 사학연금기금이 7.5%, 군인연금기금이 2.9%로 국민연금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고 군인연금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22년에 모든 연금기금에서 음(-)의 수익률을 시현하였는데, 2018년에는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전망 등으로 인해 증시가 하락한 것이 원인이고, 2022년의 음(-)의 수익률은 코로나19에 기인한다. 2025년에는 사학연금기금의 수익률이 18.9%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이 18.8%, 공무원연금기금 13.0%, 군인연금기금 7.2% 순으로 나타났다.

6) 군인연금기금의 수익률은 2023년 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기금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현황(2015~2025)]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국민연금기금	4.6	4.8	7.3	△0.9	11.3	9.7	10.8	△8.2	13.6	15.0	18.8	8.0
공무원연금기금	3.8	3.7	7.1	△1.5	8.4	10.5	8.6	△4.3	10.2	6.4	13.0	6.0
사학연금기금	3.8	3.9	9.2	△2.4	11.2	11.5	11.9	△7.7	13.5	11.6	18.9	7.5
군인연금기금	2.0	1.3	2.7	△2.2	5.6	3.8	2.9	△3.9	7.9	4.8	7.2	2.9

- 주: 1.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은 시간가중수익률 기준으로 작성  
 2. 공무원연금기금의 누적 운용수익률은 금융자산(임대주택·골프장 등의 기타자산 제외)에 대한 평균잔액수익률 기준임  
 3. 사학연금기금 누적수익률은 시간가중수익률 산출이 가능한 최대 과거시점(2004년)부터 각 연도 말까지 누적 운용수익률임  
 4.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금액가중수익률이며, 평균 값은 기금 설립('88) 이후 '25년도 말까지의 누적수익률임  
 5. 군인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의 평균은 '15년~'25년 기간의 연평균 시간가중수익률로 작성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각 기금별로 자산을 세분화해 살펴보면, 먼저 국민연금기금의 평균수익률은 8.04%이고, 해외주식에서 평균 16.06%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으며, 국내주식이 11.26%, 대체투자 또한 수익률이 10.08%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장기금융자산 중 가장 수익률이 낮은 자산군은 채권으로, 수익률은 3.75%이다. 2025년에는 모든 자산군에서 수익이 발생했으며, 특히 국내주식의 수익률이 82.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채권의 수익률이 1.48%로 가장 낮았다.

[연도별 자산별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2015~2025)]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전체	4.57	4.75	7.26	△0.92	11.31	9.70	10.77	△8.22	13.59	15.00	18.82	8.04	
금융부문	4.58	4.76	7.28	△0.93	11.33	9.72	10.79	△8.24	13.61	15.02	18.84	8.05	
증장기	단기	1.62	2.02	0.35	2.43	1.46	△0.06	1.10	△0.86	4.23	6.43	1.96	3.29
	채권	4.16	1.98	0.48	4.80	4.30	1.39	△0.16	△5.45	7.65	7.50	1.48	3.75
	주식	2.98	7.79	18.70	△11.88	21.91	21.36	19.22	△16.32	23.30	21.48	35.12	13.88
	국내	1.34	5.59	25.88	△16.77	12.58	34.89	6.73	△22.76	22.12	△6.94	82.44	11.26
	해외	5.37	10.63	10.62	△6.19	30.63	10.76	29.48	△12.34	23.89	34.32	19.74	16.06
대체투자	12.19	9.91	4.53	11.80	9.62	2.38	23.80	8.94	5.80	17.09	8.03	10.08	
복지부문	△2.08	△1.35	△1.65	△1.52	△1.08	△2.90	△2.19	△0.27	0.94	1.06	3.69	5.62	
기타부문	0.72	0.63	0.61	0.95	1.11	0.63	0.46	1.15	2.09	2.14	1.73	1.54	

- 주. 금액가중수익률이며, 평균 값은 기금 설립('88) 이후 '25년도 말까지의 누적수익률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은 평균수익률이 5.99%이고, 국내주식에서 평균 14.5%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으며, 해외주식에서 13.22%, 대체투자에서 평균 7.74%로 수익률이 높았다. 증장기금융자산 중 가장 수익률이 낮은 자산군은 채권(2.06%)이다. 2025년에는 국내주식에서 94.95%로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체투자의 수익률이 1.63%로 가장 낮았다.

[연도별 자산별 공무원연금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2015~2025)]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전체	3.79	3.72	7.05	△1.45	8.36	10.50	8.61	△4.26	10.16	6.41	12.96	5.99	
증장기	단기	1.86	1.61	1.65	1.93	1.96	1.22	1.15	2.85	3.89	3.81	2.86	2.25
	채권	3.39	2.40	0.78	3.99	4.41	2.57	△1.17	△7.36	7.70	4.27	1.69	2.06
	주식	2.42	6.59	21.96	△14.82	17.98	25.85	15.74	△18.60	24.08	14.42	44.62	12.75
	국내	2.12	5.42	26.83	△17.79	10.44	36.20	5.76	△22.52	25.69	△7.55	94.95	14.50
	해외	1.92	8.87	9.97	△6.46	30.43	9.46	29.62	△13.70	22.58	34.17	18.61	13.22
	대체투자	8.88	3.83	4.75	8.10	8.52	7.46	19.37	10.57	7.31	4.71	1.63	7.74

주: 공무원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은 금융자산(임대주택·골프장 등의 기타자산 제외)에 대한 각 연도별 시간가중수익률 기준임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사학연금기금은 평균수익률이 7.5%이고, 해외주식에서 평균 12.32%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국내주식 10.19%, 대체투자에서 평균 9.43%로 수익률이 높았다. 2025년에는 국내주식에서 90.93%로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채권에서 1.56%로 수익률이 가장 낮았다.

[연도별 자산별 사학연금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2015~2025)]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전체	3.83	3.91	9.19	△2.39	11.15	11.49	11.95	△7.75	13.46	11.63	18.93	7.50	
중장기	단기	1.81	1.50	1.46	1.67	1.70	0.89	0.75	2.38	3.97	3.83	2.08	
	채권	4.32	2.93	1.21	4.84	4.55	1.80	0.23	△6.02	8.65	6.93	1.56	2.75
	주식	1.53	4.31	22.71	△14.40	19.48	24.10	16.78	△17.35	23.05	14.57	43.61	11.23
	국내	1.41	3.43	25.63	△17.92	12.03	34.43	5.70	△22.49	22.88	△7.15	90.93	10.19
	해외	0.88	5.77	16.09	△7.66	30.43	13.89	27.12	△13.26	23.14	31.47	18.33	12.32
대체투자	7.70	6.33	4.72	8.49	10.97	5.16	25.03	8.28	6.43	14.24	7.82	9.43	

주: 사학연금기금 평균수익률은 시간가중수익률 산출이 가능한 최대 과거시점(2004년)부터 각 연도 말까지 누적 운용수익률임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군인연금기금은 평균수익률이 2.87%로 4대 연금기금 중 수익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중 해외주식에서 평균 11.19%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국내주식에서 평균 9.64%로 수익률이 높았다. 2025년에는 대체투자에서 유일하게 손실이 발생(△13.31%)하였다. 다른 3개 연금기금에서는 대체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군인연금기금에서 유일하게 대체투자에서 평균적으로 손실이 발생(△8.74%)하였다.

2025년에는 국내주식에서 83.64%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으며, 대체투자의 손실을 제외하고는 채권에서 2.39%로 수익률이 가장 낮았다.

[연도별 자산별 군인연금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2015~2025)]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전체	1.97	1.33	2.72	△2.18	5.59	3.82	2.93	△3.91	7.93	4.79	7.21	2.87
중장기	단기	1.65	1.36	1.27	1.72	1.72	1.00	0.78	2.22	3.90	3.72	2.77
	채권	2.38	1.49	1.07	2.53	2.33	2.68	△0.23	△2.95	4.91	3.96	2.39
	주식	4.16	2.39	21.79	△11.81	21.25	18.38	20.15	△16.46	23.59	13.70	43.57
	국내	4.16	2.39	23.07	△17.31	9.79	33.87	6.54	△23.17	23.88	△7.38	83.64
	해외	-	-	11.25	△6.94	30.65	6.86	29.97	△12.77	23.14	33.35	19.33
	대체투자	△14.66	△9.45	3.23	△49.50	16.36	2.04	0.78	△16.13	0.80	3.54	△13.31
	기타	2.22	1.76	1.64	2.00	2.08	1.51	1.04	2.45	4.62	2.76	-

주: 1. 시간가중수익률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는 중장기자산 내 확정금리(예금) 자산임

2. 평균은 '15년~'25년 기간의 연평균 시간가중수익률로 작성함

자료: 국방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셋째, 적립금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4대 연금기금 모두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국민·공무원·사학연금기금은 2015년 대비 2025년 채권 비중이 감소하고 해외주식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군인연금기금에서는 다른 기금과 달리 채권 구성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금기금별로 적립금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기금은 평균적으로 채권 50.16%, 주식 21.18%, 대체투자 5.53%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식 중에서는 국내주식 12.00%, 해외주식 9.18%로 국내주식의 비중이 더 높았다. 채권의 구성 비중은 높으나 2015년 대비 2025년 구성 비중이 28.75%p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채권 비중만큼 해외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자산별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구성 비중(2015~2025)]

(단위: %, %p)

구분	2015 (A)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B)	평균	증감 (B-A)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0.00	
금융부문	99.88	99.89	99.90	99.91	99.92	99.93	99.94	99.93	99.94	99.95	99.97	77.72	0.11	
단기	0.39	0.62	0.28	0.34	0.24	0.25	0.26	0.23	0.24	0.29	0.30	0.87	△0.09	
중장기	채권	56.65	54.19	50.30	52.85	47.68	44.50	42.57	42.05	38.59	35.67	27.85	50.16	△28.75
	주식	32.17	33.68	38.58	34.73	40.56	44.31	44.53	41.13	45.22	47.06	55.85	21.18	23.63
	국내	18.52	18.33	21.16	17.05	17.95	21.19	17.48	14.08	14.29	11.52	18.09	12.00	△0.42
	해외	13.65	15.34	17.42	17.68	22.61	23.12	27.05	27.05	30.93	35.54	37.76	9.18	24.15
	대체투자	10.67	11.40	10.75	11.99	11.44	10.87	12.58	16.42	15.85	17.06	15.95	5.53	5.33
복지부문	0.03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1	0.97	△0.02	
기타부문	0.10	0.09	0.08	0.07	0.06	0.05	0.04	0.05	0.04	0.03	0.02	0.32	△0.08	

주: 1. 통화선도 평가금액 중 자산군에 배분되지 않는 전술적 외환익스포저 등의 평가금액은 금융부문에 가산되어 각 자산군의 합산 비중이 금융부문과 상이할 수 있음

2. 평균은 산출 가능 시점부터 2025년 말까지의 평균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은 평균적으로 채권 37.53%, 주식 30.41%, 대체투자 20.77%, 단기자산 11.29%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식 중에서는 국내주식 18.08%, 해외주식 12.33%로 국내주식의 비중이 더 높았다. 채권의 구성 비중은 높으나 2015년 대비 2025년 구성 비율이 14.96%p 감소하였고, 주식 비중은 소폭 증가(3.19%p)하였으나 국내 주식의 비중은 9.94% 감소하였다.

단기자산과 대체투자의 구성 비중은 2015년 대비 2025년에 각각 7.78%p, 3.9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자산별 공무원연금기금 적립금 구성 비중(2015~2025)]

(단위: %, %p)

구분	2015 (A)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B)	평균	증감 (B-A)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0.00	
중장기	단기	12.82	10.75	9.80	11.82	7.65	4.26	9.74	4.84	14.40	17.52	20.60	11.29	7.78
	채권	42.90	44.07	42.09	41.37	42.20	39.19	35.82	35.60	31.10	30.60	27.94	37.53	△14.96
	주식	30.57	31.58	34.05	29.64	31.56	33.49	28.64	24.37	26.83	30.00	33.76	30.41	3.19
	국내	24.07	22.98	25.39	19.34	20.72	20.97	15.67	11.27	13.14	11.22	14.13	18.08	△9.94
	해외	6.50	8.60	8.66	10.30	10.84	12.52	12.97	13.10	13.69	18.78	19.63	12.33	13.13
	대체투자	13.71	13.60	14.06	17.17	18.59	23.06	25.80	35.19	27.67	21.88	17.70	20.77	3.99

주: 공무원연금기금의 적립금 구성 비중은 임대주택·골프장 등의 기타자산을 제외하고 금융자산에 한해 작성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학연금기금은 평균적으로 채권 38.79%, 주식 38.61%, 대체투자 21.18%로 이루어져 있으며, 채권의 구성 비중은 높으나 2015년 대비 2025년 구성 비율이 20.04%p 감소하였고, 국내주식 또한 5.08%p 감소하였다. 채권과 국내주식 비중이 감소한 대신, 해외주식(16.97%p 증가)과 대체투자(9.01%p 증가) 비중은 증가하였다.

[연도별 자산별 사학연금기금 적립금 구성 비중(2015~2025)]

(단위: %, %p)

구분	2015 (A)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B)	평균	증감 (B-A)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0.00	
중장기	단기	1.98	2.18	0.69	1.49	0.77	1.95	1.48	1.58	1.38	1.04	1.12	1.42	△0.86
	채권	49.98	47.36	43.65	43.36	38.05	34.67	34.75	34.46	36.23	34.26	29.94	38.79	△20.04
	주식	32.04	34.66	39.61	35.59	39.94	42.73	42.49	39.21	37.61	36.86	43.93	38.61	11.89
	국내	23.75	24.42	26.53	21.45	21.99	22.58	19.07	17.30	16.51	13.67	18.67	20.54	△5.08
	해외	8.29	10.24	13.08	14.14	17.95	20.15	23.43	21.91	21.10	23.19	25.26	18.07	16.97
	대체투자	16.00	15.80	16.05	19.56	21.23	20.66	21.28	24.75	24.78	27.85	25.01	21.18	9.01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군인연금기금은 평균적으로 채권 56.33%, 단기자산 17.05%, 주식 13.67%, 기타(예금) 10.94%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대비 2025년 기타(예금)자산의 비중은 19.34%p 감소하였으며, 다른 기금과 달리 채권 구성 비중이 11.72%p 증가하였다.

[연도별 자산별 군인연금기금 적립금 구성 비중(2015~2025)]

(단위: %, %p)

구분	2015 (A)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B)	평균	증감 (B-A)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0.00	
단기	23.27	14.33	15.84	15.16	16.38	15.88	14.09	13.62	13.04	26.34	19.59	17.05	△3.68	
중장기	채권	49.80	64.41	61.30	45.38	50.73	61.33	61.37	57.82	54.80	61.52	56.33	11.72	
	주식	4.14	4.41	9.87	21.38	18.59	14.07	15.68	16.16	16.91	15.59	13.67	11.45	
	국내	4.14	4.41	6.61	12.58	9.84	7.21	6.41	5.73	7.39	6.03	6.59	2.45	
	해외	-	-	3.26	8.80	8.74	6.86	9.27	10.43	9.52	7.55	9.00	7.34	9.00
	대체 투자	3.45	2.39	2.05	1.30	0.82	0.69	0.80	1.96	2.41	2.93	3.30	2.01	△0.15
기타	19.34	14.46	10.94	16.78	13.49	8.03	8.06	10.43	12.84	6.00	-	10.94	△9.34	

주: 1. 평균금액의 평균잔액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는 중장기 자산 내 확정금리(예금) 자산임

2. 평균은 '15년~'25년 기간임

자료: 국방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넷째, 2025년 국가 재정상태표상의 순자산 821.5조원에서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순자산 합계 1,373.7조원(가)을 제외할 경우, 국가의 순자산은 △552.2조원으로 음(-)의 순자산으로 전환되므로, 재정경제부는 향후 연금 지급을 위한 4대 연금의 2025년 금융자산 1,390.3조원 등을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기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적정 재무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가회계기준에서는 '교환거래' 해당 여부에 따라 국가재무제표상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다. 즉, 직접적으로 국가를 위해 근로서비스를 제공한 공무원이나 군인이 향후에 국가로부터 연금을 지급 받는 등의 '재화 및 용역의 수취 대가로 미래 금전·기타자산의 제공 약속이 있는 거래'가 있을 경우에 관련 연금충당부채를 국가의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7) 내부거래 제거 후의 금액이며, 자산은 국가재무제표에 포함되나 연금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의 경우, 연금지급에 국가와의 ‘교환거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연금충당부채를 국가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결국 회계기준에 따라 국민연금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기금의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은 전액 국가 재정상태표상 자산으로 반영되어 있는 반면, 지급할 연금 추정액과 관련된 연금충당부채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sup>8)</sup>

2025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6년부터 시행되었다.

2026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의 주요 개정내용 중 하나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에 명시된 것이다. 현행 법률 제3조의2는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법률에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수정되었다. 이는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시적으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9)</sup>

[「국민연금법」 제3조의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b>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b>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b>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b>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이 명문화되어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국민연금충당부채를 2026년부터 국가의 충당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다.

재정경제부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이를 적용하면, 「국민연금법」의 개정법률에 따라 국가는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거나 획득할 것으로

8) 국회예산정책처,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 2022.8., p.201~202

9)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2025.6., p.45

예상되는 사람에 대하여 미래의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해야 하므로, 국민연금의 미래 급여지출은 국가의 부채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sup>10)</sup>

반면, 연금급여에 대한 국가보장과 무관하게 국민연금의 미래 지급액은 국가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그 근거의 첫 번째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간 특성이 다르다는 견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고용주로서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며 사회보장제도이므로 국가부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두 번째는 공적연금이 세대 간 부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금부채 개념의 적용과 산출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기여액과 급여액 간의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연금부채 산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의 총당부채에 대해 신뢰성 있는 추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에 적용할 연금부채에 대한 개념과 산정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금부채 산출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sup>11)</sup>

한편, 2025년 말 국가 재정상태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821.5조원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의 4대 연금기금의 자산 1,398.7조원과 부채 1,411.9조원을 포함<sup>12)</sup>하여 산정한 것이다. 2025년 말 기준 4대 연금기금의 자산 1,398.7조원은 금융자산 1,390.3조원 등이며, 부채는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의 연금총당부채 1,344.5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10)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2025.6., pp.46~47

11)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2025.6., pp.47~48

12) 국민연금기금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채권을 국가 자산 및 부채에서 상계처리하는 내부거래 제거 후의 금액이다.

[국가 재정상태표 및 4대 연금기금의 자산, 부채, 순자산(2025)]

(단위: 조원, %)

구분	국가 재정상태표 (A)	4대 연금							
		국민연금 (a)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b)	소계 (c=a+b)	비중 (c/A)	공무원 연금 (d)	군인 연금 (e)	합계 (a+b+d+e)	내부거래 제거 후 합계
자산 (B)	3,593.4	1,458.8	32.4	1,491.2	41.5	24.5	0.9	1,516.5	1,398.7
금융자산	2,364.1	1,458.1	32.0	1,490.1	63.0	17.4	0.6	1,508.1	1,390.3
유무형자산	1,179.4	0.0	0.4	0.4	0.0	7.0	0.3	7.7	7.7
기타자산	49.9	0.6	0.0	0.7	1.4	0.0	-	0.7	0.7
소계	3,593.4	1,458.8	32.4	1,491.2	41.5	24.5	0.9	1,516.5	1,398.7
부채 (C)	2,772.0	0.8	0.7	1.4	0.1	1,137.5	274.7	1,413.6	1,411.9
차입부채	1,306.5	0.7	0.5	1.2	0.1	5.7	0.0	6.9	5.6
충당부채	1,417.5	-	-	-	-	1,131.2	274.7	1,405.9	1,405.9
기타부채	47.9	0.0	0.2	0.2	0.5	0.5	-	0.8	0.5
순자산 (B-C)	821.5	1,458.0	31.8	1,489.8	181.4	△1,113.0	△273.8	102.9	△13.2

자료: 재정경제부

금융자산이란 현금 또는 현금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인 자산으로 투자증권, 정부출자금, 대여금 등이 있다. 따라서 별도 사용 목적의 제한 등이 없는 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 등은 부채 상황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국가 재정상태표에 포함된 대부분 국민연금의 자산인 4대 연금의 금융자산 1,390.3조원은 국가 재정상태표상의 차입부채 등의 상황에 사용가능한 자산이 아니라, 각 연금기금의 향후 연금지급을 위한 자산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25년 말 현재 4대 연금기금 중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 연금기금은 향후 연금 지급을 위한 연금충당부채를 각각 1,076.4조원과 268.1조원 인식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

[4대 연금의 연금충당부채(2025)]

(단위: 조원)

구분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0	0	1,076.4	268.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결국 국민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향후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국가 재정상태표상 전액 자산으로 반영된 반면, 관련 연금충당부채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2025년 국가 재정상태표상의 순자산 821.5조원은 과다 인식된 측면이 있다.

더불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정부의 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국민연금 관련 부채 계상에 이견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정보이용자에게 적정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금으로 지급될 예정인 연금기금의 금융자산의 사용제한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5년 국가 재정상태표상의 순자산 821.5조원에서, 별도의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지 않고 있는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순자산 합계 1,373.7조원(내부거래 제거 후)을 제외할 경우, 국가의 순자산은 △552.2조원으로 음(-)의 순자산으로 전환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 재정상태표상 순자산 조정(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순자산 차감 후)]  
(단위: 조원)

구분	국가 재정상태표 (A)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차감 (A-C)
		국민연금 (a)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b)	합계 (B=a+b)	내부거래 제거 후 합계 (C) <sup>1)</sup>	
순자산	821.5	1,458.0	31.8	1,489.8	1,373.7	△552.2

주: 1) 국민연금기금 내부거래 제거 후 순자산+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내부거래 제거 후 순자산  
자료: 재정경제부

따라서 국민연금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4대 연금의 2025년 말 기준 금융자산 1,390.3조원은 향후 연금지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임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는 이의 사용 제한 내역 및 국가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재무제표 주석사항 등으로 별도로 표기하는 등 정보 이용자에게 적정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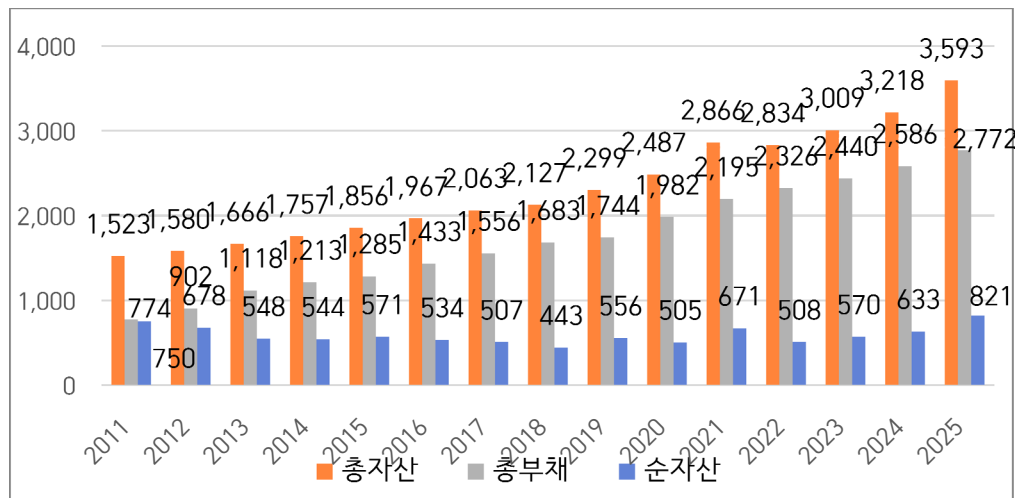
##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및 GDP 대비 순차입부채 비율의 지속적 상승

### 가. 현황

2011년 정부가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이후 2025년까지 각 연도별 국가 총자산, 총부채 및 순자산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1년 최초 재무제표 작성 시 국가의 총자산은 1,523조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3,593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2011년 774조원에서 2,772조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국가의 순자산은 2011년 750조원에서 2025년 821조원으로 증가하였다.

[국가재무제표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2011~2025)]

(단위: 조원)



자료: 각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 말 기준 2,772조원인 국가재정상태표상 부채는 크게 차입부채, 총당부채 및 기타부채로 구분된다. 차입부채는 국채 및 차입금 등 이자를 부담하는 외부차

오지은 예산분석관(jieun.oh@assembly.go.kr, 6788-4684)

입 부채를 말한다. 또한, 총당부채는 대부분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연금총당부채<sup>1)</sup>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당부채는 재정상태표 기준일 현재 미확정된 부채이기는 하나, 차입부채와 마찬가지로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향후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고려한 부채라고 할 수 있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2011년 대비 2025년 국가 부채 총계는 1,998조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차입부채 증가금액이 945조원, 총당부채 증가금액이 1,043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 부채총계 중 국·공채 등의 차입부채 비중은 2011년 46.8%에서 2018년 37.1%까지 감소하였으나, 2019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25년에는 47.1% 까지 증가하였다.

[국가재정상태표상 부채총계 연도별 세부 현황 (2011~2025)]

(단위: 조원, %, %p)

구분	차입부채(a)	차입부채 비중(a/b)	총당부채	기타	부채 총계(b)
2011(A)	362	46.8	375	37	774
2012	391	43.3	472	39	902
2013	440	39.4	634	44	1,118
2014	482	39.8	682	48	1,213
2015	535	41.6	708	42	1,285
2016	574	40.1	806	53	1,433
2017	599	38.5	902	54	1,556
2018	624	37.1	999	61	1,683
2019	679	39.0	1,000	64	1,744
2020	802	40.5	1,103	77	1,982
2021	916	41.7	1,199	80	2,195
2022	1,004	43.2	1,243	79	2,326
2023	1,064	43.6	1,293	82	2,440
2024	1,159	44.8	1,383	43	2,586
2025(B)	1,307	47.1	1,418	48	2,772
증감(B-A)	945	0.3	1,043	11	1,998

주: 2023년 이전의 차입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장기차입부채의 합계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및 각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됨

1) 「연금회계처리 지침」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연금총당부채"란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재직기간까지 귀속되는 금액을 평가 시점의 현재가치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 나. 분석의견

국가재무제표상 차입금의존도 및 GDP 대비 순차입부채 비율 등이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요 재정지표 고려 등을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2011년 이후 2025년까지의 국가재무제표상 자산, 부채, 차입부채 및 순자산 등의 주요 재무수치를 활용한 재무비율은 아래와 같다.

각 연도별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11년 50.8%에서 2025년 77.1%로 26.3%p 상승하였다. 또한 순자산(총자산-총부채) 대비 부채비율은 2011년 103.2%에서 2025년 337.4%로 234.2%p 상승하였다. 한편 2025년 총자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375조원)함에 따라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과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24년 대비 각각 3.2%p 및 71.2%p 하락하였다.

차입금의존도(차입부채÷총자산)는 차입부채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2011년 23.8%에서 2025년 36.4%로 12.6%p 상승하였다. 이는 국가 재정운영 과정에서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차입부채 의존도가 장기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재무제표상 주요 재무현황 및 재무비율(2011~2025)]

(단위: 조원, %, %p)

구분	총자산 (A)	총부채 (B)	(차입 부채) (C)	순자산 (D= A-B)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 (B/A)	(총당부채 제외시)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 (B/D)	(총당부채 제외시)	차입금 의존도 (C/A)
2011(a)	1,523	774	362	750	50.8	26.2	103.2	53.2	23.8
2012	1,580	902	391	678	57.1	27.2	133.0	63.4	24.7
2013	1,666	1,118	440	548	67.1	29.1	203.8	88.3	26.4
2014	1,757	1,213	482	544	69.0	30.2	222.9	97.5	27.4
2015	1,856	1,285	535	571	69.2	31.5	225.1	102.5	28.8
2016	1,967	1,433	574	534	72.9	31.9	268.5	117.5	29.2
2017	2,063	1,556	599	507	75.4	31.7	307.0	129.0	29.1
2018	2,127	1,683	624	443	79.2	32.2	379.8	154.5	29.3
2019	2,299	1,744	679	556	75.8	32.3	313.8	133.8	29.5
2020	2,487	1,982	802	505	79.7	35.3	392.1	173.9	32.3
2021	2,866	2,195	916	671	76.6	34.7	327.3	148.5	31.9
2022	2,834	2,326	1,004	508	82.1	38.2	458.2	213.3	35.4
2023	3,009	2,440	1,064	570	81.1	38.1	428.1	201.1	35.4
2024(b)	3,218	2,586	1,159	633	80.3	37.4	408.7	190.0	36.0
2025(c)	3,593	2,772	1,307	821	77.1	37.7	337.4	164.9	36.4
증감 (d=c-a)	2,070	1,998	945	72	26.3	11.5	234.2	111.7	12.6
증감 (e=c-b)	375	186	147	189	△3.2	0.3	△71.2	△25.1	0.3

자료: 각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각 연도별 GDP 대비 부채비율을 분석해 보면, 이 자를 수반하는 차입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011년 25.0%에서 2025년 48.8%로 23.8%p 상승하여 국가채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해당 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3년 2.1%p에서 2017년 △0.3%p까지 감소하였다가 2018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5.7%p 상승하여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후에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상승세가 지속되어 2025년 GDP 대비 차입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연금충당부채 등을 포함한 총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011

년 53.4%에서 2025년 103.6%로 50.2%p 상승하였다. 동 비율은 2023년에 처음으로 100%를 초과한 이후 2024년 100.8%, 2025년 103.6%를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0.8%p 증가하여 분석기간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나타내었으며, 최근에도 GDP 대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향후 해당 비율의 증가 추이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각 연도별 GDP대비 부채비율(2011~2025)]

(단위: 조원, %, %p)

구분	총부채 (A)	차입부채 (B)	GDP (C)	GDP 대비 부채비율 (A/C)	(전년 대비 증감)	GDP 대비 차입부채 비율 (B/C)	(전년 대비 증감)
2011(a)	774	362	1,448.6	53.4		25.0	
2012	902	391	1,504.7	60.0	6.6	26.0	1.0
2013	1,118	440	1,570.9	71.2	11.2	28.0	2.1
2014	1,213	482	1,638.5	74.0	2.9	29.4	1.4
2015	1,285	535	1,740.8	73.8	△0.2	30.7	1.3
2016	1,433	574	1,833.0	78.2	4.3	31.3	0.6
2017	1,556	599	1,934.2	80.4	2.3	31.0	△0.3
2018	1,683	624	2,007.0	83.9	3.4	31.1	0.1
2019	1,744	679	2,040.6	85.5	1.6	33.3	2.2
2020	1,982	802	2,058.5	96.3	10.8	39.0	5.7
2021	2,195	916	2,223.7	98.7	2.5	41.2	2.2
2022	2,326	1,004	2,328.2	99.9	1.2	43.1	2.0
2023	2,440	1,064	2,407.6	101.3	1.4	44.2	1.1
2024	2,586	1,159	2,564.2	100.8	△0.5	45.2	1.0
2025(b)	2,772	1,307	2,676.7	103.6	2.7	48.8	3.6
증감(b-a)	1,998	945	1,228.1	50.2	-	23.8	-

자료: 각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순차입부채<sup>2)</sup>는 차입부채에서 현금 및 금융상품을 차감한 것으로, 국가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재정건전성 지표이며, 2011년 235.6조원에서 2025년 1,249.4조원으로 1,013.8조원 증가하였다.

2) 2023년도까지의 차입부채는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으로 산출하였으며, 현금 및 금융상품은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장기금융상품'로 산출하였다.

순차입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011년 16.3%였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2025년에는 46.7%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11년 대비 30.4%p 상승한 수치이며,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지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순차입부채 및 GDP 대비 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폭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전년 대비 0.9%p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5.0%p 상승하였다. 2025년에도 전년 대비 3.9%p 증가하여 최근 5년간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내는 등 국가의 실질적인 채무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차입부채 및 GDP 대비 순차입부채 비율의 증가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각 연도별 국가결산서 상 순차입부채 및 GDP 대비 비율]

(단위: 조원, %, %p)

구분	순차입부채(A)	GDP(B)	비율(A/B)	전년 대비 증감
2011(a)	235.6	1,448.6	16.3	
2012	269.0	1,504.7	17.9	1.6
2013	323.4	1,570.9	20.6	2.7
2014	379.6	1,638.5	23.2	2.6
2015	436.1	1,740.8	25.0	1.9
2016	477.9	1,833.0	26.1	1.0
2017	514.7	1,934.2	26.6	0.5
2018	515.3	2,007.0	25.7	△0.9
2019	583.8	2,040.6	28.6	2.9
2020	692.8	2,058.5	33.7	5.0
2021	789.5	2,223.7	35.5	1.8
2022	916.6	2,328.2	39.4	3.9
2023	988.2	2,407.6	41.0	1.7
2024	1,097.9	2,564.2	42.8	1.8
2025(b)	1,249.4	2,676.7	46.7	3.9
증감(b-a)	1,013.8	1,228.1	30.4	

자료: 각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의 총부채 규모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말 기준 2,772조원에 이르렀으며, 차입부채 또한 1,307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는 2011년 23.8%에서 2025년 36.4%로 상승하였고, GDP 대비 차입부채 비율 및 순차입부채 비율 역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23년 이후 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순차입부채의 GDP 대비 비율 또한 2011년 16.3%에서 2025년 46.7%로 상승하는 등 국가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수준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부채 증가액 중 상당 부분을 차입부채와 연금충당부채가 차지하고 있어 향후 이자비용 부담 및 연금재정부담이 국가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무제표상의 부채는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미래에 부담하여야 할 의무까지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상태의 중장기적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등 현금주의 중심의 재정 지표뿐만 아니라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GDP 대비 순차입부채 비율 등 발생주의 기반 재정건전성 지표의 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 재정전망 및 국가채무 관리계획 등에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프로그램순원가(프로그램 총원가 - 프로그램 수익)에 인건비, 관리비 등의 관리 운영비를 가산하고, 비배분비용·수익을 반영한 재정운영순원가는 아래 표와 같다. 2025년 재정운영순원가는 603.0조원으로 보건복지부 102.6조원(17.0%), 교육부 100.4조원(16.7%), 행정안전부 84.7조원(14.0%), 국방부 55.8조원(9.3%), 인사혁신처 46.1조원(7.6%), 고용노동부 38.2조원(6.3%)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 6개 부처의 재정운영순원가는 국가 전체 재정운영순원가의 70.9%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 재정운영순원가는 2024년(536.0조원) 대비 67.1조원(12.5%) 증가하였다. 부처별 증가액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14.5조원, 교육부 10.0조원, 국세청 9.2조원, 기획재정부 9.0조원, 고용노동부 4.8조원, 중소벤처기업부 4.7조원 순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부처별 재정운영순원가 (2024~2025)]

(단위: 조원, %)

구분	2024(a)	2025(b)	(비중)	증감(b-a)	(비중)
보건복지부	103.0	102.6	(17.0)	△0.5	△0.7
교육부	90.4	100.4	(16.7)	10.0	(14.9)
행정안전부	70.2	84.7	(14.0)	14.5	(21.6)
국방부	55.0	55.8	(9.3)	0.8	(1.2)
인사혁신처	41.9	46.1	(7.6)	4.2	(6.2)
고용노동부	33.4	38.2	(6.3)	4.8	(7.2)
국토교통부	21.6	23.8	(3.9)	2.2	(3.3)
농림축산식품부	12.2	14.4	(2.4)	2.2	(3.3)
기획재정부	4.9	13.9	(2.3)	9.0	(13.4)
경찰청	13.3	13.8	(2.3)	0.5	(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7	13.0	(2.2)	2.4	(3.5)
기후에너지환경부	11.9	12.7	(2.1)	0.8	(1.2)
중소벤처기업부	7.2	11.9	(2.0)	4.7	(7.0)
국세청	2.2	11.5	(1.9)	9.2	(13.8)
기타	55.5	60.4	(10.0)	4.8	(7.2)
합계	536.0	603.0	(100.0)	67.1	(100.0)

주: 각 소관 간 내부거래가 제거된 재정운영순원가임

자료: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전년도 대비 2025년 정부 재정운영순원가의 급증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지방교육재정 지원 확대 등 이천지출 성격의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부처 중 재정운영순원가 증가금액이 가장 큰 행정안전부에 대해 2024년 대비 2025년 프로그램별 증감현황을 분석하였다. 2024년과 2025년 행정안전부 프로그램순원가(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을 차감)를 살펴보면, 2024년 69.86조원에서 2025년 84.28조원으로 14.42조원 증가하였다.

행정안전부 프로그램순원가 증가는 주로 지방재정경제 프로그램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경제 프로그램 순원가는 2024년 0.27조원에서 2025년 13.14조원으로 12.87조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12.17조

원 증가) 시행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단년도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사업성과 및 정책효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행정안전부 프로그램순원가(2024~2025)]

(단위: 조원)

프로그램순원가	2024(a)	2025(b)	증감(b-a)
지방교부세	64.52	64.85	0.32
지방재정경제	0.27	13.14	12.87
재난관리	0.73	1.98	1.25
지역발전	1.43	1.36	△0.07
안전관리	0.99	1.04	0.05
기타	1.91	1.92	0.00
합계	69.86	84.28	14.42

자료: 각 부처별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교육부 프로그램순원가는 2024년 92.1조원에서 2025년 102.4조원으로 10.3조원 증가하였다. 아래 표와 같이 동 증가액은 주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등 지방교육재정 지원(5.1조원 증가)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5.7조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프로그램의 증가액 합계는 10.8조원으로 전체 프로그램순원가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교부 규모가 결정되는 재원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순원가 증가는 지방교육재정 지원 확대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프로그램순원가(2024~2025)]

(단위: 조원)

프로그램순원가	2024(a)	2025(b)	증감(b-a)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4.6	70.3	5.7
지방교육정책 지원	4.5	9.5	5.1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	5.7	5.9	0.2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5.0	5.3	0.3
국립대학 운영지원	4.9	5.0	0.1
대학자율역량강화	2.8	3.3	0.5
기타	4.63	3.08	△1.56
합계	92.1	102.4	10.3

자료: 각 부처별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국세청의 재정운영순원가는 2024년 2.38조원에서 2025년 11.62조원으로 9.24조원 증가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부처의 경우 프로그램순원가 증가가 재정운영순원가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 반면, 국세청은 비배분비용이 2024년 0.22조원에서 2025년 9.44조원으로 증가하여 재정운영순원가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국세청 재정운영표(2024~2025)]

(단위: 조원)

세부계정	2024(a)	2025(b)	증감(b-a)
I. 프로그램순원가	0.26	0.27	0.01
II. 관리운영비	1.95	1.98	0.03
III. 비배분비용	0.22	9.44	9.22
IV. 비배분수익	0.05	0.06	0.01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2.38	11.62	9.24
VI. 비교환수익 등	0.00	0.00	0.0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2.38	11.62	9.24

주: 동 재정운영순원가는 소관 간 내부거래가 제거되지 않은 금액임에 따라 소관 간 내부거래가 제거된 국가결산보고서 상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각 부처별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 국세청 비배분비용은 전년 대비 9.22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4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미결 증가산금을 국세청의 자산으로 회계처리 변경함에 기인한 것이다. 본래 국세청이 인식하지 않던 미결 증가산금을 국세청 자산으로 인식함에 따라 미수채권 중 미수제재금수의 채권이 10.4조원 증가하였으며, 관련 대손상각비가 8.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2025년 재정운영순원가 증감에는 기존에 인식하지 않던 자산을 회계상 인식함에 따른 영향도 포함되어 있어 재정운영 성과를 해석함에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 미수채권 증감(2024~2025)]

(단위: 조원)

세부계정	2024(a)				2025(b)				증감(b-a)	
	명목 가액	(대손 충당금)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장부 가액	명목 가액	(대손 충당금)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장부 가액	명목 가액	(대손 충당금)
미수국세	75.5	△43.4	△27.0	5.1	94.8	△48.7	△40.2	5.8	19.3	△5.3
미수제재금수익	4.0	△2.6	0.0	1.4	14.4	△10.8	0.0	3.6	10.4	△8.2
미수기타수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계	79.5	△46.0	△27.0	6.5	109.2	△59.5	△40.2	9.4	29.7	△13.5

자료: 각 부처별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기획재정부의 프로그램순원가는 2024년 13.8조원에서 2025년 20.1조원으로 6.3조원 증가하였다. 기획재정부 프로그램순원가 증가는 공공자금관리, 차입금 원금 등 상환 및 여유자금운용액의 변동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자금 관리 프로그램 순원가는 전년 대비 2.3조원(자산평가이익 2.6조원 감소) 증가하였으며, 차입금운용및상환 프로그램 순원가(이자비용)도 0.9조원 증가하였다. 또한 여유 자금운용 프로그램은 2024년 △16.3조원에서 2025년 △12.9조원으로 음(-)의 순원가 규모가 3.4조원 축소(자산처분이익 3.9조원 감소)됨에 따라 전체 프로그램순원가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재정운영결과 증가는 2024년 대비 2025년 자산처분이

익 및 평가이익 감소에 따른 수익 감소와 국채 발행 증가 등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프로그램순원가(2024~2025)]

(단위: 조원)

프로그램순원가	2024(a)	2025(b)	증감(b-a)
공공자금관리	27.3	29.7	2.3
차입금등원금상환	0.6	1.5	0.9
국제금융	1.8	1.0	△0.8
온실가스감축	0.4	0.5	0.1
기타	△0.0	0.4	0.4
여유자금운용	△16.3	△12.9	3.4
합계	13.8	20.1	6.3

자료: 각 부처별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가. 현황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sup>1)</sup> 및 이에 따른 국가회계예규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sup>2)</sup>에 따르면, 이전 회계 기간의 재무제표 작성 시 발생하였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회계처리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전기오류수정’이라 한다. 오류는 이와 같은 회계기준 적용의 오류 외에도 계산상의 실수, 사실판단의 잘못, 부정, 사실의 누락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sup>3)</sup>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또는 순자산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이익’이라 하며,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또는 순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 한다.

이러한 국가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정부가 2011년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이후 각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1년 최초 재무제표 개시 이후 2012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재무제표에 반영된 전기오류수정손익은 94.7조원의 전기오류수정이익과 66.9조원의 전기오류수정손실을 합하여 총 161.7조원에 이른다.

국가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은 2012~2025년 동안 일정한 추세가 없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53.6조원<sup>4)</sup>의 대규모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오지은 예산분석관(jieun.oh@assembly.go.kr, 6788-4684)

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범위 등) ② 이 규칙의 해석과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회계예규 -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전기오류수정"이란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회계처리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또는 순자산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이익이라 하며,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또는 순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 한다.

3) 삼일인포마인, 「계정과목별 일반회계와 세무해설」

발생하였으며, 2023년 4.0조원, 2024년 3.4조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5.7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최초 재무제표 개시 이후 연도별 국가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 현황]

(단위: 조원)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합계
전기오류 수정이익	5.9	2.8	9.0	7.5	3.7	6.4	5.0	2.6	3.3	2.7	40.3	1.0	1.4	3.1	94.7
전기오류 수정손실	6.7	1.6	4.6	4.4	3.6	9.5	3.8	4.3	5.6	1.9	13.3	3.0	2.0	2.6	66.9
합계	12.6	4.4	13.6	11.9	7.3	15.9	8.8	6.9	9.0	4.6	53.6	4.0	3.4	5.7	161.7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2012~2025년간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총 161.7조원에 이르는 등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저하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각 소관부처 및 기획재정부, 감사원은 오류의 발생원인별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회계법」 제1조5)에서는 국가회계는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동법 제4조6)에서는 국가회계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무제표에서의 지속적인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발생은 회계적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지속시켜, 「국가회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회계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특히, 국가재무제표가 작성된 이후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규모가 일

4) 2021회계연도에 실시한 자산재평가액의 오류에 대한 2022년 수정분이며, 2012~2025년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총합계인 161.7조원의 33.1%를 차지하고 있다.

5) 「국가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국가회계법」

제4조(국가회계의 원칙) 국가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국가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 국가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정하게 감소하지 못하고, 특히 2022회계연도에는 최근 11년 중 가장 큰 규모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함으로써,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2012~2025년 중 2022년에 특히 많은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1회계연도에 실시한 자산재평가<sup>7)</sup>의 오류가 크게 발생하여 2022회계연도에 이를 수정한 결과이다.

2022년의 전기오류수정 발생액을 살펴보면, 53조 5,655억원 중 자산재평가 효과가 51조 4,468억원으로 전체의 96.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의 대규모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자산재평가 효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건설중인자산 등의 오류정정으로 9,207억원, 국유재산 대장가액 오류 정정으로 3,187억원, 국유재산 대장 누락으로 2,148억원이 발생하였다.

[2022년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 사유]

(단위: 억원, %)

구분	자산 재평가 효과	건설중인 자산 등 오류정정	국유재산 대장가액 오류 정정	국유재산 대장 누락	국유재산 대장 이중 등재	기타	합계
전기오류수정이익	393,216	2,522	1,594	2,136	-	3,413	402,881
전기오류수정손실	121,252	6,685	1,593	12	601	2,631	132,774
합계	514,468	9,207	3,187	2,148	601	6,044	535,655
사유별 비중	96.0	1.7	0.6	0.4	0.1	1.1	100.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12~2025년간의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액 161.7조원 중 대부분은 국토교통부 85조 7,560억원, 국방부 32조 9,945억원, 해양수산부 10조 1,063억원, 농림축산식품부 6조 6,884억원 등에서 발생하였다. 이들 부처는 타 부처와 달리 총 자산에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부처들이다. 2022년의 대규모 전기오류수정손익도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는 이 부처들의 자산 관련 오

7) 「국유재산법」 제9조에 의거한 「202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2021년에는 발생주의 도입(2011년 이후 10년 만에 국유재산(토지, 건물, 임목축, 기계기구, 공작물, 선박및항공기)에 대해 전면 재평가하여 재산가치를 현행화하였다.

류에 대하여 해당 발생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관리 프로세스 등에서의 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주요 부처별, 연도별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 현황(2012~2025)]

(단위: 억원)

부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토교통부	34,786	15,326	59,949	67,566	20,219	48,636	26,932	33,283
국방부	58,019	694	43,019	18,796	20,634	80,778	19,134	13,046
해양수산부	0	14,663	7,282	6,861	4,588	4,057	33,561	12,514
농림축산식품부	759	39	11,019	1,023	3,018	18,439	1,597	817
기획재정부	11,664	393	4	44	711	136	3,725	4,417
방위사업청	3,433	1,131	463	487	8,057	289	105	163
농촌진흥청	238	163	89	16,763	95	21	7	13
교육부	0	253	5,359	549	1,135	754	185	882
(소계)	108,898	32,663	127,185	112,088	58,456	153,111	85,247	65,136
기타 부처	17,270	11,282	9,110	7,242	14,218	6,096	3,055	3,457
합계	126,168	43,945	136,295	119,330	72,674	159,207	88,302	68,593
부처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비중)
국토교통부	25,090	11,714	480,665	2,699	8,176	22,519	857,560	(53.0)
국방부	26,884	16,343	4,066	8,263	13,127	7,142	329,945	(20.4)
해양수산부	4,020	1,009	5,538	4,675	655	1,640	101,063	(6.3)
농림축산식품부	13,444	1,470	4,610	1,447	524	8,678	66,884	(4.1)
기획재정부	6,564	6,293	2,575	2,422	2,550	1,652	43,150	(2.7)
방위사업청	3,769	79	2,027	14,798	2,183	2,097	39,081	(2.4)
농촌진흥청	10	4	13	9	28	18	17,471	(1.1)
교육부	4,562	385	2,828	476	90	1,188	18,646	(1.2)
(소계)	84,343	37,297	502,322	34,789	27,333	44,934	1,473,802	(91.1)
기타 부처	5,305	8,733	33,333	5,280	6,447	12,362	143,190	(8.9)
합계	89,648	46,030	535,655	40,069	33,780	57,296	1,616,992	(100.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누적 전기오류수정손익이 크게 발생한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경우 2021~2025년 동안 총 52조 5,773억원에 이르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도교통부 자산, 부채별 전기오류수정손익(2021~2025)]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자산	일반유형자산	11,812	26,199	649	3,518	12,636	54,814
	사회기반시설	430	1,244,312	11,597	8,358	△93,236	1,171,461
	기타	7,031	△13,858	△16,070	23,280	120,083	120,466
	소계	19,272	1,256,652	△3,824	35,157	39,482	1,346,739
부채	8	3	8,422	△22	6	8,417	
순자산 변동	△7,566	△775,990	△1,898	△26,959	△16,969	△829,382	
합계	11,714	480,665	2,699	8,176	22,519	525,773	

자료: 국토교통부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자산재평가 효과에서 47조 1,011억원(89.6%)이 발생해 오류 발생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22회계연도에는 48조 665억원의 오류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회기반시설의 2021회계연도 자산재평가에 대한 수정분이다.

이외 국유재산 대장 누락(1조 8,691억원), 건설중인자산, 선급금, 선수금 등 오류정정(1조 7,184억원) 등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도교통부 자산별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 주요 사유(2021~2025)]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국유재산 대장 이중 등재	122	325	128	125	564	1,264
국유재산 대장 누락	4,599	160	705	656	12,571	18,691
국유재산 대장가액 오류 정정	1,448	126	1,342	2,675	2,432	8,023
사용수익권 정리	0	2,696	51	0	0	2,747
건설중인자산, 선급금, 선수금 등 오류정정	5,509	4,599	205	513	6,358	17,184
감가상각비 효과	32	205	110	3,971	407	4,725
자산재평가 효과	0	470,829	△26	146	62	471,011
물품 대장 오류 정정	4	78	182	76	93	433
기타	0	1,647	2	14	32	1,695
합계	11,714	480,665	2,699	8,176	22,519	525,773

자료: 국토교통부

국방부의 경우 2021년 4,649억원, 2022년 △683억원, 2023년 △5,264억원, 2024년 △6,267억원, 2025년 2,652억원의 순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였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자산 관련 오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기타계정 오류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본계정 대체되지 않은 선급금(기타)을 제거한 것이다. 2021~2025년 동안 자산 관련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총 △1조 8,206억원 발생하였으며, 같은 기간 부채 관련 전기오류수정손익은 1조 3,328억원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자산, 부채별 전기오류수정손익(2021~2025)]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자 산	일반유형자산	811	△3,491	△233	△298	616	△2,595
	기타	1,160	2,808	△4,086	△14,977	△516	△15,611
	소계	1,971	△683	△4,319	△15,275	100	△18,206
부채		2,708	0	△945	9,008	2,557	13,328
순자산 변동		△30	0	0	0	△5	△35
합계		4,649	△683	△5,264	△6,267	2,652	△4,913

자료: 국방부

세부적으로는 국유재산 대장 누락(1조 5,256억원), 국유재산 대장 이중 등재(△1조 1,415억원), 건설증인자산·선급금·선수금 관련 오류 정정(△2조 5,095억원)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방부가 관리하는 대규모 국유재산 등에 대한 회계정보 관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정사항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방부 자산별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 주요 사유(2021~2025)]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국유재산 대장 이중 등재	△1,964	△2,269	△1,745	△2,170	△3,267	△11,415
국유재산 대장 누락	2,191	3,252	2,171	2,919	4,723	15,256
국유재산 대장가액 오류 정정	995	4	△258	△213	0	529
사용수익권 정리	0	0	0	0	0	0
건설중인자산, 선급금, 선수금 등 오류정정	△3,938	△1,574	△4,444	△14,212	△927	△25,095
감가상각비 효과	0	0	0	0	0	0
자산재평가 효과	0	0	0	0	0	0
물품 대장 오류 정정	3,316	△96	△43	△1,614	△472	1,091
기타	4,049	0	△945	9,023	2,595	14,721
합계	4,649	△683	△5,264	△6,267	2,652	△4,913

자료: 국방부

한편 해양수산부는 토지, 건물, 구축물 등의 자산계정에서 2021~2025년간 총 1조 3,517억원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였다. 토지와 토지사용권에서 발생한 오류가 총 5,936억원(43.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구축물에서 발생한 오류가 2,978억원으로 22.0%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2025년 해양수산부는 이미 준공이 완료된 사업의 선급금을 본 계정(구축물, 국가어항, 항만 등)으로 대체하지 않음에 따라 선급금이 과대 계상된 것을 2025년 전기오류수정손실(2025년 감사원 지적사항)로 반영하였는데, 동 금액이 1,295억원 반영되어 있다.

[해양수산부 자산별 전기오류수정손익 현황(2021~2025)]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전기 오류 수정 이익 (a)	토지	194	122	125	406	64	911
	토지사용권	154	502	887	8	0	1,551
	건물	41	1,254	42	1	2	1,340
	건물사용수익권	62	0	111	0	0	173
	건축물	13	1,366	199	15	57	1,650
	기타	256	664	22	1	162	1,105
	소계	720	3,908	1,386	431	285	6,730
전기 오류 수정 손실 (b)	토지	22	63	2,930	167	10	3,192
	토지사용권	234	0	0	48	0	282
	건물	0	57	86	1	1	145
	건물사용수익권	4	0	0	0	0	4
	건축물	13	1,077	198	1	39	1,328
	선급금	0	0	0	0	1,295	1,295
	기타	16	433	75	7	10	541
소계	289	1,630	3,289	224	1,355	6,787	
합계(a+b)		1,009	5,538	4,675	655	1,640	13,517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발생사유별로 살펴보면 건설중인자산 오류, 누락 재산 등재 및 입력 오류, 물품 누락재산 등재 및 입력 착오 오류 수정분 등이 반영되어 있다. 국유재산 대장 이중 등재로 인한 오류가 2021~2025년간 총 4,626 억원, 국유재산 대장 누락 오류가 같은 기간 총 3,819억원 발생하는 등 국유재산 대장가액 관련 오류가 8,579억원(63.4%) 발생하였다.

[해양수산부 자산별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 주요 사유(2021~2025)]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자산재평가 효과	13	9	84	0	0	106
감가상각비 효과	36	38	64	64	57	259
국유재산 대장가액 오류 정정	4	0	108	19	3	134
국유재산 대장 이중등재	197	1,197	3,074	158	0	4,626
국유재산 대장 누락	487	2,553	250	303	226	3,819
기타	272	1,097	64	111	0	1,544
건설증인자산, 선급금, 선수금 등 오류 정정	0	644	5	0	1,354	2,003
사용수익권 정리	0	0	1,026	0	0	1,026
합계	1,009	5,538	4,675	655	1,640	13,517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1~2025년간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총 1조 6,729 억원으로, 토지, 건물, 구축물 등의 일반유형자산에서 대부분의 오류가 발생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자산, 부채별 전기오류수정손익(2021~2025)]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자 산	일반유형자산	1,288	4,599	367	332	8,678	15,264
	사회기반시설	0	0	0	0	0	0
	기타	182	8	1	3	0	194
	소계	1,470	4,607	368	335	8,678	15,458
부채	0	3	1,079	0	0	1,082	
순자산 변동	0	0	0	189	0	189	
합계	1,470	4,610	1,447	524	8,678	16,72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오류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국유재산 대장 누락, 국유재산 대장가액 오류 정정 및 건설증인자산과 선급금 등의 인식오류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2025년에는 국유재산 대장 이중 등재로 인한 오류가 2,585억원, 국유재산 대장 누락 오류가 5,925억원 등으로 국유재산 대장 관련 오류가 8,510억원 발생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자산별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 주요 사유(2021~2025)]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자산재평가 효과	114	4,019	0	11	166	4,310
감가상각비 효과	0	382	0	7	2	391
국유재산 대장가액 오류 정정	45	73	109	38	0	265
국유재산 대장 이중등재	338	61	221	130	2,585	3,335
국유재산 대장 누락	598	34	6	91	5,925	6,654
기타	184	24	12	244	0	464
건설중인자산, 선급금, 선수금 등 오류 정정	180	15	1,099	3	0	1,297
사용수익권 정리	11	2	0	0	0	13
합계	1,470	4,610	1,447	524	8,678	16,72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렇듯,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주로 자산재평가 오류, 자산 누락, 건설중인자산 등의 실태조사에 따른 오류 수정 등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다.

자산재평가 오류는 상각완료된 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거나, 재평가액이 장부가액과 동일 혹은 취득원가와 동일하게 평가된 오류 등을 수정한 결과이다. 국유재산 대장(장부) 누락은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에 따라 차후년도에 등재함으로써 발생한 오류를 말하며, 국유재산 대장가액 오류는 대장에 등재는 되어있으나, 자산 가액을 잘못 입력하여 이를 수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또한, 국유재산 대장 이중 등재는 대장에 중복 등재된 자산을 당기에 정리함에 따라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국유재산과 관련한 오류수정이 빈번하고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소관부처 및 국유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매각의 각 단계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미수채권은 정부 고유의 행정 활동, 재화 및 용역제공활동 등의 거래에 의하여 장래에 일정한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수채권의 회계과목 내에서는 해당 채권을 발생시킨 거래의 성격에 따라 미수국세, 미수사회보험수익, 미수부담금수익, 미수제재금수익,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미수연금수익, 미수이자수익, 미수보험수익, 미수보증수익, 미수기타수익, 기타의미수금으로 구분한다. 또한,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미수채권 중 향후 회수불가능 위험이 있는 채권의 비중을 의미한다. 국가는 미수채권 중에서 미래에 발생할 대손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데, 기말 채권잔액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추정하는 방법<sup>1)</sup>에는 연령분석법, 채권잔액비례법, 대손실적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이외에도 기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오지은 예산분석관(jieun.oh@assembly.go.kr, 6788-4684)

1) 연령분석법은 기말 채권잔액을 경과일수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로 상이한 대손률을 적용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이며, 채권잔액비례법은 기말 채권잔액 전체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회수불능채권예상액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말 대손충당금잔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대손실적률법은 채권에 대한 과거 대손률을 산정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이다.

[국가 미수채권 세부 구성 현황]

계정과목	정의
미수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수익 발생분 중 미수금액
미수사회보험수익	사회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 실체가 수취하는 사회보험수익 발생분 중 미수금액
미수부담금수익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조세성 부담금 등의 법정부담금 수익 발생분 중 미수금액
미수제재금수익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벌금, 몰수금및추징금 등의 수익 발생분 중 미수금액
미수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병원수입, 교도소수입, 입장료수입(관람료수입 포함), 면허료 및 수수료, 국립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항공·항만 시설의 이용에 따른 수입 및 공업용수 사용료, 실습수입(학교 및 단체의 실습연구 시험에 따른 부산물 수입) 등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발생분 중 미수된 금액으로 용역제공의 경우 기간경과에 따른 미수수익을 포함함
미수연금수익	공무원연금수익, 군인연금수익, 사학연금수익과 국민연금수익 발생분 중 미수금액
미수이자수익	금융상품, 채권 및 대여금 등에 대하여 산정한 기간 경과분 미수수익 및 수취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수취하지 못한 이자수익 금액
미수보험수익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 등이 수취하는 보험료수입 발생분 중 미수금액
미수보증수익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 등이 수취하는 보증료수입 발생분 중 미수금액
미수기타수익	법인세환급금, 신탁사업이익 등 기타수익에 대한 미수채권
기타의미수금	일반유형자산 처분 등으로 발생하는 미수금을 비롯하여 자금거래 등과 관련하여 확정된 채권 중 미수금액

자료: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을 바탕으로 제작성

2025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상 미수채권은 총 138.2조원이며, 대손충당금 67.1조원과 현재가치할인차금 947억원을 차감한 장부가액은 71.0조원으로,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48.6%에 이른다. 이는 국가가 2025년 말 기준으로 미수채권 중에서 48.6%에 대해서는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국가 전체적으로 미수채권은 전년도 107.1조원 대비 31.0조원 증가하였으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장부가액은 16.9조원 증가하였다. 2025년 말 기준 미수채권에는 전년도보다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채권이 전년 대비 14.2조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25회계연도 국가 미수채권 현황]

(단위: 억원, %, %p)

구분	2024(A)	2025(B)	증감(C=B-A)	증감률(C/A)
미수채권(a)	1,071,991	1,382,625	310,634	29.0
현재가치할인차금(b)	1,536	947	△589	△38.3
대손충당금(c)	529,343	671,494	142,151	26.9
잔액(d=a-b-c)	541,112	710,183	169,071	31.2
대손충당금 설정률(c/a)	49.4	48.6	△0.8	-

주: 2021~2024년 금액은 2021~2024년 결산보고서를 참고한 것임  
 자료: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미수채권(원금)은 2025년 말 기준 전년 대비 31.0조원 증가하였으며, 이 같은 증가의 주요 원인은 미수국세 및 미수제재금수익의 확대에 있다.

2025년 말 기준 국가 미수채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으로, 총 99.7조원에 달해 전체 미수채권(138.2조원)의 72.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80.2조원에서 19.5조원 증가한 금액이다. 동 채권의 대손충당금은 2024년 44.8조원에서 2025년 50.5조원으로 5.6조원 증가하였다.

미수제재금수익으로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벌금, 몰수금 및 추징금 등의 수익 발생분 중 미수 금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말 잔액은 18.5조원으로 국가 미수채권의 13.3%를 차지한다. 이 중 대손충당금이 설정된 규모는 12.7조원에 달하여 상당 부분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2025년 미수제재금수익 증가에는 회계처리 기준의 적용 범위 변경에 따른 영향도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은 2025년부터 그동안 미수채권으로 인식하지 않던 미결 증가산금을 미수채권에 반영하였다. 미결 증가산금은 체납국세에 부과되는 가산금 중 체납처분이 종결되지 않아 최종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명목가액 기준 10.3조원(대손충당금 8.1조원 차감 전), 순액 기준 2.2조원이 추가로 인식되었다.

즉, 2025년 미수제재금수익 증가분에는 체납 증가 또는 징수실적에 따른 채권 증가뿐만 아니라 회계인식 범위 확대에 따른 효과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 전체 미수채권 세부 현황]

(단위: 억원, %, %p)

구분		2024(A)	2025(B)	증감(C=B-A)	증감률(C/A)
미수국세 <sup>2)</sup>	미수채권 원금(a)	<b>801,742</b>	<b>997,304</b>	<b>195,562</b>	24.4
	대손충당금(b)	<b>448,938</b>	<b>505,295</b>	<b>56,357</b>	12.6
	대손충당금 설정률(b/a)	56.0	50.7	△5.3	.
미수제재금 수익	미수채권 원금(a)	80,707	<b>184,945</b>	104,238	129.2
	대손충당금(b)	44,956	<b>127,334</b>	82,378	183.2
	대손충당금 설정률(b/a)	55.7	68.8	13.1	.
미수기타 수익	미수채권 원금(a)	21,102	45,246	24,144	114.4
	대손충당금(b)	8,391	8,919	528	6.3
	대손충당금 설정률(b/a)	39.8	19.7	△20.1	.
미수부담금 수익	미수채권 원금(a)	52,163	44,869	△7,294	△14.0
	대손충당금(b)	4,645	5,554	909	19.6
	대손충당금 설정률(b/a)	8.9	12.4	3.5	.
미수이자 수익	미수채권 원금(a)	41,427	40,861	△566	△1.4
	대손충당금(b)	12,787	13,966	1,179	9.2
	대손충당금 설정률(b/a)	30.9	34.2	3.3	.
미수사회 보험수익	미수채권 원금(a)	28,972	29,248	276	1.0
	대손충당금(b)	7,704	8,602	898	11.7
	대손충당금 설정률(b/a)	26.6	29.4	2.8	.
기타의 미수금	미수채권 원금(a)	30,487	24,816	△5,671	△18.6
	대손충당금(b)	1,136	1,207	71	6.3
	대손충당금 설정률(b/a)	3.7	4.9	1.2	.
미수보험 수익	미수채권 원금(a)	7,260	6,665	△595	△8.2
	대손충당금(b)	0	0	0	-
	대손충당금 설정률(b/a)	0	0.0	0.0	.
미수재화 수익	미수채권 원금(a)	6,491	6,041	△450	△6.9
	대손충당금(b)	710	617	△93	△13.2
	대손충당금 설정률(b/a)	10.9	10.2	△0.7	.
미수연금 수익	미수채권 원금(a)	1,636	2,626	990	60.5
	대손충당금(b)	76	0	△76	△100.0
	대손충당금 설정률(b/a)	4.6	0.0	△4.6	.
미수보증수익	미수채권 원금(a)	8	4	△4	△53.0
	대손충당금(b)	0	0	0	-
	대손충당금 설정률(b/a)	3.6	7.4	3.8	.
합계	미수채권 원금(a)	1,071,991	1,382,625	310,634	29.0
	대손충당금(b)	529,343	671,494	142,151	26.9
	대손충당금 설정률(b/a)	49.4	48.6	△0.8	.

주: 1. 미수채권은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대손충당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임

2. 2021~2024년 금액은 2021~2024년 결산보고서를 참고한 것임

자료: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첫째, 2021년 대비 2025년 국가 미수채권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동 기간 미회수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손충당금 규모도 확대되고 있어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높은 중앙관서는 소관 회계 및 기금의 채권 회수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국가 미수채권은 84.7조원에서 138.2조원으로 53.6조원(63.3%) 증가하여 10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한편, 국가의 미수채권 중에는 다양한 사유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들도 존재하는데, 동 회수 불가능 채권이 적을수록,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낮을수록 국가의 현금흐름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미수채권이 쌓이면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25년 말 기준 국가의 138.2조원에 이르는 미수채권 중에는 48.6%에 해당하는 67.1조원이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미수채권의 대손충당금은 2021년 36.5조원에서 2025년 67.1조원으로 30.6조원(83.9%) 증가하였다.

또한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21년 43.1%에서 2025년 48.6%로 상승하였다. 이는 국가 미수채권 증가와 함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 규모도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장부가액은 2021년 47.7조원에서 2025년 71.0조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48.8%로 미수채권 원금 증가율(63.3%)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국세수익은 국가의 수익으로 인식되므로 국세청 재정운영표에는 반영되지 않고 국세징수활동표를 통해 관리된다. 다만 국세청은 국세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국세를 징수채권으로 관리하므로 재정상태표에는 미수국세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 과정에서 국세수익조정(자산차감 항목)은 국세징수활동표상 국세수익과 재정상태표상 미수국세 및 대손충당금 변동을 연계하기 위한 조정항목으로 기능한다. 예를 들어 당기 발생한 미수국세 채권(100)의 대손충당금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반영하는데, 국세수익조정이 자산차감 항목임에 따라 국세청의 총자산 증감은 0이다.  
(차) 미수국세(자산) 100 (대) 국세수익조정(자산차감 항목) 100

[국가 미수채권 현황(2021~2025)]

(단위: 억원, %, %p)

구분	2021(A)	2022	2023	2024	2025(B)	증감 (C=B-A)	증감률 (C/A)
미수채권(a)	846,575	903,016	990,522	1,071,991	1,382,625	536,050	63.3
현재가치할인차금(b)	3,956	3,051	2,241	1,536	947	△3,009	△76.1
대손충당금(c)	365,203	404,571	468,754	529,343	671,494	306,291	83.9
장부가액(d=a-b-c)	477,416	495,394	519,528	541,112	710,183	232,767	48.8
대손충당금 설정률(c/a)	43.1	44.8	47.3	49.4	48.6	5.5	

주: 2021~2024년 금액은 2021~2024년 결산보고서를 참고한 것임  
 자료: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됨

국가 미수채권 중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이면서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30% 이상인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방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방위사업청, 산림청 등 8개 중앙관서의 미수채권과 대손충당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5년 말 기준 동 8개 중앙관서의 미수채권은 121.1조원으로 국가 전체 미수채권의 8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은 65.3조원으로 국가 전체 대손충당금의 97.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가 미수채권의 회수위험이 일부 기관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국세청의 경우 미수채권 규모가 109.1조원으로 8개 중앙관서 전체의 90.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도 59.5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가 미수채권의 회수위험 역시 국세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84.1%로 8개 중앙관서 중 가장 높다. 금융위원회의 미수채권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인 KR&C에 장기융자하고 있는 14조 2,815억원<sup>3)</sup>에 대한 미수이자수의 1조 1,028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동 미수이자수익에 대해 전액 대손충당금 설정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해당 채권은 장기간 대손충당금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회수 실적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채권 관리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3)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해당 채권은 예금 대지급 등 부실금융회사 정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KR&C에 대여하여 발생한 것으로 상당 부분 회수가 어려운 입장임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최근 5년 동안 3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낮지 않은 수준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미수채권은 고용보험 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 각각 2조 415억원(55.2%), 1조 3,473억원(36.5%)으로 고용노동부 전체 미수채권의 91.7%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기금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025회계연도 대손충당금 설정률 30% 이상 부처별 미수채권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고용노동부	미수채권 원금(a)	33,380	35,033	36,867	37,014	36,950
	대손충당금(b)	12,155	11,863	12,280	12,519	13,546
	대손충당금 설정률(b/a)	36.4%	33.9%	33.3%	33.8%	36.66%
공정거래위원회	미수채권 원금(a)	5,398	5,454	2,976	5,778	4,483
	대손충당금(b)	1,275	1,177	1,418	3,153	2,813
	대손충당금 설정률(b/a)	23.6%	21.6%	47.6%	54.6%	62.7%
관세청	미수채권 원금(a)	69,845	47,183	47,406	53,361	56,676
	대손충당금(b)	16,190	19,373	20,579	21,676	25,395
	대손충당금 설정률(b/a)	23.2%	41.1%	43.4%	40.6%	44.81%
국방부	미수채권 원금(a)	1,758	1,432	1,514	1,821	2,563
	대손충당금(b)	649	860	902	896	838
	대손충당금 설정률(b/a)	36.9%	60.1%	59.6%	49.2%	32.71%
국세청	미수채권 원금(a)	568,283	635,843	711,168	795,031	1,091,643
	대손충당금(b)	309,190	345,327	403,880	460,241	595,342
	대손충당금 설정률(b/a)	54.4%	54.3%	56.8%	57.9%	54.5%
금융위원회	미수채권 원금(a)	12,167	13,425	15,248	14,396	13,697
	대손충당금(b)	11,225	11,300	11,392	11,402	11,515
	대손충당금 설정률(b/a)	92.3%	84.2%	74.7%	79.2%	84.07%
방위사업청	미수채권 원금(a)	6,628	5,694	5,657	6,238	4,741
	대손충당금(b)	3,206	2,429	3,237	3,513	2,779
	대손충당금 설정률(b/a)	48.4%	42.7%	57.2%	56.3%	58.61%
산림청	미수채권 원금(a)	882	897	1,164	1,238	1,171
	대손충당금(b)	210	244	489	485	553
	대손충당금 설정률(b/a)	23.8%	27.2%	42.0%	39.2%	47.27%
소계(A)	미수채권 원금(a)	698,341	744,961	822,000	914,877	1,211,924
	대손충당금(b)	354,100	392,573	454,177	513,885	652,781
	대손충당금 설정률(b/a)	50.71%	52.70%	55.25%	56.17%	53.86%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미수채권(B)	미수채권 원금(a)	846,575	903,016	990,522	1,071,991	1,382,625
	대손충당금(b)	365,203	404,571	468,754	529,343	671,494
	대손충당금 설정률(b/a)	43.1%	44.8%	47.3%	49.4%	48.57%
비중(A/B)	미수채권 원금	82.49%	82.50%	82.99%	85.34%	87.65%
	대손충당금	96.96%	97.03%	96.89%	97.08%	97.21%

주: 1. 미수채권은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대손충당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임

2. 2021~2024년 금액은 2021~2024년 결산보고서를 참고한 것임

자료: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2025년 국세청 미수채권(미수국세 등)은 109.1조원(국가 전체 미수채권의 79.0%)으로 국가 전체 미수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채권관리가 필요하다.**

국세청의 미수채권(미수국세 등)은 2025년 말 기준 109.1조원으로 국가 전체 미수채권 138.3조원의 79.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 미수채권 중 국세청 미수채권 비중은 2021년 67.1%에서 2025년 79.0%로 확대되었으며, 국가 미수채권이 국세청에 더욱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5년 국세청 미수채권은 전년 대비 29.6조원 증가하여 최근 5년 중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였는데 같은 기간 국가 전체 미수채권 증가액은 31.1조원으로, 2025년 국가 미수채권 증가가 사실상 국세청 미수채권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25년 말 기준 국세청 대손충당금은 59.5조원으로 국가 전체 대손충당금의 88.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국가 전체 미수채권의 79.0%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회수위험이 국세청에 더욱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국세청 미수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24년 57.9%에서 2025년 54.5%로 하락하였다. 다만 이는 대손충당금 감소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미수채권 증가 속도가 대손충당금 증가 속도를 상회한 데 따른 결과이다. 실제로 2025년 미수채권 원금은 전년 대비 37.3% 증가한 반면 대손충당금은 29.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와 같이 국가 미수채권의 규모 확대와 회수위험이 국세청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고액·장기 체납채권에 대한 관리 및 징수 활동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미수채권 세부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A)	2025(B)	증감 (C=B-A)
국세청 (A)	미수채권 원금(a)	568,283	635,843	711,168	795,031	1,091,643	296,613
	대손충당금(b)	309,190	345,327	403,880	460,241	595,342	135,101
	대손충당금 설정률(b/a)	54.4	54.3	56.8	57.9	54.5	△3.4
전체 미수채권 (B)	미수채권 원금(a)	846,575	903,016	990,522	1,071,991	1,382,625	310,634
	대손충당금(b)	365,203	404,571	468,754	529,343	671,494	142,151
	대손충당금 설정률(b/a)	43.1	44.8	47.3	49.4	48.5	△1.1
비중 (A/B)	미수채권 원금	67.1	70.4	71.8	74.2	79.0	95.5
	대손충당금	84.7	85.4	86.2	86.9	88.7	95.0

주: 1. 미수채권은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대손충당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임

2. 2021~2024년 금액은 2021~2024년 결산보고서를 참고한 것임

자료: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셋째, 정부 재정수입의 확대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확보,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미수제재금수익(법령 위반에 따른 금전적 제재금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과 미수부담금수익(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확대 문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조세징수활동 등 다양한 국가활동에 따라 발생한 연도말 미수금액은 국가의 미수채권을 구성하게 되며, 이 중 미수제재금수익과 미수부담금수익은 국세와 더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 등에 따라 발생한 연도말 미수금액이다. 미수제재금수익은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벌금, 몰수금및추징금 등의 수익 발생분 중 미수금액이며, 미수부담금수익은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조세성 부담금 등의 법정 부담금 수익 발생분 중 미수금액이다.

법령 등에 따른 제재금과 부과금 중 2025년 말 기준으로 미회수된 금액은 미수제재금수익 18조 4,945억원, 미수부담금수익 4조 4,869억원 등 총 22조 9,814억원에 달한다. 또한 이 중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추정되어 대손충당금이 설정된 규모는 총 13조 2,888억원으로,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57.8% 수준이다. 이는 해당 채권의 절반 이상이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미수제재금수익은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10조 4,238억원 증가한 18조 4,945억원을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대손충당금도 4조 4,956억원에서 12조 7,334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률 역시 55.7%에서 68.8%로 상승하였다. 이는 증가한 미수제재금수익 상당 부분이 회수 곤란 채권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2025년 미수제재금수익 증가에는 2024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국세청이 기존에 인식하지 않던 미결 증가산금 2.2조원(명목가액 10.3조원, 대손충당금 8.1조원)을 미수채권으로 인식하도록 변경된 영향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2025년 증가분을 단순히 신규 채납 증가나 징수 실적 저하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제재금수익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8.8%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증가한 채권의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액·장기 채납 채권에 대한 징수 실적을 제고함으로써 국가 재정수입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가 미수채권 중 미수부담금 수익 및 미수제재금 수익 현황]

(단위: 억원, %, %p)

구분		2021(A)	2022	2023	2024	2025(B)	증감 (C=B-A)
미수 제재금 수익	미수채권 원금(a)	74,652	77,004	75,926	80,707	184,945	110,293
	대손충당금(b)	38,033	38,581	41,531	44,956	127,334	89,301
	대손충당금 설정률(b/a)	50.9	50.1	54.7	55.7	68.8	17.9
미수 부담금 수익	미수채권 원금(a)	57,647	61,179	58,177	52,163	44,869	△12,778
	대손충당금(b)	3,150	3,695	5,070	4,645	5,554	2,404
	대손충당금 설정률(b/a)	5.5	6.0	8.7	8.9	12.4	6.9
합계	미수채권 원금(a)	132,299	138,183	134,104	132,871	229,814	97,515
	대손충당금(b)	41,183	42,276	46,601	49,601	132,888	91,705
	대손충당금 설정률(b/a)	31.1	30.6	34.8	37.3	57.8	26.7

주: 1. 미수채권은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대손충당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임

2. 2021~2024년 금액은 2021~2024년 결산보고서를 참고한 것임

자료: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자본잠식 출자기관의 반복적 손실 및 사채발행 리스크에 대한 중장기 대응 필요

### 가. 현황

산업통상부는 2025년 말 기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에 14조 1,844억원을 출자하고 있다. 이 중 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한 3개 기관은 자본잠식 상태이며, 산업통상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출자금 13조 7,444억원 전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하였다.

각 기관에 대한 정부출자내역을 살펴보면, 대한석탄공사는 1,869억원,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조 6,089억원, 한국석유공사는 10조 9,486억원이며, 정부지분율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100%, 한국광해광업공단은 99.9%이다.

[2025년 산업통상부 출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출자기관	취득원가	장부가액	정부지분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대한석탄공사	186,893	-	100.0
	한국광해광업공단	2,608,902	-	99.9
	한국석유공사	10,948,571	-	100.0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한국산업은행	440,000	440,000	100.0
합계		14,184,366	440,000	-

자료: 산업통상부

국가회계기준에서는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출자금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등 감액 요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 출자금은 감액손실로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이들 3개 기관에 대한 출자금 감액손실 규모는 총 1조 3,250억원으로, 2021년 975억원에서 2023년 1,488억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4년 4,131억원으로 급증하였고, 2025년에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인 5,132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2025년 연도별 출자금 감액손실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누계
대한석탄공사	28,469	27,143	23,614	40,223	35,812	155,261
한국광해광업공단	-	48,791	37,232	251,762	415,447	753,232
한국석유공사	69,047	76,345	87,977	121,159	61,970	416,498
합계	97,516	152,279	148,823	413,144	513,229	1,324,991

자료: 산업통상부

## 나. 분석의견

정부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출자기관의 재무구조와 부채 현황을 기관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누적 결손에 따른 반복적인 감액손실과 사채 발행에 따른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①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는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인해 납입자본금 전액이 잠식되어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큰 상태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2025년 6월 말 삼척 도계 광업소 폐광으로 석탄사업이 종료되었다.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석탄 수요 감소추세에 대비하여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수립하고 생산 감축, 비경제 탄광의 폐광 및 매각, 공사의 기능 및 구조 조정 등을 추진해 왔다. 이로 인한 지속적인 감산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석탄 원가는 상승하게 된 반면, 최고판매가격은 원가 이하로 유지되면서 공사의 영업수지가 악화되고 손실이 누적되었다. 최근 5년간 공사의 총자산은 2021년 9,705억원에서 2025년 4,862억원으로 감소하였고, 총부채는 2021년 2조 2,628억원에서 2025년 2조 5,939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2021~2025회계연도 대한석탄공사 재무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자산	9,705	9,659	8,592	4,220	4,862
부채	22,628	23,917	25,020	24,642	25,939
자본	△12,923	△14,258	△16,428	△20,422	△21,076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사의 부채 중 이자가 발생하는 사채, 차입금 등으로 구성된 금융부채는 2025년 기준 전체 부채의 약 98.7%에 해당하는 2조 5,592억 원이다.

산업통상부는 매년 공사의 부채 증가 완화를 위한 출자 예산을 편성하여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출자 예산의 규모를 초과하는 재무 부담으로 인하여 금융부채는 2021년 2조 2,047억 원에서 2025년 2조 5,592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이자 비용은 2021년 300억 원에서 2025년 776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대한석탄공사 금융부채 및 정부 출자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융부채	22,047	23,633	24,580	24,410	25,592
출자예산	285	271	236	402	358
이자비용	300	537	810	874	776

자료: 대한석탄공사

산업통상부는 석탄사업 종료에 따라 공사 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으며, 폐광 이후 재고 석탄 관리, 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잔여 기능과 수질정화 등 임시광해방지<sup>1)</sup> 기능 등 안전관리 기능은 일부 남은 인력의 계약직 전환을 통해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2025년 기준 대한석탄공사의 재무제표에 남아 있는 재고자산은 1,620억 원에 불과하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6월 말 현재까지, 정부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의 수탁기관을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하고, 대

1) 임시광해방지 이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인계 예정

한석탄공사는 잔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조 5,592억원 수준의 금융부채는 정부가 인수하여 정리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는 우발부채를 과거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국가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 또는 현재 의무이지만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석탄공사는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장기간의 영업손실 누적에 따라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자체적인 부채상환능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한석탄공사의 금융부채는 국가가 법적으로 직접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향후 경영정상화 지원 또는 부채 상환을 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대한석탄공사의 금융부채가 국가재정에 잠재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재정위험 요인에 해당하는지, 국가재무제표상 우발부채 관련 주석공시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②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통합 이전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광물자원 개발 사업의 부실로 인해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공단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와 자산을 승계하였으며,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3조<sup>2)</sup>에 따라 고유계정과 해외자산계정을 분리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①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공단에 해외자산계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자산계정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구분회계 처리되는 해외자산계정에 대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이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이 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로 자금을 이체해서는 아니 된다.

2025년 기준 해외자산계정의 자산총계는 1조 4,964억원, 부채총계는 7조 9,715억원으로, 자본잠식 규모는 6조 4,751억원 수준이다.

전체 결산 기준으로 보면, 미처리결손금이 5조 9,709억원으로 자본금 2조 7,532억원을 2배 이상 초과하고 있다. 총부채는 8조 577억원이며, 이 중 금융부채는 7조 9,970억원으로, 부채의 99.2%에 해당한다.

[2025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재무현황]

(단위: 억원)

구분	고유계정	해외자산계정	총계
자산총계	33,976	14,964	48,940
부채총계	862	79,715	80,577
금융부채	263	79,707	79,970
자본총계	33,114	△64,751	△31,637
자본금	12,957	14,575	27,532
미처리결손금	19,795	△79,504	△59,709

주: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2025년 기준, 공단의 영업손실은 837억원, 당기순손실은 4,520억원으로, 자체적인 부채 상환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각 계정별로는 고유계정은 영업손실이 793억원, 당기순이익이 731억원이며, 해외자산계정은 당기순손실이 5,251억 원에 달하고 있다.

[2025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손익현황]

(단위: 억원)

구분	고유계정	해외자산계정	총계
수익	3,499	2,714	6,213
매출원가	3,410	2,675	6,085
매출총이익	89	39	128
영업이익(손실)	△793	△44	△837
당기순손익	731	△5,251	△4,520

주: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산업통상부는 2021년 공단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필수 핵심 광물에 해당하거나 재무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는 2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해외자산을 처분하기로 결정<sup>3)</sup>하고, 매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말 기준, 전체 21개국, 47개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매각이 이루어진 사업은 9개국 17개 사업으로, 처분손실은 2조 8,172억원이다.<sup>4)</sup>

[해외자산 매각 처분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기투자비 (a)	기회수액 (b)	매각대금 (c)	처분손익 (d=b+c-a)
매각사업 (9개국, 17개 사업)	36,105	2,707	5,226	△28,172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아울러 전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배당수익, 대부투자 원리금, 매각수입 등으로 회수한 금액은 2025년 12월 말 기준 1조 5,156억원으로, 총 투자액 7조 4,490억원의 20.3% 수준에 해당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공단 보유 해외자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필수 핵심광물 사업(니켈 암바토비), 재무건전성 기여 사업(동 꼬브레파나마) 등 2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해외자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하였다.

4) 참고로 청산 완료 사업은 13개국 18개 사업으로, 처분손실은 259억원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별 투자액 및 회수액 세부내역]

(단위: 억원)

구분		투자액			회수액			
		지분	대여	계	매각	배당	기타 <sup>1)</sup>	계
진행사업 (7개국, 12개 사업)	보유 (2개)	8,022	26,764	34,786	-	-	4,465	4,465
	매각추진 (2개)	889	456	1,345	73	390	472	935
	종료추진 (8개)	731	370	1,101	58	250	621	929
	소계	9,642	27,590	37,232	131	640	5,558	6,328
종료사업 (18개국, 35개 사업)		37,258	-	37,258	5,324	606	2,897	8,827
총계 (21개국, 47개 사업)		46,900	27,590	74,490	5,455	1,246	8,455	15,156

주: 1) 기타 회수액 : 대부투자 원리금, 마케팅 수수료 등

1. 2025년 12월 말 기준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즉, 공단은 사업 실적 개선이 미진하고 자산 매각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재무상황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자본잠식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25년까지 공단 출자금 전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은 현재 자체적인 채무 상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신규 채권 발행을 통해 단기채무를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공단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1조5)에 따라 정부가 사채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는 손실보전 대상기관이다.

따라서 누적 결손과 부채가 구조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어 부채 규모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 이에 따라 감액손실의 추가 발생과 대규모 우발부채로 이어져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5)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1조(사채의 발행) ① 공단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③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는 2020년 3조 1,715억원의 대규모 손실로 인해 자본잠식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손실은 자회사인 Dana Petroleum Limited 및 ANKOR E&P Holdings Corp.에 대해 추정 유가 하락 및 매장량 변동에 따른 손상차손 1조 1,561억원을 인식하고, 금융부채 지급보증을 제공한 하베스트사에 대해 금융보증부채 1조 2,504억원을 설정한 데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기준 한국석유공사의 총자산은 14조 9,499억원, 총부채는 18조 6,527억원, 자본총계는 △3조 7,028억원이다. 미처리결손금은 15조 177억원으로 자본금 10조 9,709억원을 초과하고 있다.

[2025년 한국석유공사 재무현황]

(단위: 억원)

총자산	총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미처리결손금
149,499	186,527	△37,028	109,709	△150,177

주: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한편, 공사의 사채발행잔액은 2021년 11조 3,032억원에서 2025년 15조 9,400억원으로 4조 6,368억원(41.0%)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자본총계는 지속적인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무구조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2021~2025년 한국석유공사 사채발행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사채잔액	자본총계
2021	113,032	△17,796
2022	123,169	△21,202
2023	129,546	△23,431
2024	156,655	△30,638
2025	159,400	△37,028

주: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며, 사채잔액은 할인 및 할증발행차금이 반영되지 않은 명목가액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이처럼 취약한 재무구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채 발행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한국석유공사법」 제14조6)에 따라 정부가 공사의 사채 및 차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채발행한도를 산정할 때 미처리결손금을 제외하는 구조의 영향도 미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법」 제12조는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정하고 있는데, 미처리결손금을 포함하지 않고 사채발행한도를 산정하기 때문에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에도 사채발행이 가능한 것이다<sup>7)</sup>.

이러한 방식은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사채 발행이 가능하게 하여, 정부 보증을 기반으로 한 금융부채의 확대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향후 감액손실 증가 및 우발부채 전이로 이어져 국가재정에 증대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사채발행한도 산정 시 미처리결손금을 제외하는 방식은 공공기관의 사채발행여력을 과도하게 산정하여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고, 향후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6) 「한국석유공사법」

제14조(상환 보증) 정부는 공사의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7)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경우도 한국석유공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본금과 각종적립금의 합계를 기준항목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일정 배수(2배)를 적용하는 방식을 따르며, 미처리결손금이 기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 우체국예금 예수금 관련 자산(97조원) · 부채(88조원) 및 우체국보험 적립금 관련 자산(67조원) · 부채(60조원)의 국가재무제표 미반영

### 가. 현 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부기업의 예산 및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정부기업특별회계 중 하나이다. 2011년 국가재무제표 작성 이후 중앙관서별로 재무제표가 작성됨에 따라,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재무제표는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무제표 작성 시 통합되어 작성되고 있다.

그런데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재정상태표상 2025년 자산, 부채는 각각 105조 2,031억원, 90조 4,067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14조 7,965억원인 반면, 국가 전체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반영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자산, 부채는 각각 8조 1,914억원 및 2조 5,310억원으로, 순자산 기준으로는 5조 6,604억원만 반영되었다. 즉,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자산 97조 117억원 및 부채 87조 8,757억원은 최종적으로 중앙관서 및 국가 재정상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2025년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결과 △4,655억원(이익)은 전액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의 재정운영표에 반영되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재무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영 (b)	차이 (b-a)
재정상태표	자산 (A)	1,052,031	81,914	△970,117
	부채 (B)	904,067	25,310	△878,757
	순자산 (A-B)	147,965	56,604	△91,361
재정운영표	재정운영결과	△4,655	△4,655	0

자료: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박소희 예산분석관(parksh@assembly.go.kr, 6788-468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9조1)의 위임에 따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1조2)에 의해 설치되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3)에 따라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2011년 국가재무제표 작성 이후 중앙관서별로 재무제표가 작성됨에 따라,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재무제표는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무제표 작성 시 통합되어 작성되고 있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재정상태표상 2025년 자산, 부채는 각각 66조 8,803억원, 59조 7,237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7조 1,566억원인 반면, 국가 전체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무제표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자산, 부채, 순자산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재정운영결과 1,544억원(이익)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의 재정운영표에 반영되지 않았다.<sup>4)</sup>

- 
- 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9조(특별회계) 이 법에 따른 보험의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1조(설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歲入)으로써 그 세출(歲出)에 충당한다.
  - 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우정사업의 회계는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별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사업특별회계: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라 별도의 회계로 운영한다.
  - 4) 세입세출외로 관리되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자산 66조 8,247억원, 부채 59조 6,737억원, 순자산 7조 1,511억원이 주석으로 공시되었다. 재정운영결과 1조 412억원(이익)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의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되었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재무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영 (b)	차이 (b-a)
재정상태표	자산 (A)	668,803	556	△668,247
	부채 (B)	597,237	500	△596,737
	순자산 (A-B)	71,566	55	△71,511
재정운영표	재정운영결과	△1,544	8,868	10,412

자료: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재정운영결과는 국가재정운영표에 전액 반영된 반면,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자산·부채의 대부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가 국가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이는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문단11에 따른 것인데, 해당 규정에 따르면, 우체국예금의 자산, 부채, 순자산과 우체국보험적립금은 세입·세출 외로 관리되는 바 국가재정상태표에 반영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하도록 한 반면에, 우체국예금의 고객예수금 운용 관련 수익·비용은 세입·세출로 관리되므로 이를 국가 재정운영표에 반영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상 우체국예금 관련 재무제표 표시]

<p>11.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표시) 중앙관서 재무정보의 적정공시를 위해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적립금 관련 항목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중앙관서 재무제표에 포함한다.</p> <p>(1) 우체국예금특별회계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포함하는 <b>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세입·세출외로 관리되는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적립금 관련 자산·부채, 순자산 및 수익·비용은 재무제표 본문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주석으로 공시함</b>으로써 적절한 재무정보가 표시되도록 한다.</p> <p>(2) <b>세입·세출로 관리되는 우체국예금의 고객예수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b> 이러한 예수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 예수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기타수익 중 우체국예수금운용수익과 기타비용 중 우체국예수금운용비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재정운영표에 표시한다.</p>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나. 분석의견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고객예수금과 관련한 부채 87.9조원 및 자산 97.0조원과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적립금 관련 부채 59.7조원 및 자산 66.9조원은 국가 재정상태표에 누락되어 있으나, 우체국예금 고객예수금 관련 재정운영결과 4,655억원의 이익은 국가 재정운영표에 반영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① 재정경제부는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은 국가회계실체가 관리책임을 부담할 뿐, 실질소유권은 예금 가입자 및 보험 계약자에게 있어 국가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국가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자산·부채가 과다 표시되어 재무정보 왜곡 가능성이 있는 바, 관련 자산·부채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하였다.**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 재정상태표에 반영되지 않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연도별 고객예수금 부채는 2021년 79조 7,187억원에서 2025년 87조 8,75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해당 부채와 마찬가지로 재정상태표에 미반영된 고객예수금과 관련된 장·단기 금융상품 및 장·단기 투자증권, 기타 미수채권 등의 자산 또한 2021년 86조 6,357억원에서 2025년 97조 11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운용을 통한 재정운영결과인 2021년의 1조 4,510억원, 2025년 4,655억원의 이익 등은 각 연도별 국가재정운영표에 전액 반영되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 연도별 주요 재무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우체국예금 특별회계 (A)	총자산 (a)	923,756	928,470	969,558	1,022,243	1,052,031
	총부채 (b)	804,412	829,521	859,222	904,708	904,067
	순자산 (a-b)	119,344	98,948	110,337	117,534	147,965
	재정운영결과	△14,510	245	△1,524	△651	△4,655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가 재정상태표) (B)	총자산 (a)	57,399	60,057	72,041	75,772	81,914
	총부채 (b)	7,225	10,154	20,654	23,809	25,310
	순자산 (a-b)	50,173	49,903	51,387	51,963	56,604
	재정운영결과	△14,510	245	△1,524	△651	△4,655
차이 (B-A)	총자산 (a)	△866,357	△868,413	△897,517	△946,471	△970,117
	총부채 (b)	△797,187	△819,367	△838,568	△880,899	△878,757
	순자산 (a-b)	△69,171	△49,045	△58,950	△65,571	△91,361
	재정운영결과	0	0	0	0	0

자료: 각 연도별 국가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 재정상태표에 반영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된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연도별 보험적립금 관련 부채는 2021년 57조 9,195억원에서 2025년 59조 6,73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해당 부채와 마찬가지로 재정상태표에 미반영된 보험적립금과 관련된 자산 또한 2021년 63조 4,990억원에서 2025년 66조 8,24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운용을 통한 재정운영결과인 2021년의 7,202억원, 2025년 1,544억원의 이익 등 또한 각 연도별 국가재정운영표에 반영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되었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 연도별 주요 재무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우체국보험 특별회계 (A)	총자산 (a)	637,063	611,523	626,490	645,482	668,803
	총부채 (b)	579,425	565,075	571,313	587,039	597,237
	순자산 (a-b)	57,638	46,448	55,177	58,443	71,566
	재정운영결과	△7,202	△2,395	△1,755	△2,695	△1,544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가 재정상태표) (B)	총자산 (a)	2,073	2,253	1,788	620	556
	총부채 (b)	230	191	179	355	500
	순자산 (a-b)	1,843	2,062	1,608	265	55
	재정운영결과	7,977	8,074	8,059	8,814	8,868
차이 (B-A)	총자산 (a)	△634,990	△609,270	△624,702	△644,862	△668,247
	총부채 (b)	△579,195	△564,884	△571,134	△586,684	△596,737
	순자산 (a-b)	△55,795	△44,386	△53,569	△58,178	△71,511
	재정운영결과	15,179	10,469	9,814	11,509	10,412

자료: 각 연도별 국가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정경제부는 위와 같이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고객예수금 관련 자산·부채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적립금 관련 자산·부채는 재정상태표에 반영하지 않는 반면,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고객예수금 관련 손익은 전액 반영하도록 한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문단11의 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①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은 국가회계실체가 관리책임을 부담할 뿐 실질 소유권은 예금 가입자 및 보험 계약자에게 있어 국가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국가 재무제표에 포함할 경우 자산·부채가 과대표시 되어 국가의 재무정보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나, ②우체국예금 관련 수익·비용은 세입·세출로 관리되어 실제 예수금 운용에 따른 수익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고 설명하였다.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상 문단11의 제정 근거]

①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적립금은 실질적으로 예금가입자와 보험계약자의 자산으로 해당 국가회계실체가 관리책임을 부담할 뿐 실질적인 소유권은 해당 예금가입자와 보험계약자에 있어 국가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산 및 그와 관련된 부채를 우체국예금특별회계와 우체국보험특별회계가 속하는 중앙관서 재무제표에 포함할 경우 타인소유 자산·부채로 인해 해당 중앙관서 재무제표의 자산·부채가 과대표시 되어 중앙관서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성과 등 재무정보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국가 재무제표에도 적절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의 성과가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자산·부채, 순자산, 수익·비용을 재무제표 본문에 포함하지 않고 주석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다만, 세입·세출외로 관리되는 우체국보험적립금 관련 수익·비용은 국가회계실체에 귀속되지 않고 고객에게 배당되며 보험충당부채 전입(보험비용) 등으로 사용되는데 비하여, 세입·세출로 관리되는 우체국예금 관련 수익·비용은 실제 예수금 운용에 따른 수익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중앙관서 재정운영표와 국가 재정운영표에 반영하되, 별도 계정과목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 재정경제부

② 그러나,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의 경우 국가가 이자를 포함한 예금의 지급 및 보험금의 지급을 전액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해당 고객예수금과 보험적립금이 국가회계기준 상 부채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5)

아래의 표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2016~2025년간의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나타내고 있다.

5)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이 경영자율성을 보장받는 시장생산자로서, IMF의 「국가재정통계매뉴얼」(GFSM: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에 따라 일반정부부문이 아닌 금융공공법인부문으로 분류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의 자산·부채를 국가 재정상태표에 포함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하는 현행 회계처리가 국제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GFSM은 국가의 재정활동을 거시경제 및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제도부문별로 재분류하기 위한 통계기준인 반면, 국가재무제표는 국가가 보유하거나 부담하는 자산·부채와 재정운영결과를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표시하는 결산보고서이다. 양자는 작성 목적뿐만 아니라 보고실체의 범위, 거래의 분류 및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등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GFSM상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이 일반정부부문에서 제외되어 금융공공법인부문으로 분류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자산·부채를 국가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에서도 제외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GFSM에 따른 제도부문 분류는 재정통계의 작성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가가 법률상·경제적으로 보유하거나 부담하는 자산·부채의 국가재무제표 인식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국가회계기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2016~2025)]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입	금융사업수입	17,473	15,659	16,012	22,253	21,340	29,041	19,018	34,069	35,233	35,458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원금 회수	1,282	2,282	6,180	6,180	4,897	6,000	7,000	18,624	18,288	12,650
지출	일반회계 전출	243	500	500	50	-	-	-	-	-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585	590	608	676	740	767	769	798	820	85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7,179	6,180	6,180	6,990	8,288	10,367	20,267	19,003	22,420	19,61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재정운영표에 반영되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에는 고객 예탁금을 운용<sup>6)</sup>함으로써 발생한 금융사업수입(2025년 기준 3조 5,458억원) 외에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회수에 따른 수입(2025년 1조 2,65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2016~2019년의 기간 동안 연간 50억원에서 5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sup>7)</sup>하였으며, 국가 기금인

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금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금융기관에 예탁(預託)
2. 재정자금에 예탁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 대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증권의 매입,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각 총액이 예금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는 예금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그 밖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7)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적립금 및 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산의 결과 생긴 적립금 및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액<sup>8)</sup>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탁금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sup>9)</sup>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출연금액은 2016년 585억원에서 2025년 85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sup>10)</sup>에 의한 연도별 예탁 금액 또한 2016년 7,179억원에서 2025년 1조 9,611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우체국예금의 예수금 운용에 따른 수익은 국가 재정운영표와 세입, 세출로 관리되며, 국가의 일반회계 및 공적자금상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전입,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자금운용의 일부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운영결과 이익이 중앙관서 및 국가 재정운영표에 반영되고 있다.

그런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국가는 우체국예금사업을 실제 경영할 뿐만 아니라,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 및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즉, 극단적으로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의 운용을 통해 해당 특별회계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결국은 국가가 우체국예금의 이자를 포함한 예금 지급과 보험금의 지급을 책임져야 한다.

8) IMF때 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하여 우체국예금이 국영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역할 강화와 국가재정 부담완화 등을 위해 2004년부터 2027년까지 예금 수신고의 일정금액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는 것이다. 현재 우체국예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연간 수신고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고 있다.

9)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기금에의 출연)④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매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의 전년도 평균 잔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상 국가의 우체국예금에 대한 지급 책임

제3조(우체국예금·보험사업의 관장)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管掌)한다.**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한도(2026년 7월 현재 1억원) 내에서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예금자보호법」 제2조<sup>11)</sup>에 따라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에는 우체국 예금이 제외되어 있다. 즉, 우체국예금의 경우 이자를 포함한 예금의 지급을 전액 국가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자산은 국가 회계실체가 통제하고 있는 자원을 말하며, 특히 부채의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해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가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우체국예금 예수금과 우체국보험 보험금이 국

11) 「예금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바.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은 제외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자.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가회계기준상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상 자산 및 부채의 정의]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제17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로,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우체국예금과 유사한 주택청약저축 예수금<sup>12)</sup>을 수령하고, 이와 관련한 원금 및 이자 등의 수입, 지출을 아래와 같이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가 저축자에게 지급 의무를 보유하고 있는 2025년 기준 101조 6,126억원인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의 해당 예수금은 우체국예금의 예수금 관련 회계처리와는 다르게 각 연도의 국토교통부 및 국가 재정상태표의 부채로 반영되어 있다.

12)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6. 22., 2016. 1. 19.>

2.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주택법」

제56조(입주자저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

② 제1항에서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주택도시기금의 청약저축 예수금 관련 연도별 수입·지출 내역 및 잔액]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입 · 지출	기타민간예수금 수입	231,384	183,139	149,607	148,181	151,633
	기타민간예수금 이자상환	5,699	12,410	11,018	12,875	11,846
	기타민간예수금 원금상환	102,562	190,370	152,099	126,264	110,391
재정상태표	기타단기민간예수금	962,690	955,459	952,967	974,885	1,016,126

자료: 국토교통부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관련 손익금액이 정부의 세입·세출로 관리되어 재정운영 표에 반영되며, 국가 자금 운용의 일부로 활용되고, 이자를 포함한 예금의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만, 세입세출외로 관리되는 우체국예금의 고객예수금과 관련한 부채(2025년 88조원) 및 자산(2025년 97조원), 우체국보험의 보험적립금과 관련한 부채(2025년 60조원) 및 자산(2025년 67조원)을 국가 재정상태표에 반영하는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에서는 충당부채를 지출 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정의하고, 발생가능성이 확실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발부채<sup>1)</sup>로 주석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5년 국토교통부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향후 재정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최소운영수입보장(BTO), 공공서비스의무(PSO) 보상)에 대하여 결산서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다. 한편 2025년 국토교통부의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주석 상 지급보증, 중요한 계약사항,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발자산, 담보제공자산,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해당없음’으로 공시되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향후 재정부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해 별도의 우발채무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오지은 예산분석관(jieun.oh@assembly.go.kr, 6788-4684)

1)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국가회계실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2.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해당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아니하는 현재의 의무

[2025년 국토교통부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구분	세부내역					
최소운영수입보장 내역(BTO 등)	- 최근 3개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 (단위: 원)					
	회계실체	구분	2025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교특회계	도로계정	187,857,000,000	163,132,000,000	93,026,000,000	
	계		187,857,000,000	163,132,000,000	93,026,000,000	
	* (도로계정) MRG 외 통행료 미인상, 통행료 면제 등으로 인해 협약에서 정한 통행료 보다 낮은 통행료의 징수로 발생한 사업자 수입 손실분에 대한 재정지원금 포함					
	-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 내용					
	회계실체	구분	사업명	완공	보장기간	상세협약내역
	교특회계	도로계정	대구-부산 고속도로	2006.01.	20년	- 협약수입의 77% 미달분 (사업권가치에 포함)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	2007.12.	20년	- 협약수입의 90% 미달분 (사업권가치에 포함)
			부산-울산 고속도로	2008.12.	30년	- 타인자본원리금 상환보장(30년간)
* (대구-부산, 수도권제1순환) 각각 '20.12, '18.3 사업 재구조화로 재정지원은 신규투자자가 부담						
** (MRG 기간 종료) 용인-서울('19), 인천공항('20), 천안-논산('22), 인천대교('24), 서울-춘천('24)						
기타 우발부채에 대한 내용, 자원의 유출에 따른 재무적 영향	가. PSO 공익서비스 비용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및 33조에 따라 철도운영자의 공공서비스(공공목적의 운임감면, 벽지노선의 운영 등) 제공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우발상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3개년 간 공공서비스의무 보상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지급액				
2025		362,277,000,000				
2024		361,240,000,000				
2023		397,896,000,000				

자료: 소관부처별 결산보고서

## 나. 분석의견

국토교통부는 향후 재정부담 발생 가능성이 있는 GTX-A 손실보전금 지급의무에 대한 우발채무 공시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GTX-A 노선은 운정중앙역(경기도 파주시)에서 동탄역(경기도 화성시)을 연결하는(11개역, 82.3km)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다. 총사업비는 5조 587억 원으로 재정구간인 '삼성역~동탄역' 구간과 민자구간인 '운정중앙역~삼성역 북단' 구간으로 구분되며, 민자구간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GTX-A 삼성역 구간은 서울시의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개통이 지연되었으며, 삼성역 개통지연의 장기화는 최초 실시협약 당시 예상되었던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2024년 국토교통부는 민자사업자((주)SG레일)와 삼성역 개통지연에 따른 손실보전 규정을 보완<sup>2)</sup>하여 실시협약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실시협약에 따라 정부는 민자구간(운정중앙역~삼성역 북단)의 개통 시점부터 삼성역 개통시까지 (주)SG레일 측에 삼성역 미개통에 따른 운영이익 감소분을 지급하여야 한다.<sup>3)</sup>

2025년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추정 손실운임수입 감소분은 총 1,637억 원이며, 2025년 중 717억 원(43.8%)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손실보전금은 삼성역 완전 개통 이후 실제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확정될 예정으로, 현재 추정 손실액과 실제 지급액 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 삼성~동탄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보전 규정은 최초 실시협약(2018.12.)에도 있었으나 삼성역 개통지연 장기화가 확실시되면서 실시협약 변경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다.

3)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pp.141 참고  
2024년 국토교통부는 민자사업자((주)SG레일)와 삼성역 개통지연에 따른 손실보전 규정을 보완하여 실시협약을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실시협약에 따라 정부는 민자구간(운정중앙역~삼성역 북단)의 개통 시점부터 삼성역 개통시까지 (주)SG레일 측에 삼성역 미개통에 따른 운영이익 감소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GTX-A 삼성역 개통 지연 관련 손실보전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추정 순운영이익 감소분 (실시협약 상 순운영이익 - 실제 순운영이익)	44,837	39,399	40,257	39,217	163,710
실제 보전금 지급액 (예산 편성액 반영)	14,487	-	40,257	17,017	71,761
최종 보전금	삼성역 완전개통 이후 산정 가능 <sup>1)</sup>				

주: 1) 순운영이익 감소분 확정액은 삼성역 완전개통 이후('28~)에 실제 이용실적을 바탕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재산정하여 확정할 계획임. 실시협약에 따라 순운영이익 감소분 보전금액 확정액과 실제 순운영이익의 합산 금액은 실시협약 상 추정 순운영이익을 초과할 수 없음.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BTO), 공공서비스의무(PSO) 보상 등 향후 재정부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결산서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다. 이들 항목은 향후 지급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거나 지급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발채무 관련 정보로 제공되고 있다.

GTX-A 손실보전금 역시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라 정부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반영하여 추정 손실액을 산정하고 2025년부터 실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최종 손실보전금은 삼성역 완전 개통 이후 실제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확정될 예정으로, 향후 지급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GTX-A 손실보전금은 향후 재정부담 발생 가능성, 지급규모의 불확실성 등에서 현재 국토교통부가 우발채무로 공시하고 있는 항목들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급의무는 우발채무 관련 주석에서 별도로 확인되지 않고 있어, 향후 재정부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공시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우발채무 공시 항목과 GTX-A 손실보전금 비교]

구분	BTO 최소운영수입보장	PSO 보상	GTX-A 손실보전금
향후 지급 가능성	O	O	O
지급규모 확정 여부	X	X	X
추정 가능 여부	O	X	O
결산 주석 공시	O	O	X

자료: 부처별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회계기준에 따르면 우발채무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 잠재적 의무이거나 현재 의무가 존재하더라도 지급 가능성 또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워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은 항목을 의미한다.

GTX-A 손실보전금은 삼성역 개통 지연이라는 과거 사건이 이미 발생하였으며, 실시협약에 따라 정부의 지급의무가 존재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분기별 추정 손실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최종 손실보전금은 삼성역 완전 개통 이후 실제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확정될 예정으로 지급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분기별 추정 손실액을 산정하여 일부 금액을 이미 지급하고 있어, 향후 지급의무가 전혀 불확실한 일반적인 우발사항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GTX-A 손실보전금의 우발채무 해당 여부 검토]

판단요소		GTX-A 현황
과거사건으로 발생한 잠재적 의무	과거 사건 발생	삼성역 개통 지연
	잠재적 의무	실시협약에 명시되어 있음
현재 의무가 존재하더라도 지급 가능성 또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워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은 항목	현재 의무 존재	상동
	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	변동가능성 있어 부채로 인식하기 어려움

자료: 부처별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GTX-A 손실보전금은 이미 지급이 개시되었음에도 최종 지급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향후 실제 이용수요 및 삼성역 개통 시점에 따라 재정부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2025년 기준 추정 손실액 1,637억원 중 717억원만 지급된 상태로 향후 상당 규모의 추가 지급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동 지급의무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공시 적정성을 검토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재정부담이 국가결산서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회계법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에 따라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현금주의 결산), 재무제표(발생주의 결산), 성과보고서로 구성된다. 결산개요는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국가결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부처·회계별 세입세출) 및 기금의 집행결과(기금별 수입지출)를 종합하여 작성한다.

국가재정의 현금흐름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현금흐름표 항목을 결산보고서 재무제표에 신설하는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3월 26일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회계법」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에 현금흐름표가 새로 추가되었으며, 관련 규정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재무제표)에도 현금흐름표가 추가되었다. 현금흐름표의 작성은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되었다.<sup>1)</sup>

재무제표는 국가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용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25회계연도부터 현금흐름표가 신규로 도입되었으며, 부속서류로 제공되던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주석으로 통합되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상 성과목표와 그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한다.

국가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는 총지출의 자산취득 규모 대비 재정상태표상 고정자산 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총지출상 자산취득액은 87조원이거나 재정상태표상 고정자산 증가액은 40조원으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세입·세출결산(수입·지출결산)은 회계·기금별로 분산되어 있고, 목별로도 세분화(예: 410목 건설보상비, 420목 건설비, 430목 유형자산)되어 있어 현금흐름을 하나의 계정(예: 건

박소희 예산분석관(parksh@assembly.go.kr, 6788-4683)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재무제표 결산개요 개선방안(주요 5개국 사례를 중심으로)」, 2025.12., pp.23~24

물 취득)으로 파악이 곤란하였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도 ‘자본지출-고정자산 취득’ 항목을 통해 고정자산을 집계하고 있으나 세부 자산별로 정확한 분석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현금흐름표 작성 시 전체 회계·기금의 현금흐름을 계정별로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다.<sup>2)</sup>

현금흐름표는 운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된다. 운영활동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을 제외한 활동으로 정의되며, 대표적으로 국세수익에 따른 현금유입, 인건비에 따른 현금유출 등이 있다. 투자활동은 국가가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는 자산의 취득, 처분 등에 대한 현금흐름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활동의 예시로는 금융상품, 투자증권, 유형자산 등의 처분(현금유입) 및 취득(현금유출)이 있다. 재무활동은 국가지출재원 마련을 위한 부채 발행 및 상환 활동에 대한 현금흐름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정보이용자들은 정부 지출 중 조세수입 또는 세외수입 등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국채 발행 등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현금흐름표는 운영활동 작성 방식에 따라 직접법 및 간접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접법 방식의 경우 운영활동 각각에 대한 현금흐름을 기재하는 반면, 간접법 방식의 경우 손익의 순금액에서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수익, 비용 등을 제외하여 운영활동 순현금흐름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국가회계는 직접법 방식이 활동 내역을 명시적으로 공시한다는 점에서 간접법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직접법 방식을 채택하였다.<sup>3)</sup>

2025회계연도 운영활동은 유입 601.2조원, 유출 631.6조원으로 현금 30.4조원이 순유출되었으며, 투자활동은 유입 437.4조원, 유출 554.6조원으로 현금 117.2조원이 순유출되었다. 재무활동은 유입 256.0조원, 유출 110.1조원으로 현금 145.9조원이 순유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금은 1.8조원 감소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2025회계연도는 재무활동, 즉 국채의 발행 등 재원을 145.9조원 조달하여 투자활동에 117.2조원, 운영활동에 30.4조원을 활용하였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현금흐름표 신설 쟁점보고서 I」, 2022.12., p.36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재무제표 결산개요 개선방안(주요 5개국 사례를 중심으로)」, 2025.12., pp.23~24

[2025년 현금흐름표]

(단위: 조원)

구분	2025
<b>I.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a)</b>	<b>△30.4</b>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	601.2
(1) 국세수입	373.9
(2) 사회보험수입	96.0
(3) 부담금·제재금수입	24.5
(4) 이자수입	26.7
(5) 기타유입	80.1
(6) 국고수입	-
2.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	631.6
(1) 보조금 지급	133.1
(2) 출연금 지급	57.4
(3) 지방교부금 지급	141.0
(4) 사회보험지출	82.0
(5) 인건비 지급	50.8
(6) 이자지급	43.1
(7) 기타유출	124.2
(8) 국고이전지출	-
<b>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b>	<b>△117.2</b>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	437.4
(1) 금융상품, 투자증권 처분	398.6
(2) 대여금 회수	29.7
(3)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처분	0.7
(4) 무형자산 처분	0.0
(5) 기타유입	8.4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	554.6
(1) 금융상품, 투자증권 취득	484.3
(2) 대여금 지급	34.0
(3)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취득	31.3
(4) 무형자산 취득	0.4
(5) 기타유출	4.6

(단위: 조원)

구분	2025
<b>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b>	<b>145.9</b>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	256.0
(1) 국공채 발행	231.7
(2) 차입금 차입	24.2
(3) 기타유입	0.1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	110.1
(1) 국공채 상환	88.9
(2) 차입금 상환	20.1
(3) 기타유출	1.2
Ⅳ. 현금의 증감(a+b+c)	△1.8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6.5.

한편, 현금흐름표 도입 등을 위해 2024년 5월부터 1년 8개월간 추진된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시스템 구축사업은 93.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국가결산보고서 개편시스템 구축사업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8개월 간 추진되었으며,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안정화 기간을 거쳤다. 관련 예산은 2024년 66억 6,700만원, 2025년 26억 6,700만원으로 총 93억 3,400만원이 소요되었다.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집행액	사업자
시스템 구축사업	8,318	아이티아이즈·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
PMO	399	한국정보기술단
감리	490	씨에이에스
부대비	37	-
개인정보 영향평가	90	한국전산감리원
합계	9,334	-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첫째, 현금흐름표와 예산현금주의 방식의 세입세출결산 등과 상당한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정경제부와 각 부처는 일치하지 않는 사유와 그 세부 내역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

### (1) 결산보고서상 세입세출(수납지출)과 현금흐름 유입유출 불일치에 따른 차이내역 공시 필요

[주요 부처의 세입, 수입 수납액과 현금흐름표의 현금유입 합계액 차이(2025)]

(단위: 조원)

구분	세입 수납액 (a)	수입 수납액 (b)	수납액 합계 (c=a+b)	현금흐름표 현금유입 합계(A)	차이금액 (A-c)
국가통합	597.9	2,254.7	2,852.6	1,294.6	△1,558.0
고용노동부	0.1	68.4	68.5	54.2	△1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4	5.1	17.4	24.7	7.3
관세청	0.1	0.0	0.1	0.7	0.6
교육부	19.7	12.4	32.2	128.3	96.1
국세청	0.3	0.0	0.3	2.3	2.0
국토교통부	14.4	101.6	116.0	138.4	22.4
기획재정부	499.7	853.2	1,352.9	484.0	△868.9
기후에너지환경부	9.3	22.2	31.5	38.1	6.6
농림축산식품부	20.7	15.3	36.0	42.0	6.0
문화체육관광부	0.3	5.9	6.2	9.7	3.5
보건복지부	1.2	1,033.7	1,035.0	481.6	△553.4
산업통상부	6.6	5.1	11.6	20.8	9.2
외교부	0.4	0.1	0.5	4.6	4.1
중소벤처기업부	0.2	35.5	35.7	39.6	3.9
해양수산부	2.1	1.5	3.6	9.4	5.8
행정안전부	0.1	0.0	0.1	86.2	86.1

주: 현금흐름표 현금유입 합계는 운영, 투자, 재무활동의 유입 합계액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6.5. 및 각 부처 2025년 결산보고서

세입세출결산의 세입 수납액과 기금 수입지출결산의 수입 수납액은 회계연도 중 국가가 실제로 수납한 현금 규모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결산정보이다. 현금흐름표의 현금유입액 역시 국가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유입을 운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양 결산자료는 상호 연계하여 검증될 필요가 있다.

국가재무제표의 2025년 세입과 수입을 합한 수납액 합계는 2,852.6조원이며, 현금흐름표의 현금유입은 1,294.6조원으로 현금흐름표의 현금 유입이 1,558.0조원 적다. 차이금액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나타났으며, 기획재정부는 현금흐름표의 현금 유입이 868.9조원, 보건복지부는 553.4조원 낮게 나타났다.

2025년 국가재무제표의 지출액 합계는 2,845.7조원이었으며, 현금흐름표의 현금 유출 합계액은 1,296.4조원으로 1,549.3조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세입, 수입과 동일하게 주로 기획재정부(406.2조원), 보건복지부(624.5조원)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주요 부처의 세출(지출) 지출액과 현금흐름표의 현금유출 합계액 차이(2025)]

(단위: 조원)

구분	세출 지출액 (a)	지출액 (b)	지출액 합계 (c=a+b)	현금흐름표 현금유출 합계(A)	차이금액 (A-c)
국가통합	591.0	2,254.7	2,845.7	1,296.4	△1,549.3
고용노동부	6.4	68.4	74.8	53.9	△2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6	5.1	28.6	25.2	△3.4
관세청	0.7	0.0	0.7	0.7	0.0
교육부	116.8	12.4	129.2	128.4	△0.8
국세청	2.0	0.0	2.0	2.3	0.3
국토교통부	38.9	101.6	140.4	138.4	△2.0
기획재정부	40.0	853.2	893.2	487.0	△406.2
기후에너지환경부	21.2	22.2	43.5	38.4	△5.1
농림축산식품부	26.1	15.3	41.4	42.2	0.8
문화체육관광부	4.0	5.9	9.9	9.8	△0.1
보건복지부	72.8	1,033.7	1,106.5	482.0	△624.5
산업통상부	12.0	5.1	17.1	20.7	3.6
외교부	4.1	0.1	4.2	4.6	0.4
중소벤처기업부	9.6	35.5	45.2	39.5	△5.7
해양수산부	7.5	1.5	9.0	9.1	0.1
행정안전부	86.1	0.0	86.1	86.2	0.1

주: 현금흐름표 현금유출 합계는 운영, 투자, 재무활동의 유출 합계액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6.5. 및 각 부처 2025년 결산보고서

다만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수입지출결산과 현금흐름표는 작성 목적과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각각의 수납지출액 합계와 현금흐름표의 현금유입유출액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세입·수입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금의 수납,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전년도 이월금 및 세계잉여금 관련 금액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현금흐름표 작성 과정에서는 정부내부거래 제거, 비현금거래 제외, 총액·순액 표시의 차이 및 현금성자산 범위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세출 및 기금 지출에는 회계·기금 간 전출입과 예탁·예수 등 국가 내부의 자금이동이 포함될 수 있으나, 국가 단위 현금흐름표에서는 정부내부거래로 제거될 수 있다. 또한 세출·지출액 중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유출로 보기 어려운 거래가 제외되거나, 반대로 전년도에 비용 또는 자산으로 인식되었으나 당기에 지급된 미지급금의 상환액 등은 당기 세출·지출액과의 귀속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두 결산자료 간 불일치를 별도의 설명 없이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세입세출결산과 기금 수입지출결산의 수납액은 현금흐름표상 현금유입유출액의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양 자료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차이가 회계기준과 작성범위의 차이에 따른 정상적인 조정인지, 시스템상 계정과목 대사나 자료 집계 오류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현금흐름표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수입지출결산의 어떠한 항목을 기초로 작성되었는지, 각 수납액이 운영·투자·재무활동 중 어느 항목으로 분류되었는지, 현금흐름표 작성 과정에서 제외되거나 추가된 금액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정보이용자가 현금흐름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불일치는 국가결산보고서 내부의 정합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회의 결산심사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회가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통해 파악한 국가의 현금수납지출 규모와 재무제표상 현금유입유출 규모가 상이함에도 차이 원인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재정수입의 실질적인 규모와 성격, 자금의 이동 경로 및 국가의 현금창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세입세출결산과 기금 수입지출결산의 수납지출액 합계에서 출발하여 현금흐름표의 현금유입유출액 합계에 이르는 조정표를 국가결산보고서

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조정표에는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제거액, 비현금거래 제외액, 현금성자산 범위 차이, 총액·순액 표시 차이, 전년도 이월금 등 결산체계상 차이와 기타 조정사항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각 조정항목의 산출근거와 관련 계정과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 명세를 제공하고,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을 초과하는 중요 차이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을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각 중앙관서도 소관 세입·수입 수납액과 현금흐름표의 현금유입액을 상호 대사하고, 불일치 내역을 결산책임자가 검토·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세입세출결산, 기금 수입지출결산 및 현금흐름표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가 현금흐름표의 검증가능성·투명성 및 정보유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2) 재정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 금액 불일치로 인한 현금흐름표의 신뢰성 부족 문제 발생

### ① 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증감명세서상 취득금액과 현금흐름표상 취득금액 불일치

현금흐름표에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액이 1조 원으로 표시되었다면, 동일한 회계범위와 자산범위를 기준으로 작성된 유형자산증감명세서의 당기 취득액은 원칙적으로 1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현금흐름표상 유형자산 취득액은 회계연도 중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현금을 의미한다. 반면 유형자산증감명세서의 취득액은 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회계연도에 취득하여 자산으로 인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나타낸다.

따라서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현금흐름표의 취득 현금유출액과 유형자산증감명세서의 취득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기에 유형자산을 취득하였으나 대금의 일부를 아직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나 자산 취득 전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산증감명세서상 취득원가와 현금흐름표의 취득액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취득액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명세서상 취득금액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 중 취득원가가 1조 2,000억원인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이 중 1조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0억원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면, 유

형자산증감명세서의 취득액은 1조 2,000억원이고 현금흐름표의 취득 현금유출액은 1조원이 된다. 즉, 동일한 당기 취득거래를 전제로 하면 현금흐름표상 현금지급액은 유형자산증감명세서상 취득액을 초과하기 어렵다.

또한 무상취득, 관리전환, 현물출자 및 교환 등 비현금거래로 유형자산이 증가한 경우에는 유형자산증감명세서의 취득 또는 증가액에는 반영될 수 있으나 현금흐름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현금 취득까지 고려하면 유형자산증감명세서의 취득·증가액은 현금흐름표상 취득 현금유출액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재무제표의 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증감명세서상 취득 금액은 10.4조원인 반면 현금흐름표의 취득 금액은 31.3조원으로 나타나 20.9조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0.8조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0.4조원, 해양수산부는 1.4조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증감명세서상 취득금액과 현금흐름표 관련 금액 차이]  
(단위: 조원)

구분	명세서상 취득금액(a)	현금흐름표 취득금액(b)	차이금액(b-a)
국가통합	10.4	31.3	20.9
국토교통부	3.3	4.1	0.8
기후에너지환경부	0.7	1.1	0.4
해양수산부	0.7	2.1	1.4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6.5. 및 각 부처 2025년 결산보고서

다만 현금흐름표상 유형자산 취득액이 유형자산증감명세서의 당기 취득액보다 큰 경우가 모두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전기에 취득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자산대금을 당기에 지급한 경우에는 당기 현금흐름표에 현금유출이 발생하지만 당기 유형자산증감명세서에는 취득액으로 다시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재정경제부는 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증감명세서의 취득액에서 현금흐름표상 취득 현금유출액에 이르는 조정명세를 제공하는 등 유형자산 취득거래가 현금흐름표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② 재정상태표 주식상 차입금, 일반용자금 등 증감내역과 현금흐름표의 관련 (현금유입-현금유출) 내역의 불일치

재정상태표 주식에 제시되는 정부출자금, 일반용자금, 정부내예탁금, 차입금의 증감내역은 해당 자산·부채의 기초잔액이 회계연도 중 어떠한 원인으로 변동하여 기말잔액에 이르렀는지를 나타낸다. 반면 현금흐름표는 차입금의 조달·상환, 용자금의 지급·회수 등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현금유입·유출을 보여준다. 따라서 두 결산자료는 동일한 거래를 각각 재정상태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관점에서 표시한 것이므로, 비현금 변동 등 합리적인 조정사항을 제외하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두 항목은 기초잔액과 기말잔액 사이의 변동이 현금흐름표상 관련 현금거래와 직접 연결되는 대표적인 계정이다. 따라서 양 자료를 대사하면 현금흐름표에 차입·상환, 용자·회수 거래가 누락되거나 중복 반영되었는지, 현금거래가 잘못된 활동이나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2025년 국가재무제표의 차입금을 살펴보면, 명세서상 증감액은 △423억원이나 현금흐름표의 관련 계정 차이금액은 4조 781억원이 발생하여, 차이금액은 4조 1,204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의 차입금에서도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명세서상 증감액과 일치하지 않다.<sup>4)</sup>

또한 기획재정부의 정부출자금에서는 명세서와 현금흐름표의 증감액이 6,326억원, 정부내예탁금에서는 1조 4,857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

4)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경우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4조원의 차입금을 이전하여 발생한 차이이다.

[정부출자금, 일반용자금, 정부내예탁금, 차입금 증감내역과 현금흐름표 관련 금액 차이]

(단위: 억원)

구분	계정과목	명세서상 증감액(a)	현금흐름표 유입-유출(b)	차이금액
국가통합	차입금	△423	40,781	41,204
교육부	차입금	657	158	△499
국토교통부	차입금	6,605	47,847	41,242
기획재정부	정부출자금	10,282	△3,956	6,326
	일반용자금	27	△152	△125
	정부내예탁금	△15,791	△30,647	△14,857
	차입금	△14,664	30,667	45,331
기후에너지환경부	차입금	55,579	7,474	△48,105
농림축산식품부	일반용자금	△167	111	△56
산업통상부	일반용자금	△57	15	△42
	차입금	△32,170	15,935	48,105
외교부	차입금	△1,107	0	1,107

주: 차이금액은 계정의 성격에 따라 (b-a) 또는 (b+a)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6.5. 및 각 부처 2025년 결산보고서

재정상태표 주석의 증감액과 현금흐름표상 관련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그 차이의 원인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결산자료가 실제 거래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렵다. 특히 차이가 비현금 평가손익이나 계정대체에서 발생한 것인지, 현금흐름표의 계정 대사·집계 오류 또는 담당자의 수기조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어 국가결산보고서의 내부 정합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재정상태표 주석의 기초·기말 증감액에서 현금흐름표상 관련 증감에 이르는 조정명세 등을 작성·공시할 필요가 있다. 조정명세에는 현금거래와 비현금거래를 구분하고, 대손·손상·평가, 현물거래, 채권면제, 환율변동, 계정재분류 및 내부거래 제거 등 주요 차이 발생 사유를 항목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차입금, 일반용자금 등의 증감이 현금흐름표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재무제표 간 정합성과 현금흐름표의 검증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부 부처의 현금주의 사업 집행액과 현금흐름표의 현금흐름 유출액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1) 대법원 사례

대법원의 사법업무 전산화<sup>5)</sup> 사업은 사법업무시스템 기능개선, 정보보호컨설팅 등 사법정보화 기반 구축, 사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개선·관리하는 사업이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의 예산액은 727억 4,000만원, 예산현액은 714억 4,800만원으로 이중 539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147억 5,0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7억 4,1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액은 828억 4,600만원이다.

[2025회계연도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사법업무전산화	72,740	72,740	937	△2,229	71,448	53,957	14,750	2,741	82,846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법원

또한,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sup>6)</sup> 사업은 종전 전자소송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려는 것으로, 재판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한편 최신 기술을 적용한 법원 IT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2025년 예산액은 14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8억 4,8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3억 2,600만원이며, 대법원은 이 중 41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1,800만원을 이월하였고, 21억 600만원은 불용하였다.

5) 코드: 일반회계 1337-302

6) 코드: 일반회계 1331-303

[2025회계연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차세대전자 소송시스템	23,000	23,000	5,848	-	28,848	24,151	1,916	2,781	30,177
차세대전자 소송시스템 구축	1,478	1,478	5,848	-	7,326	4,102	1,118	2,106	-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법원

그런데, 대법원의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 및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액 중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신규 개발·구축에 직접 소요되어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은, 시스템이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는 건설중인무형자산으로,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다만, 하드웨어 구입비는 일반유형자산으로, 시스템 유지관리비·운영비·교육비 등 자산가치를 증가시키지 않는 지출은 당기 비용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 결산보고서상 현금흐름표의 무형자산 취득액은 60억원인 데 반해, 두 사업의 집행액은 581억원으로 521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담당자 인터뷰 결과 두 사업의 집행액은 당기비용과 무형자산으로 구분되어야 하나, 구분되지 않고 전액 투자활동이 아닌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 대법원의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과대계상,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과소계상되어 있다.

[사업 집행액과 현금흐름표상 무형자산 취득금액 차이]

(단위: 억원)

구분	사업 집행액(a)	현금흐름표 무형자산 취득금액(b)	차이금액(b-a)
사법업무 전산화	540	60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41		
합계	581	60	△521

자료: 대법원 2025년 결산보고서

다만, 두 사업 집행액 581억원과 현금흐름표상 무형자산 취득액 60억원의 차액인 521억원 전액을 무형자산 취득 누락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해당 차액에는 유지관리비·운영비·교육비 등 당기 비용과 서버·전산장비 등 유형자산 취득액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은 사업 집행액의 세부내역을 지출 성격별로 재분류하여 실제 무형자산 취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2) 산림청 사례

산림청의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sup>7)</sup>은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산불 조기진화 및 산림재난 모니터링 등 효율적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헬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531억 4,800만원 중 878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653억 4,6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25회계연도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산림헬기 도입·운영	93,858	213,448	5,407	14,738 △8,977	224,616	157,614	65,583	419	193,826
산림헬기 도입·교체	52,500	149,300	4,502	△654	153,148	87,802	65,346	-	158,40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산림청

산림헬기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일반유형자산에 해당하며,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재정상태표상 ‘집기·비품·차량운반구’에 포함되고 세부 계정과목상 ‘선박및항공기’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산림청 현금흐름표세부내역상 선박및항공기와 건설중인선박및항공기 취득액은 26억원인 데 반해,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의 집행액은 878억원으로 852

7) 코드: 일반회계 1936-300의 내역사업

역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산림헬기 취득과 관련된 현금지출이 선박및항공기 취득액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다른 세부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사업 집행액과 현금흐름세부내역상 선박및항공기 취득금액 차이]

(단위: 억원)

구분	사업 집행액(a)	현금흐름세부내역상 선박및항공기 취득금액(b)	차이금액(b-a)
산림헬기 도입·교체	878	26	△852

자료: 산림청 2025년 결산보고서

따라서 산림청은 산림헬기 교체 사업의 집행액을 자산 취득성 지출과 경상적 지출로 구분하고, 자산 취득성 지출이 선박및항공기, 건설증인선박및항공기 등의 자산계정과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 현금유출액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대조·검증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부 부처의 ‘기타의기타유입·유출’이 운영활동 현금흐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금액적 중요성이 큰 항목은 적절한 세부 과목으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현금흐름표를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 유입·유출 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정의하고, 운영활동 현금흐름의 경우 현금유입은 원천별로, 현금유출은 용도별로 각각 분류하는 직접법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현금이 어떠한 원천에서 유입되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정보이용자가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동 규칙은 재무제표의 과목과 회계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표시하고, 중요한 과목과 금액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25회계연도 국가 및 일부 중앙관서의 현금흐름표를 살펴보면, 운영활동 현금흐름 중 구체적인 유입 원천이나 지출 용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기타의기타유입’과 ‘기타의기타유출’에 상당한 금액이 계상되어 있다.

국가통합 기준 기타의기타유입은 26조 1,638억원으로 운영활동 현금유입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의기타유출은 47조 1,238억원으로 운영활동 현금유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관서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타의기타유입 비중이 27.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2%, 기획재정부가 12.3%로 나타났다. 기타의기타유출 비중은 중소벤처기업부 13.9%, 고용노동부 1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8% 등으로, 일부 중앙관서는 운영활동 현금유입 또는 유출의 10% 이상이 구체적인 성격을 알기 어려운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특히 ‘기타의기타’는 기존의 세부 분류에도 포함되지 않은 잔여 항목이라는 점에서, 동 항목의 비중이 과도한 경우 현금흐름표가 현금유입을 원천별로, 현금유출을 용도별로 구분하도록 한 직접법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현금흐름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 중 재무제표의 이해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하도록 한 국가회계기준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재정경제부와 각 중앙관서는 기타의기타유입·유출 구성 내역을 점검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금액적 중요성이 큰 거래는 별도의 표준 계정과목으로 세분화하고, 현금흐름표에 적절한 세부 과목으로 재분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 원천 계정과 현금흐름표 과목 간 대사 기준을 정비하고, 기타 항목의 비중이 과도한 중앙관서에 대해서는 결산 과정에서 재분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현금흐름표의 구분 표시와 정보 유용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부처의 기타의기타유입 및 유출이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및 유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억원, %)

구분	기타의 기타유입 (a)	운영활동 으로 인한 현금유입(b)	기타의 기타유입 비중(a/b)	기타의 기타유출 (c)	운영활동 으로 인한 현금유출(d)	기타의 기타유출 비중(c/d)
국가통합	261,638	6,011,860	4.4	471,238	6,315,861	7.5
고용노동부	10,345	375,610	2.8	48,698	373,617	1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6,402	219,293	21.2	25,698	218,233	11.8
기획재정부	98,315	802,188	12.3	7,259	1,909,543	0.4
농림축산식품부	97,743	354,739	27.6	17,020	351,499	4.8
중소벤처기업부	11,446	126,910	9.0	18,396	132,658	13.9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6.5. 및 각 부처 2025년 결산보고서

넷째, 현금흐름표 세부내역 중 ‘기타조정’ 사항은 담당자의 임의 수정이 가능하여 외부 검증이 어렵고 인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금흐름표를 신뢰하기 어렵다.

국가결산보고서 개편시스템의 ‘현금흐름표 세부내역’ 화면에서는 현금흐름표를 예산<sup>8)</sup>, 기타조정<sup>9)</sup>, 미결계정<sup>10)</sup>, 최종현금거래발생내역<sup>11)</sup>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이 중 ‘기타조정’에는 국고수입, 국고이전지출 및 시스템에서 자동 산출되지 않아 결산 담당자가 별도로 입력·수정한 내역 등이 반영된다. 그러나 기타조정은 다른 항목에 비해 산출 근거와 구성 내역을 시스템 화면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결산 담당자의 수기 입력 또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금흐름표의 검증가능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회계연도 현금흐름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토지처분의 경우 예산에 따른 현금거래액은 14억 3,054만 9,250원이었으나 기타조정 28억 4,697만 9,250원과 미결계정 4억 877만 6,450원이 추가되어 최종현금거래발생액이 46억 8,630만 4,950원으로 산출되었다. 토지처분의 기타조정액은 최종현금거래발생액의 약 60.8%에 해당한다.

---

8) 총계정원장 중 비현금성거래를 제외한 모든 내역

9) 국고수입, 국고이전지출 및 시스템 담당자 임의 수정 내역

10) 미수금, 미지급금, 선수금, 선급금 등 발생주의로 인한 계정

11) 예산거래+기타조정사항+미결계정+기타 등을 반영한 최종 현금거래발생금액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현금흐름표 세부내역 중 일부]

(단위: 원)

계정과목	예산(A)	기타조정 (B)	미결제정 (C)	생략 (D)	최종현금 거래발생 (A+B+C+D)
기계장치처분	44,894,700	1,668,520	-	-	46,563,220
건물처분	448,900	△2,000	-	-	446,900
집기비품차량운반구처분	1,375,600	△684	-	-	1,374,916
토지처분	1,430,549,250	2,846,979,250	408,776,450	-	4,686,304,950
운영비지급	40,503,928,127	△850,000	△4,661,041,000	-	35,842,037,127
집기비품차량운반구처분	51,773,720	18,180,820	-	-	69,954,540
기타일반유형자산처분	1,060,149,110	119,880	-	-	1,060,268,990
집기비품차량운반구처분	66,877,800	1,140,600	-	-	68,018,4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현행 시스템에서는 기타조정액이 어떠한 원천자료와 산출식에 따라 발생하였는지, 해당 금액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 산출된 것인지 담당자가 수기로 입력한 것인지, 최초 입력 이후 누가·언제·어떠한 사유로 수정하였는지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동일한 기타조정 항목에 시스템 자동 조정액과 담당자의 수기 조정액이 함께 포함된다면, 시스템 산출 오류와 담당자의 입력 오류를 구분하여 검증하기도 곤란하다.

또한, 기타조정의 규모가 큰 계정과목에 대한 별도의 중요성 기준과 집중점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현금흐름표의 중요한 왜곡을 적시에 발견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농림축산식품부의 토지처분과 같이 기타조정이 최종현금거래발생액의 절반을 초과하거나 예산거래액보다 큰 경우에는 조정의 발생 원인과 적정성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타조정의 절대금액이나 최종현금거래발생액 대비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 증빙 제출 또는 상급자의 승인을 요구하는 기준이 없다면, 중요한 조정사항과 소액 조정사항이 동일한 절차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기타조정의 세부 유형과 허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정 건별로 원천자료, 산출식, 조정 사유 및 관련 계정과목을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스템 자동 산출액과 담당자의 수기 입력·수정액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수기 조정 시에는 증빙자료 첨부와 조정 사유 입력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입력자와 승인자의 권한을 분리하고, 최초 입력값과 수정 전후 금액, 수정자, 수정일시 및 승인 내역이 감사 추적 기록으로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타조정의 절대금액 또는 최종현금거래발생액 대비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고가 표시되도록 하고, 해당 조정에 대해서는 중앙관서 결산 책임자 또는 재정경제부의 추가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 중요성에 따른 검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가결산보고서 개편시스템 구축사업의 안정화 작업이 각 부처의 결산 기간(2026년 1~3월)과 중복되어 시행됨에 따라, 결산과 동시에 시스템 오류 및 반복적인 재시작 현상이 발생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 담보가 어렵다.**

시스템 구축 후에는 실제 운영환경에 반영하여 시스템 오류, 시스템 간 연계 문제 등을 사전에 보완하는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결산 및 통합결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동 안정화 작업이 완료되었어야 하나, 2026년 1~3월 부처 결산과 맞물려 안정화 작업이 이루어져 결산시스템 사용이 원활하지 않고 결산 작업이 지연되었다.

또한 시범결산 시 전 부처의 2024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부처의 결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오류 및 구조적 문제점을 미리 파악·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으나 실제로는 단일 부처(해양수산부)에 대해서만 2024년 시범결산을 수행하였다. 시범결산 시 해양수산부보다 다양한 거래가 발생하고 R&D 등을 망라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나 농림축산식품부가 보다 적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각각의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오류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6년 결산 시점에 예상치 못한 오류와 반복적인 재시작 현상이 발생하였다.

실제로 ITSM상 사용자 문의건수는 2025년 2,183건으로 나타나 2024년(738건) 대비 1,445건(195.8%) 증가하였으며, 사용자 문의 유형을 살펴보면 보고서 수정이 530건, 현금흐름표가 477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TSM<sup>1)</sup> 사용자 문의건수]

(단위: 건)

연도	2023	2024	2025
문의건수	764	738	2,183

주: 1) ITSM은 IT Service Management의 약자로 사용자가 요청사항을 등록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지보수관리시스템임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향후 국가결산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대규모로 개편하는 경우 실제 결산이 시작되기 전에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완료하고, 전 부처의 연간 결산자료를 활용한 시범결산을 실시하여 부처별 거래 유형과 업무 특성에 따른 오류를 사전에 점검·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시범결산 대상 부처를 선정할 때에는 회계·기금 수, 자산 및 부채의 종류, 연구개발사업 등 거래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ITSM 문의 및 오류 발생 내역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함으로써 결산업무의 적시성과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25년 ITSM 사용자 문의 유형]

(단위: 건)

유형	구분	문의 건수	비고(주요 개선필요사항 등)
(예시) 기능오류	결산조정	24	- 대량전표 입력 기능 오류 -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등 인식 관련 전표 생성 오류
	내부거래	46	- 현금흐름표용 분개전표 미제거사유 등록 불가 - 이에 따른 내부거래 자동대사, 내부거래확정 오류
	원가계산	5	- 재정운영표 전기 내역 미생성
	현금흐름표	260	- 처리 속도 개선 필요(504 time out 발생) - 미결명세 및 상대계정과목 엑셀업로드 기능 개선
	보고서 발행	168	- 국세징수활동표 대상 부처 외에는 '해당없음' 필요 - 전기금액 미표시, 순자산변동분석표 양식 불일치
	보고서 수정	443	- 전기 수정 승인 금액 초기화 조치 - 전기금액 생성 누락 및 지침과 불일치하게 생성된 내역
	보고서 점검	238	- 부의 금액 점검 오류 - 보고서간 금액 비교 항목 불일치
	외부연계	92	- 현금흐름표 자산부채 내부거래 내역 누락 점검 추가 - 연계 및 업로드 점검 시 체크 로직 오류
	기타	4	- 결산확정 취소 처리 문의
(예시) 시스템 기능 이외 문의	결산조정	113	- 결산조정전표 등록 시 계정과목 선택 관련 문의 - 결산조정 진행 절차 및 금액 확인 문의
	내부거래	64	- 내부거래 거래처 변경 방법 - 내부거래제거 절차 문의
	원가계산	6	- 비배분 비용 관련 금액 문의 - 프로그램 원가 변경 방법 문의 등
	현금흐름표	217	- 미결명세현황 및 현금흐름표 작성 절차 문의 - 비현금성 COA 정리 방법 문의
	보고서 발행	31	- 보고서 발행 방법 및 주석 문구 편집 관련 문의 - 개편된 양식 관련 문의 등
	보고서 수정	87	- 외화자산부채 명세 엑셀 업로드 관련 문의 - 보고서 생성 내역 확인 및 조치방법 문의
	보고서 점검	24	- 보고서 간 점검 시 차이금액 확인 요청
	외부연계	221	- 원장 및 보고서 연계&엑셀 업로드 방법 문의 - 규약된 연계 포맷과 불일치한 작성으로 인한 확인 요청
	기타	140	- 분개전표 추출 관련 문의 - COA개편에 따른 전기금액 분리 등록 방법 문의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

**여섯째, 재정경제부는 향후 국가결산제도 및 결산시스템을 개편하는 경우 일부 기간과 일부 중앙관서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가결산 결과에 의존하여 시스템을 구축·시행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구(舊) 기획재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결산과 가결산을 실시하였다. 시범결산은 해양수산부의 2024회계연도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가결산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중앙관서를 중심으로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자료로 실시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에서는 재정상태표의 자산·부채 분류체계가 개편되고, 재정운영표가 성질별·분야별 체계로 변경되었으며, 현금흐름표가 새롭게 도입되는 등 국가재무제표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현금흐름표의 신규 작성은 기존의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현금주의 자료와 연계하여 현금의 유입·유출을 활동별로 구분하고,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의 변동 내역과 조정 절차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서식 변경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국가결산보고서 작성체계의 안정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부 중앙관서의 단기간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전 중앙관서의 연간 결산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결산과 유사한 조건에서 가결산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이 실시한 가결산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범위와 검증 수준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① 가결산 대상 기간이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로 제한됨에 따라 연도 말 결산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회계처리와 결산조정 사항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웠다.**

국가결산에서는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및 각종 충당부채의 설정, 미수채권·미지급금의 인식, 국채 및 차입금의 상환·발행, 정부 내부거래의 제거, 전기오류 수정 및 자산재평가 등 다양한 결산조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의 계정잔액을 확정된 이후 현금흐름표의 현금유입·유출 금액과 조정하는 절차도 연말 결산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1월부터 5월까지의 자료만으로 가결산을 실시할 경우 이러한 연도 말 결산조정과 계정 마감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개편된 재무제표 간 연계성 및

결산조정 기능을 실제 결산 수준에서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일부 기간의 거래자료는 연간 자산·부채 변동이나 현금흐름을 완결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므로, 재정상태표의 기초·기말 잔액과 현금흐름표의 현금유입·유출 내역 간 정합성을 검증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② 가결산 대상이 7개 중앙관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중앙관서별로 상이한 회계처리와 재정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국가재무제표에는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이 포함되며, 중앙관서에 따라 국세수입, 사회보험수입, 부담금, 용자사업, 출자사업, 국유재산의 취득·처분,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국채 발행 및 상환 등 주요 거래의 유형이 상이하다. 따라서 일부 중앙관서만을 대상으로 한 가결산으로는 국가 전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회계거래가 개편된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반영되는지를 포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현금흐름표의 경우 중앙관서별로 현금성 거래와 비현금 거래의 구분, 정부 내부거래의 제거, 자산 취득·처분 대금의 분류, 용자금의 실행·회수, 국채 및 차입금의 조달·상환 등에서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오류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요 거래유형을 수행하는 중앙관서를 폭넓게 포함하고, 전 부처 자료를 통합한 국가 단위 현금흐름표까지 작성·검증할 필요가 있었다.

**③ 2024회계연도 전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 부처 가결산 자료로 활용하지 않아 기존 결산자료와의 비교·검증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가결산 실시 당시에는 이미 확정된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가 존재하였으므로, 이를 개편된 재무제표 작성 기준과 시스템에 따라 재작성할 경우 종전 국가결산보고서의 금액과 개편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상호 비교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재무제표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계정과목 대사의 적정성, 재정운영표 개편에 따른 비용 분류의 일관성, 현금흐름표 작성 과정에서의 현금거래 추출 및 조정의 적정성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2024회계연도 전체 자료를 전 중앙관서에 적용하여 가결산을 실시하였다면, 국가 단위의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모두 작성한 후 각 재무제표 간 연계 관계와 정부 내부거래 제거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은 국가재무제표의 구성과 표시체계가 대폭 변경되는 최초 연도였음에도, 가결산이 중앙관서의 5개월 자료에 한정됨에 따라 연도 말 결산조정, 중앙관서별 특수거래, 국가 단위 통합 및 재무제표 간 정합성을 충분히 사전 검증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는 새로운 결산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본 결산 이전에 발견·보완할 수 있는 가결산의 기능을 제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재정경제부는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기준이나 재무제표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경우, 확정된 직전 회계연도의 연간 자료를 활용하여 전 중앙관서를 대상으로 가결산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결산의 범위를 개별 중앙관서의 재무제표 작성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 단위 재무제표 통합, 정부 내부거래 제거, 현금흐름표 작성 및 재무제표 간 대사까지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가결산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유형과 보완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본 결산 전에 중앙관서별 계정과목 대사, 현금·비현금 거래 구분, 내부거래 제거 및 재무제표 간 불일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검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재무제표 개편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가결산보고서의 정확성·완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전 부처의 2024년 가결산을 실시하지 않고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아 현금흐름표가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지 않고 2025년 금액만 제시되었는데, 재정경제부가 현금흐름표 최초 도입에 따른 실무적 부담을 고려하여 2025회계연도의 비교표시를 면제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나, 2024회계연도의 주요 현금흐름이나 보충적 비교정보까지 제공하지 않은 것은 현금흐름표의 비교 가능성과 정보 유용성을 제약하고 국회의 결산심사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1호는 재무제표를 해당 회계연도와 직전 회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24년 7월 같은 규칙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 “2025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는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를 두었다. 이에 따라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는 2025회계연도 현금흐름만 표시되고 2024회계연도 비교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금흐름표는 단일 회계연도의 현금 유입·유출 규모를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년도와의 비교를 통해 국가재정활동의 변화 추세와 변동 원인을 파악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현금흐름표에는 2024회계연도 비교금액이 제시되지 않아 운영활동·투자활동·재무활동별 현금흐름이 전년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거나 감소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국세수입, 이전수입, 국채 발행 및 상환, 용자금의 집행 및 회수, 유·무형자산의 취득 등 주요 항목의 현금흐름이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인지, 구조적인 재정운용 변화에 따른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금흐름표를 최초로 도입하면서 비교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현금흐름표의 정보 유용성 및 접근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부칙 제3조는 2025회계연도 현금흐름표를 비교 형식으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비교정보의 제공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2024회계연도 현금흐름표를 정식 재무제표로 작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더라도, 국고금 수입·지출자료, 세입·세출결산자료 및 기존 국가회계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항목별 전년도 현금흐름을 재구성하고 이를 주석이나 보충자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전년도 자료의 신뢰성이나 분류체계의 차이로 인해 완전한 비교표 작성이 곤란하였다면, 비교정보를 작성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와 자료상의 제약 등을 주석에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는 현금흐름표 도입의 취지를 국가재정의 현금흐름을 국민이 쉽게 확인·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재무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년도 비교정보가 없는 단년도 현금흐름표만으로는 각 현금흐름 항목의 증감 방향과 변동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결산정보의 이해가능성과 활용도를 높이려는 제도 개편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현금흐름표 도입은 2025회계연도 결산 직전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 작성 등을 추진해 온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금흐름표의 최초 도입에 따른 실무적 부담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전년도 비교정보를 전면적으로 생략하기보다는 주요 항목 중

심의 비교표 또는 추정 비교정보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결산정보의 투명성과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을 높이는 데 보다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새로운 재무제표나 회계기준을 도입할 때에는 최초 적용연도에도 최소 1개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비교표시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보충적으로 공시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① 비교 정보를 작성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
- ② 비교 가능한 주요 항목의 전년도 금액
- ③ 회계처리 및 분류기준 변경이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

이를 통해 현금흐름표가 단순히 새로운 재무제표 한 종류를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현금 조달 및 사용 구조를 실질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결산 정보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결산분석시리즈 VII  
2025회계연도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

발간일 2026년 7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2672·1535)

---

ISSN 3058-292X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http://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88-002097-10

ISSN 3058-292X



**국회에산정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